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권·특례 확대〉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73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총괄 검토 ·····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3

2. 총괄 검토의견 ····· 6

Ⅳ.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 10

1. 총칙(제1편) ····· 10

2.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제2편) ····· 12

3.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계획(제3편제1장) ····· 19

4. 생명산업 육성(제3편제2장) ····· 21

5. 전환산업 진흥(제3편제3장) ····· 65

6. 생명경제 기반 구축(제4장) ····· 142
7.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제4편제1장) ····· 178
8. 지역특화 발전과 민생경제 활력(제4편제2장) ····· 195
9.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제4편제3장) ····· 206
10.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 규제 완화(제4편제4장 신설) ····· 209
11. 자치 조직과 인사 보장(제5편제1장) ····· 332
12. 자치 행정의 확대(제5편제2장) ····· 343
13. 자치 교육의 실현 및 자치 재정의 확보(제5편제3장) ····· 351
14. 감사위원회의 설치(제5편제4장) ····· 398
15. 지방의회(제5편제5장) ····· 401
16. 보칙(제6편) ····· 410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30.

3. 회부연월일 : 2026.　2.　 2.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는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로서 지난 2024년 1월 출범하였으며, 규제혁신과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출범 초기 단계의 선언적 조항이나 기본적인 특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북이 목표로 하는 농생명, 탄소, 청정에너지 등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에는 구체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농생명산업지구 내 스마트농업 육성, 푸드테크산업 진흥, 수소 및 분산에너지 특화, 미래 모빌리티 및 탄소융복합 산업 등 전북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특례를 신설·보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자치 조직·재정 운영의 자율성

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Ⅲ.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총괄 검토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를 농생명·탄소·청정에너지·미래모빌리티 등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재정분권 및 규제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전북자치도의 실질적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산업혁신 및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첫째, 국세 세목 또는 전북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의 이양 등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계획 수립, 이양사무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의 이체, 국가의 사무처리 비용 보전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전북자치도 관련 입법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통하여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북자치도의 입법 참여와 자치권 확대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둘째,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지구 지정, 산업단지 개발, 토지특별회계 운용,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권한과 특례를 확대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산업단지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규 산업

단지의 교통·물류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이전 지원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전북자치도의 산업입지 조성·재편 및 지역전략산업의 투자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셋째,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정원 조성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특례, 농업인 기준 및 청년농어업인 연령의 조정,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도, 종자·육종 연구 및 시험포의 농지이용 특례, 국가축산클러스터, 농수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및 첨단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조성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육성 지원·규제개선 특례를 두어 농생명·식품·유통산업의 혁신과 농촌 활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넷째, 수소특화단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발전지구,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인허가, 영농형 태양광 지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및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관련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전북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이용요금 및 공급조건에 관하여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전북자치도를 수소·재생에너지·분산에너지 기반의 에너지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다섯째, 이차전지, 수소, 탄소소재융복합, 무인이동체, 미래모빌리티, 방위산업, 반도체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탄소융복합 미래신산업 클러스터,

녹색융합 클러스터 및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등을 조성·지원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이와 함께 미래산업전환촉진지구 및 기금, 산학협력 선도지구, 창업집적시범지구, 반도체·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및 반도체 연구센터 지정 특례 등을 통하여 연구·실증 기반, 전문인력 양성, 산업 전환 및 기업 유치를 지원하려는 것임.

여섯째, 문화산업진흥시설, 체육시설, 관광지·관광단지,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해양치유·해양레저관광, 갯벌관리구역, 유인도서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산림문화·산림교육·산림자원 및 건축·도시계획 관련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문화·관광·해양·산림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정주환경 개선과 관광·해양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에 관한 전북자치도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종합하면, 개정안은 ① 국세·사무 이양 및 재정·규제 특례를 통하여 전북자치도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② 농생명·푸드테크·에너지·이차전지·탄소소재·반도체·방위산업·무인이동체 등 전략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며, ③ 산업입지·도시개발·관광·해양·산림·건축 등 폭넓은 분야에서 권한 이양과 국가 지원을 결합함으로써, 전북자치도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지역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2. 총괄 검토의견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 출범 이후 변화한 지역 여건과 농생명·에너지·첨단산업 등 전북자치도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주도형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재정분권 및 규제완화, 농생명·푸드테크·에너지·산업단지·미래전략산업 관련 특례의 신설·확대를 통하여 전북자치도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지역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도입된 특례를 상당 부분 참고하고 있음.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행정통합을 통하여 확보하게 되는 자치권 및 지역발전 특례와 비교하여 전북자치도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전북자치도의 산업·인구·공간적 여건에 맞는 발전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복수의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전제로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인 반면, 전북자치도는 기존 전라북도를 기반으로 설치된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적 차이가 있음.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 특례를 전북자치도에 도입하는 경우에는 제도적 형평성과 함께 전북자치도의 지역적·산업적 특성 및 행정·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특례의 범위와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국세 세목 또는 전북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의 이양, 중앙

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계획 수립, 이양사무 비용의 전액 보전,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특례, 부담금 감면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례들은 전북자치도의 자치권 확대와 지역발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지방재정 및 조세·부담금 체계, 국가재정 운용 원칙 등 국가 차원의 제도와의 정합성을 함께 고려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입법체계 측면에서는 일부 조항이 일반법 또는 개별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거나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준·절차·권한을 전북자치도의 조례 또는 도지사 권한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전북자치도에 이미 도입된 제도와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각 특례가 일반 제도와 구별되는 실질적 특례인지, 국가의 정책적 지원 방향을 확인하는 선언적 규정인지, 또는 기존 제도의 적용절차를 조정하는 규정인지를 구분하여 적용 대상·주체·요건·절차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우선 지정”, “우선 고려”, “지원하여야 한다”, “전액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표현은 국가의 의무 또는 재량과 관계 행정기관의 처리절차에 미치는 법적 효과가 조문별로 다를 수 있음. 이에 관계 개별법상의 지정·지원체계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적용요건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특례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재정 및 집행 측면에서는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농수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의 특례, 국고보조율 상향, 각종 산업단지·클러스터·특화단지, 에너지·농업·관광·해양·전통시장·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 규정 등이 함께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개별 특례의 정책적 필요성과 함께 전체 재정소요, 사업 간 우선순위, 재정사업의 타당성 검토 체계 및 다른 특별자치단체·일반 시·도에 미칠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전북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및 특화발전 기반 조성이라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개별 특례는 관계 법령 체계, 국가재정 여건, 전국적 기준의 유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역시 지역발전 특례의 발굴·부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별 특례는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반영하고, 조직·재정 특례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종합하면,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의 자치권과 지역발전 기반을 강화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제도적 격차 또는 역차별 우려를 완화하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음. 향후 각 특례의 필요성·실효성·집행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전북자치도의 특수한 여건에 비추어 도입 필요성이 큰 특례와 개별법·국가정책 체계와의 조정이 필요한 특례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특례의 범위와 법적 효과

를 명확히 하고, 관계 부처 협의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Ⅳ.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 총칙(제1편)

(1) 국가의 책무(제4조)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의 성공적 안착과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가가 국세 세목 또는 전북에서 징수되는 국세의 이양, 추가적인 행정·재정 지원,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의 책무) ① · ② (생 략)	제4조(국가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세의 세목(稅目)을 이양하거나 전북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는 낙후된 전북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전북자치도의 설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전북자치도가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행정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분권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은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과 규제 완화 노력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서도 국가의 책무로 분권 및 재정 지원 방향은 제시하되, 국세 세목 이양 의무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개정안은 전북자치도를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분권의 선도 모델로 정립하고, 재정분권과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국가의 책무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국세 세목 이양 및 국세의 이양을 특정 지역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의 책무로 직접 규정하고 그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내용은 국가 재정 및 조세체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재정분권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재정경제부는 국세 세목 이양 문제는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논의 중이며, 그 결과를 개별 세법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할 계획이므로, 이를 개별 지역특별법에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임.

2.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제2편)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가 전북자치도의 분권 추진과 관련하여 규제 자유화, 법률안 의견 제출,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산업단지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첨단전략산업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육성, 국가 재정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그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전북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전북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전북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에 따른 규제자유화의---------- 5. 제14조의2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6. 제14조의3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계획 수립 및 확정에 관한 사항
5. (생 략)	8.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9. 제41조의24에 따른 산업단지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6. (생 략)	10. (현행 제6호와 같음)
7.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7.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과----------
<신 설>	11.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2. 제77조에 따른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3. 제171조의2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4.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5. ----------제14호까지의----------
9. (생 략)	16.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전북자치도의 원활한 출범 지원과 실질적 지방분권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를 두고, 행정규제 자유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조정 등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여기에 법률안 의견 검토,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계획 수립·확정, 기회발전특구 및 첨단산업 관련 특례, 국가 재정지원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핵심적인 분권·재정 관련 사항을 포괄하도록 심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각 개별 조문 내용과 수용 여부를 고려하여 심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재검토 요청 (제14조의2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도의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전제로 전북자치도 관련 입법사항에 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면, 지원위원회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검토·회신 및 재검토 요청·조정을 거쳐 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 간 입법 관련 의견을 조정하는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재검토 요청) ① 도지사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북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현 행	개 정 안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법리적·행정적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재검토 및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2026.3.31.) 도지사·도교육감의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중앙행정기관의 검토·입법 반영 절차가 도입되어,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1)]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제14조의3 신설)

개정안은 지원위원회가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전북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단계별 권한 이양계획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전수조사, 이양 대상 선정, 예산·인력 이체 등 권한 이양의 절차와 내용을 종합 설계하도록 하며, 국가는 이양 사무에 관한 비용 전액 보전과 인력 증원을 보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3(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 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전북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전북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전북자치도 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북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3.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 예산 및 인력 정원의 이체 방안 4.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전북자치도 이양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전북자치도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이양하는 경우, 해당 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보전하여야 하며, 사무 수행에 관한 인력 증원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전북자치도에 대한 사무·권한 이양에 관한 일반적인 방향은 제시하고 있으나, 중앙행정기관 권한을 전수조사하고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별도의 ‘이양계획’을 지원위원회가 수립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절차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을 전북자치도 특례의 핵심 축으로 삼고, 권한 이양에 수반되는 예산·인력 조정과 국가 비용 보전을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분권 실행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사무를 일괄적으로 잠재적 이양 대상으로 전제하고 단계적 이양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내용은, 개별 지역에 대한 특례를 넘어서 중앙-지방 사무 배분 체계와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에 관한 논의에 가까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지방자치의 성숙도와 행정역량, 국가 차원의 분권·재정개편 로드맵,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정도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개별 특별법보다는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관한 논의와 입법을 통하여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4) 자료의 제출 등 (제14조의4 신설)

개정안은 이 법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이양된 권한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적인 통계관리 또는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전북자치도에 요구할 수 있고, 전북자치도도 권한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기술 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상호 자료·정보 교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실질적인 분권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4(자료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하여 국가적인 통계관리 또는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전북자치도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북자치도는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기술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계획(제3편제1장)

(1) 종합계획 수립 (제15조)

개정안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택지개발계획을 종합계획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관련 신설 조항들의 수용 여부와 구체적 내용이 정해진 이후, 종합계획과의 체계·정합성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종합계획 수립) ① ---------- ---------- ----------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 설>	1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4. 각종 개발사업(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6.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각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

현 행	개 정 안
15.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7. ----------제16호까지의----------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한편, 전북자치도는「도시개발법」및「택지개발촉진법」상 구역(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은 사업 위치가 특정되어야 가능하므로, 지구 지정 이전인 종합계획 단계에서 사업 위치가 노출될 경우 개발 기대에 따른 투기와 토지가격 급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2)]

2)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미반영

4. 생명산업 육성(제3편제2장)

(1)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지원 특례(제25조의2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3]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직접 지정하고 조성계획을 수립·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권한을 각각 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이양하고,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육성지구 지정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행정·재정적 지원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2(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농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보에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도지사,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하며, 제9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도조례로 한다.

3)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현 행	개 정 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육성지구를 지정한 경우 농업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농업 교육 등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스마트농업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합하여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이러한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일정 지역에 집적·확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는바, 개정안은 전북 지역의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스마트농업 특례에 비해 스마트농업지구 지정에 대한 도지사의 재량과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므로,[4] 국가재정 여건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5]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대상지 여건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도지사 단독 지정·고시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9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농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이 조에서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고시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육성지구를 지정한 경우 농업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농업 교육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 제주특별법 및 강원특별법에는 스마트농업에 관한 특례 미규정

방식은 지양하고 스마트농업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장관과 협의한 후 지정·고시하는 구조로 운영하여야 하며, 행정·재정적 지원은 재량규정으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임.

(2) 농지보전부담금 특례 (제25조의3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정원[6]을 조성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법」 제38조제6항[7]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3(농지보전부담금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지사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정원을 조성하는 경우 「농지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7)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현행 「농지법」 제38조제6항은 일정한 공익 목적 등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전북자치도가 공익적 목적의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지의 공익적·환경적 활용과 정원 조성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의 부과·감면·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부담금을 규정한 개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8] 개정안과 같이 전북특별법에 별도의 감면 근거를 두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담금 제도의 체계성·일관성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기획예산처 및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에 관한 특례를 여러 조항에 산재하여 규정하기보다는, 전북특별법 내 부담금 감면에 관한 공통 특례 조항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8)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농업인 기준 상향에 관한 특례 (제25조의4 신설)

개정안은 「농지법」 제2조제2호[9]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농업인 기준을 전북자치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조정된 기준에 따라 절감되는 재원을 농업·농촌의 구조개혁 등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4(농업인 기준 상향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농업인 기준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농업인 기준 조정에 따라 절감되는 재원은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재원의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현행 법체계에서 농업인 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경작 면적, 농산물 판매액, 농업 종사 일수 등 전국 공통의 정량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농지 소유·이용 규제와 각종 농업 지원정책의 대상을 설정하는 기본 틀로 기능하고 있음.

---

9)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의 여건에 맞게 농업인 인정 기준을 상향 또는 차별화하여 지원 대상을 조정하고, 그에 따라 절감되는 재원을 구조개혁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농업인 정의는 국가의 농지제도 및 농업정책 전반과 직결되는 기본 개념이므로, 이를 특정 지역특별법을 통하여 조례에 위임하는 방식은 농업인·농지제도의 전국적 일관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국가정책·재정지원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기준이 각종 지원정책과 직결되는 만큼, 전북자치도가 조례로 기준을 상향할 경우 일부 기존 농업인이 비농업인으로 전환되어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며,

전북자치도 역시 농업인 자격요건 강화 시, 기존 농업인의 권익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청년농어업인 연령 상향에 관한 특례 (제25조의5 신설)

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2조제2호[11]에도 불구하고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령 조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5(청년 농어업인 연령 상향에 관한 특례)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청년농어업인 연령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청년농어업인 연령 조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후계청년농어업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현재 청년농어업인을 일정 연령 미만으로 규정하여[12] 전국 단위 청년농어업인 지원사업의 공통 연령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서도 청년농어업인의 연령을 통합특별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 특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13] 전

1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에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8조(청년농어업인 연령 상향에 관한 특례)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

북자치도의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최근 광역행정통합특별법 논의 흐름과 일정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통합특별시장의 재정 지원을 규정하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국가의 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지원 주체에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및 유사 입법례와의 균형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을 감안하여 청년농어업인 연령을 도조례로 상향하는 특례 자체는 수용 가능하지만, 연령 상향에 따른 재정 부담은 도지사가 지원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국가 비용부담 규정은 두지 않고 제2항을 도의 재량 지원 규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청년농어업인의 연령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조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특례 (제25조의6 신설)

개정안은 은퇴를 앞둔 고령 농업인의 노후소득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가 자체 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6(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에 관한 특례) ① 전북자치도는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수급 대상자, 수급 조건, 수급액 및 기타 연금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연금 도입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전체 인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경영이양직불제·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 기존 노후소득 보장 장치만으로는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14)]

이에 따라 농업인 노후소득 정책을 보완하고 생애주기 관점에서 농업인 연금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는 연구와,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이양하여 세대전환을 촉진하려는 정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15)]

14) 경향신문, “가속화하는 농촌 고령화·인구 감소…올해 농가 인구 ‘100만명대’로 무너지나”, 2025.4.17.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71445001#ENT

15) 임소영·김수린, 「주요국 농업인 연금제도 사례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6.

이러한 정책·연구 흐름을 고려할 때, 전북자치도가 고령 은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소득 보장과 안정적인 영농 은퇴를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수단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이미 동일한 특례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16] 전북특별법에 유사 특례를 마련하는 것은 농업인 노후소득 보장과 세대전환 지원과 관련된 특별자치단체 간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농림축산식품부도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농지연금을 개선하여 고령 은퇴농의 노후생활 보장과 혜택을 확대합니다!」, 2024.3.25.

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6조(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 제도 도입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는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수급 대상자, 수급 조건, 수급액 및 기타 연금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연금 제도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제25조의7 신설)

개정안은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푸드테크산업법”) 제5조[17]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18]가 전북자치도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7(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3.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4.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7)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8)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푸드테크 기업, 대학·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하는 협업체를 말함(푸드테크산업법 제2조).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서도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가 기본계획에 통합특별시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시행계획을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19] 전북자치도의 푸드테크산업 관련 특례는 최근의 광역행정통합특별법 논의와 방향을 같이하는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달리 별도의 광역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와 국가의 전북자치도에 대한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체계와의 정합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및 유사 입법례와의 균형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이 자체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특례는 수용하되,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은 법률상 여러 지역의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전북에 대한 '지정 노력' 의무를 재량규정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2조(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 전망
3. 통합특별시 푸드테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4.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7. 그 밖에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73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 국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8호 및 제14조에 따른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통합특별시에 지정할 수 있다.

(7) 푸드테크산업 관련 특례 (제25조의8~제25조의10 신설)

개정안 제25조의8부터 제25조의10까지는 전북자치도의 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통계작성, 육성 지원 및 규제개선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유사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2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8(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관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9(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① 전북자치도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에 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6항, 제8조제4항, 제13조제6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

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4조(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통합특별시장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관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75조(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정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의 권한으로 한다.
제276조(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까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규정된 정부의 권한 및 의무는 전북자치도의 권한 및 의무로 한다. 제25조의10(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의2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제25조의8(실태조사·통계)과 제25조의10(규제개선 특례)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구조·내용이 대체로 동일한 반면, 제25조의9(육성 지원 특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푸드테크산업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한정하여 국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이양하는 것과 달리, 푸드테크산업법 제7조, 제8조 및 제13조까지 포함하여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전문인력 양성, 전담기관 지정 관련 권한을 보다 광범위하게 전북자치도로 이양하려는 것임.

다만,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전문인력 양성,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면 푸드테크산업 육성 지원 특례의 범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유사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전담기관 지정 등은 국가가 일괄적으로 운영하여 전국 동일 기준과 절차를 유지하여야 하는 반면, 창업·금융지원, 기술개발, 연구시설·장비, 국제협력·해외시장 진출 지원은 전북자치도가 자체적으로 수행하여도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 관련 조항(푸드테크산업법 제9조~제12조)에 한하여 국가의 권한·의무를 도의 권한·의무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특례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8) 종자·육종 연구 및 시험포에 대한 농지 이용 특례 (제25조의11 신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관할 농지에서 신품종 육성, 육종 시험, 종자 증식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고정식 온실·망실·시험재배시설 및 시험포 부대시설 등을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보아,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11(종자·육종 연구 및 시험포에 대한 농지 이용 특례) ① 도지사는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의 정의에 따른 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농지에 신품종 육성, 육종 시험, 종자 증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보아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현 행	개 정 안
	1. 종자·육종 연구를 위한 고정식 온실, 망실(網室) 및 시험재배 시설 2. 신품종 특성 검정 및 육성 계통 보존을 위한 시험포 관련 부대시설 3. 그 밖에 종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연구·실증 시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이용이 농지의 우량한 토양 보전과 농업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세부 기준, 관리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는 전북자치도의 종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육종·시험포 관련 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농지의 전용 요건·절차를 전국적·통일적으로 규율하는「농지법」체계와의 정합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정식 온실·시험재배시설 등은 이미 농지법상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해당하여 전용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부대시설 및 연구시설까지 포괄적으로 전용절차를 배제할 경우 농지 위 영구건축물 난립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별도 특례를 두기보다는 현행 농지전용 절차에 따라 설치·관리를 유지하는 것이 법체계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9)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육성에 관한 특례 (제25조의1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12(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육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축산법」 제3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축산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축산클러스터를 계획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국가축산클러스터를 계획하고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 축산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축산 힐링·치유·테마파크, 축산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축산법」 제32조의2제1항[21]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축산업의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자체 계획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기반시설 구축·개선, 축산 힐링·치유·테마파크, 축산 관련 연구개발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축산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축산클러스터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전국 단위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적 기반으로 설계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시·도지사에게 국가축산클러스터 계획 권한을 별도로 부여하고 전북자치도만을 대상으로 한 국가 지원 근거를

21) **「축산법」**
제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두는 방식은, 기존 법체계와의 기능·권한 중복 및 충돌 가능성,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축산클러스터는 「축산법」상 중앙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한 사안이므로 시·도지사에게 별도의 계획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특정 시설 유형을 열거하여 행정·재정 지원을 예정하는 규정은 현행 법체계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0)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25조의1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13(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의 선진화 및 지역별 유통망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내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정부의 지원금 및 보조금 2. 전북자치도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사용료 4. 기타 기부금 및 후원금 등

현 행	개 정 안
	③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공판장 및 종합유통센터의 시설현대화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 유통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관내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국가 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⑤ 국가는 통합 지방정부의 도매시장, 공판장 및 종합유통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도매시장·공판장·종합유통센터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하며, 시설현대화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국고보조 비율 상향,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의무 부과 등 강도 높은 재정·절차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같은 분야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지원대책 수립 의무와 통합특별시 차원의 특별기금 설치 근거(재원은 통합특별시 일반회계 출연금, 농안법상 사용료, 기타 기부금·후원금)에 한정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투자심사 면제, 국고보조 비율 상향, 국가 지원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22)]

이와 비교할 때 개정안은 특별기금 재원에 “중앙정부의 지원금 및 보조금”을 포함하고,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예타·투자심사 일괄 면제를 허용하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의 국고 보조 기준을 넘어서는 국가 분담비율 상향과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의무화까지 규정하고 있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비해 재정·절차 특례의 강도가 높은 수준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특별기금 재원에 대한 중앙정부 직접 재원 포함, 예타·투자심사 면제, 국고보조 비율 상향 및 국가 지원 의무 부과 등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체계와의 정합성, 타 시·도 및 다른 특별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이며,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수준으로 특례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5조(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의 선진화 및 지역별 유통망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내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통합특별시의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사용료
3. 기타 기부금 및 후원금 등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도매시장, 공판장 및 종합유통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매시장 운영 재원은 우선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특별기금 재원에서 “중앙정부의 지원금 및 보조금”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규모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면제 규정(제3항)은 재정 효율성과 타 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도매시장·공판장·종합유통센터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제5항)은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가 지방재정 건전성과 무분별한 투자를 막는 기본 장치이므로, 개별 법률에서 사업계획·총사업비가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까지 일괄 면제할 경우 제도 취지가 약화되고 장기 재정부담 우려가 있으며, 이미 ‘협의면제’ 등 신속 추진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면제 규정은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11)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 (제25조의1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14(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하여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를 지정 및 조성할 수 있다. ②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는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을 감안하여 도지사는 기획예산

현 행	개 정 안
	처장관에게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및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하여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를 지정·조성하고, 단지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도 통합특별시장이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를 지정·조성하고 전담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허용하는 유사 특례가 규정되어 있음.[23]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면제를 요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시·도지사가 직접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의 구조와는 차이가 있음.

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2조(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하여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를 지정 및 조성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및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련 규정은 현행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절차 및 주체 체계에 부합하도록, 도지사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타 면제 필요성을 건의·요청하는 수준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 시·도 및 다른 특별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12)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특례 (제26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의2(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강점인 농생명 자원 및 탄소 소재를 활용한 의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북자치도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행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지 선정을 거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고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하며, 관계 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추진방안을 종합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첨단 의료산업 육성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전북자치도가 이미 타당성 용역 수행, 복지부·국회 건의 등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24] 현행 법체계와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은 법령상 입지 요건 충족 여부, 국가 의료산업 정책 방향, 기존 지정 단지와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 지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입지 선정 재량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은 국가 바이오헬스 전략과 법에서 정한 객관적 요건에 따라 중앙정부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24) 천지일보, "정읍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박차'", 2024.12.12.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0492

(13) 수소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30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2(수소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탄소중립 실현 및 수소경제사회 촉진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수소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는 수소특화단지 내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소특화단지의 기반조성,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지역을 수소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특화단지 내에서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단지의 기반조성, 수소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제22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소특화단지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25]

2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한편「전기사업법」제31조는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26)]

현행 제도를 고려할 때, 개정안이 특정 지역에 대한 수소특화단지의 “우선 지정”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의 입지 선정 재량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및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권한과의 조화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수소특화단지 내 전력 직거래 허용은 전력시장 중심 거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전력 공급의 안정성, 전기요금 체계와 시장 구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례 허용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특화단지는 수소법에 따라 평가·심의를 거쳐 지정되어야 하므로 전북자치도를 우선 지정하는 특례는 수용이 곤란하고, 수소특화단지 내 전력직접거래 허용도「전기사업법」및「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체계와 소비자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②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6)**「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관한 특례 (제32조의2·제32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2(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및 발전시설 설치) ① 도지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개발, 산업 육성, 발전시설 설치,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2조의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 지정 특례)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서는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면서 개발·산업 육성·발전시설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시범단지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하며, 국가는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의무를 지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및 시범단지의 조성·지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은 발전소 설치·운영으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주변 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이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자원으로 보고 도조례에 따라 발전지구·집적화단지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도록 한 점은,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제32조의2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발전지구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31조[27]와 내용이 상당 부분 중첩되어 법체계의 일관성과 명료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현행 발전소주변지역법이 개별 발전소를 기준으로 지원 범위·지원 금액을 산정하는 구조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상의 “신·재생에너지

2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신·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육성 및 해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 지역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육성 및 해제하거나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발전지구” 개념을 발전소주변지역법상 “주변지역”과 직접 연계할 경우 적용 범위 및 지원 요건이 일치하지 않아 법 적용상의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2조의2와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발전지구 지정·지원, 주변지역 지원 및 장관 협의 절차는 이미 현행 전북특별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고, 발전소주변지역법상 주변지역 개념과의 정합성 문제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제32조의3에 관하여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은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통된 평가·심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정 지역에 별도의 지정권을 부여하는 특례는 수용하기 어렵고, 대신 집적화단지·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는 수준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15)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관한 특례 (제32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4(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현 행	개 정 안
	권한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협의·승인 및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등에 관한 사무를 직접 수행한다. 1. 발전용량이 4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해상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그에 필요한 송전선로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사업 2.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및 지반조사 등 사전 준비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전북자치도가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북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상 신·재생에너지사업 및 해상풍력 사전 준비사업에 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권한과 점용료·사용료 수입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하려는 것으로, 해상풍력 등 해양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도의 역할과 재정자립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공유수면의 관리·매립 권한과 점용료 귀속은 현행 공유수면법 체계에서 전국 단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영역이므로, 특정 지역에 권한과 수입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해양수산부의 종합적인 공유수면 관리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법이 EEZ와 국가관리항만 등을 국가가 공간 단위로 일괄 관리하도록 한 입법 취지 및 해양 안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풍황계측기 허가 제한 등을 고려할 때, 특정 해상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한하여 점용·사용 허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특례는 관리체계의 일관성과 법제 정합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해상풍력 관련 상위 특별법 체계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제도와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특히 해상풍력 계측기 설치를 전제로 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특례를 전북특별법에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16)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제32조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5(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의 기본원칙[28]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 지역 에너지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30조[29]는 정부가 지역별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계획은 신재생에너지법 제

---

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2.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파급 효과 및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5.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8.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2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7조[30]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사전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음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장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시행하되, 신·재생에너지법 제7조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를 명시하고 국가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바,[31] 개정안도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반영하고, 국가 지원 규정 역시 유사 입법례와 같이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북자치도의 에너지 전환 지원정책 수립 자체는 인정하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등 국가 단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국가 지원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임의 규정으로 두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7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7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7조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7)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 (제32조의6・제32조의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6(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 ① 도지사는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 또는 생산하고 그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병행 생산, 판매(이하 “영농형 태양광”이라 한다)하는 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농형 태양광 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구 내 농지에 설치한 영농형 태양광 설비는 생업을 위한 농업시설로 본다. ② 영농형 태양광 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영농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제1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지분 또는 의결권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는 조합 또는 법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신고・해제(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 등” 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이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면적은 실제 영농에 이용하는 면적은 제외되며,「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모든 농지에 허가기간은 30년 이내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5.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④ 영농형 태양광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영농형 태양광 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⑤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형 태양광 지구가 조성된 농지에「농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영농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⑥ 국가 및 송·배전설비를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은 영농형 태양광 지구 조성사업 지원을 위하여 송·배전설비 효율적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⑦ 영농형 태양광 지구 조성사업의 시행 및 조성사업지의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⑧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⑨ 영농형 태양광 지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제 농작물의 재배 또는 생산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운영이 영농을 가장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

현 행	개 정 안
	로 사업을 지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농형 태양광 지구 내 영농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농작물 재배현황, 수확량, 경작일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⑪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농형 태양광 지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농지에서 표준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연간 기대 경작수익의 3배 이내에서 정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부과절차 및 감경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영농계획에 따른 농작물 재배 또는 생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태양광 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농작물 재배를 형식적으로 수행하거나 사실상 중단한 경우 ⑫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중대한 경우,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며, 사업시행자는 해당 농지를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1. 영농형 태양광 지구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승인 취소 2.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의 해제
<신 설>	제32조의7(영농형 태양광 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 태양광 지구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영농형 태양광 지구 내 농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현 행	개 정 안
	전용허가·협의 권한은 「농지법」 제51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농지전용을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을 보장하되 농업·환경 및 경관의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특례는 제115조제9항에 따른 영농이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영농이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 요건, 인·허가 의제, 주민 참여, 임대차 기준, 송·배전설비 확충, 영농 이행 의무 및 위반 시 과징금·승인 취소·원상회복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농지법」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권한 및 위임 범위 등을 통하여 농지 보전의 기본 틀을 설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정안 제32조의7은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 태양광 지구에 대하여 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허가·협의 권한을 포괄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 소득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허가와 같은 핵심 권한을 도지사에게 폭넓게 이양하고, 이에 연동하여 다수의 인·허가를 의제하는

구조는「농지법」및 관련 개별 인·허가 법령과의 정합성, 국가 차원의 영농형 태양광 제도 설계 방향,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필요성과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에 관하여 별도의「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제정과「농지법」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에서 재생에너지지구 등 기존 농촌공간 재구조화 제도를 활용한 제도화를 추진 중이므로, 전북특별법에 한정하여 '영농형 태양광 지구'를 별도로 두는 것은 중복·과잉입법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영농형 태양광은「농지법」제36조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 제도를 활용하여 허용할 예정이므로, 전북에만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별도 특례를 추가 부여할 필요성은 크지 않으며, 영농형 태양광 제도는 전국 공통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8)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특례 (제32조의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8(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

현 행	개 정 안
	상부장관의 권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우선 지정하도록 하고, 특화지역계획 및 지정의 경미한 변경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현행 분산에너지법은 시·도지사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청취 및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화지역 계획·지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32)]

개정안은 이러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변경 과정에서 도지사 역

3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제33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의 변경)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이하 “관할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6조에 따라 승인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할을 강화하여 지역 주도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특정 지역에 대한 “우선 지정” 의무 부여 및 지정 변경 권한의 이양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법상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 및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후 장관이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하는 제도이므로, 전북자치도 신청분을 우선 지정하도록 하거나 특화지역계획·지정 변경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특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및 에너지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입장임.

(19)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제32조의9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9(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4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태양광,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④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⑤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력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4만킬로와트 이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대하여「전기사업법」및「전기안전관리법」상 중앙정부의 인허가·안전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도지사 소속 위원회 심의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대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2만킬로와트 이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한정하여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갈음하는 등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33] 개정안은 권한 범위와 대상 용량(4만kW 초과 협의 규정, 3천kW 초과 위원회 심의 등), 조례 위임 수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보다 폭넓은 특례를 설계하고 있어, 현행 「전기사업법」 체계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이를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계통 영향과 지방 권한 강화를 함께 고려할 때, 전기사업법상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중 2만킬로와트 이하 비중앙급전 설비에 한정하여 발전사업 허가 등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전기사업법·전기안전관리법상 세부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특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9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2만킬로와트 이하인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할 때 제2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④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⑤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 전기요금차등 적용에 관한 특례 (제32조의10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10(전기요금차등 적용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전기사업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전북자치도 내에 공급하는 경우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와 협의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정 작성시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공급되는 전기에 대하여 국가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이용요금·이용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및 공급조건을 정할 때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다만, 전기요금과 전력계통을 전국 단일 체계로 운용하면서 제한적 지역 차등만 허용하는 현행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법 체계에서 전북에만 별도의 요금 차등과 도지사 협의 의무를 두는 것은 중앙 규제체계와의 역할 중복, 요금체계의 통일성·공정성, 타 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요금은 전국 소비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전북자치도에서 생산·소비되는 전기에 대해 요금을 별도로 차등 적용하거나 요금 약정에 도지사 협의를 의무화하는

특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및 부담 전가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전기요금 인센티브는 분산에너지법상 분산특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5. 전환산업 진흥 (제3편제3장)

(1) 이차전지산업의 진흥 (제38조)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이차전지산업의 진흥) <신 설>	제38조(이차전지산업의 진흥)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를 이차전지산업의 국가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국가계획과의 연계 2.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 실증·시험, 성능·신뢰성 평가 인프라의 구축 및 공동 활용 3. 이차전지 원료·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4. 이차전지산업 관련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또는 규제특례의 적용 5. 이차전지 전문인력의 양성, 유치 및 정착을 위한 특화 인력지원 사업 6. 이차전지산업 관련 전력·용수·폐수·물류 등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대한 국가 지원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1항에 따른 특화단지 우선 지정 8. 그 밖에 전북자치도의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국가는 제1항에 따	③ -------제1항 및 제2항에------사업을 추진함

현 행	개 정 안
른 시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에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재정지원 사업에서 전북자치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국가가 전북자치도를 이차전지산업의 국가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 연계, 연구·실증 인프라 구축, 공급망·인력·기반시설 지원, 규제특례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등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도 이차전지산업에 관하여 개정안과 거의 동일한 특례를 두고,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34] 개정안이 이차전지산업 국가 전략거점 육성 및 우선 지원 구조를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유사하게 설계한 것은 국가

3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1조(이차전지산업 육성에 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이차전지산업의 국가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국가계획과의 연계
2.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 실증·시험, 성능·신뢰성 평가 인프라의 구축 및 공동 활용
3. 이차전지 원료·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4. 이차전지산업 관련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또는 규제특례의 적용
5. 이차전지 전문인력의 양성, 유치 및 정착을 위한 특화 인력지원 사업
6. 이차전지산업 관련 전력·용수·폐수·물류 등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대한 국가 지원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의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지원 사업에서 통합특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차원의 이차전지 특화단지·전략산업 정책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이와 같은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문구가 복수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중복 부여될 경우 국가정책 추진 시 충돌 및 실효성 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특례의 적용 및 우선 지원 여부에 관하여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2) 무인이동체 시범운용구역 지정 특례 (제41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2(무인이동체 시범운용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 내에서 무인이동체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새만금사업지역 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및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장관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정구역 내에서는 도조례에

따라 무인이동체 기술 실증·상용화를 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여 드론 실용화·사업화를 위한 인허가 유예·면제·간소화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은 시·도지사 등의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도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및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용구역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바,[35]

개정안이 새만금을 드론·UAM 실증·상용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범구역 지정을 유도하고 도조례에 근거한 규제 특례 부여를 가능하게 하는 점은, 선행 입법례를 고려할 때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어 보임.

---

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8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제257조(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북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는 부분은, 드론·UAM 관련 국가 전략의 일관성 및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량규정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및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에서는 이미 각 개별법에서 비행승인·안전성인증 등 규제 완화 및 특례를 두고 있고, 도심항공교통이 아직 제도·기술 정착 초기 단계임을 감안할 때 규제 특례 부여 권한을 도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도지사의 지정 신청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우선 검토만 규정하고 별도의 규제 특례 조항(제41조의2제2항)은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운영 권한 이양 (제41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운영 권한 이양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 또는 제77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1. 특화단지 육성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관련 예산의 집행 및 관리 3. 입주 기업에 대한 인·허가 신속 처리 지원 4.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 관련 사무

개정안은 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북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단지 육성 시책 수립, 관련 예산 집행·관리, 인·허가 신속 처리, 세제·부담금 감면 사무까지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일부 인·허가·예산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법도 통합특별시장 신청 시 “우선 지정”을 허용하면서, 관련 예산 집행·인허가 등에 관한 권한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36)]

이에 비해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보다 위임 대상 범위를 넓

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6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예산의 집행, 인허가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혀 특화단지 육성 시책 수립,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 사무까지 도지사 위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화단지 정책의 기획·재정·조세·규제 권한을 보다 폭넓게 이양하려는 것임.

다만,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는 원칙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율해야 할 사항으로 개별 지역특별법에 명시할 실익이 크지 않고, 부담금 감면 특례 역시 해당 부담금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법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특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유사한 구조(예산·인허가 등으로 한정)로 정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한편,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을 통하여, 부담금 감면은 각 부담금 근거법률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규율·정비해야 한다는 현행 체계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특례에서 대통령령으로 별도 세제 지원 특례를 두거나 부담금 감면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4) 전북미래전략산업의 육성·지원 특례 (제41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4(전북미래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원 특례)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가 다음 각 호의 미래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고 행정적·

현 행	개 정 안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차전지 산업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산업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4. 방위산업 및 이와 연계한 특수목적선 선진화 산업 5. 무인기, 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산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육성하고자 하는 미래 신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이차전지, 수소, 탄소소재 융복합, 방산, 무인이동체 등 미래전략산업을 관련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이들 산업 육성을 위한 필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특정 지역의 전략산업을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전국 단위 정책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유연성을 저해하고,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예타 면제는「국가재정법」체계에서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 전략산업 정책과의 정합성 및 예타

면제 요건의 적정성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방위사업청은 제41조의4 제1항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미래산업 전환 촉진지구의 지정 (제41조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5(미래산업 전환 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미래산업 전환 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등 기존 주력산업의 매출 또는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2. 탄소중립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을 위하여 기업의 업종 전환, R&D 지원 등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산업 전환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업의 업종 전환,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 지원 2. 근로자의 직무 전환 교육, 재취업 훈련 및 고용 안정 지원 3. 미래 모빌리티 등 대체 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

현 행	개 정 안
	4. 그 밖에 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정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해제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기존 주력산업의 위축이 우려되거나 탄소중립·미래 모빌리티 전환을 위하여 집중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미래산업 전환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업종 전환·R&D·고용·대체 산업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촉진지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의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48조는 중앙정부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지정·지원할 권한과 책무를 두고 있고,[37]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장이 정부에 특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정 여부·지원 수준은 탄소중립기본법상 위원회 심의와 정부 재량에 맡기

3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고 있음.[38]

이에 비추어 보면, 도지사가 산업·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미래산업 전환 촉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하려는 기본 취지 자체는 탄소중립기본법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방향과도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제3항처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지원에 관한 정부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도지사 권한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촉진지구 운영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을 법률상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정의로운 전환 제도를 국가 주도 정책수단으로 설계한 탄소중립기본법 체계 및 다른 시·도·특별법과의 형평성, 국가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는 탄소중립기본법상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산업의 사회·경제적 피해 완화를 목표로 설계된 제도인 반면, 개정안의 미래산업

---

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1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① 통합특별시는 정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지역을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국가는 특별지구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환 촉진지구는 미래 모빌리티 등 일반적인 산업구조 전환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되고 있는바,

양 제도의 적용 범위와 정책 목적에 차이가 있음에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관련 권한을 미래산업 전환 촉진지구에 일괄 연계하는 것은 정의로운 전환 제도의 탄소중립 연계성과 목적 범위를 넘어설 여지가 있다고 보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41조의5 제3항이 탄소중립기본법상의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와의 연계 규정 없이 정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귀속시키고 있어 상위법 체계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제5항은 촉진지구가 자치사무이고 별도 기금 등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국비 지원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임.

또한 고용노동부는 미래산업 전환 촉진지구는 주로 미래 모빌리티 등 특정 산업 전환 대응을 위한 제도인 반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는 탄소중립 이행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피해 완화를 포괄하는 별도의 국가 제도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른 두 제도를 전제로 정부 권한을 일괄 도지사 권한으로 본다고 규정한 제41조의5 제3항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6) 미래산업 전환 촉진기금의 조성 (제41조의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6(미래산업 전환 촉진기금의 조성 등) ① 도지사는 제77조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원 및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산업 전환 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북자치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및 출연금 3. 기금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촉진지구 내 기업의 업종 전환 및 기술 개발 지원 2. 근로자의 고용 유지, 전직 훈련 및 취업 지원 3. 미래산업 전환에 따른 지역 경제 영향 분석 및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산업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현행법 제77조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원과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특별회계 전입금과 국가의 보조금·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미래산업 전환 촉진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전북특별법 제77조는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미래산업 전환 촉진기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개정안 제41조의5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미래산업 전환 촉진지구의 지원과 연계된 기금으로 이해됨.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개별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며, 일부 지자체에서 탄소중립·산업전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후대응기금 등 유사 목적의 기금을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고용 전환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취지 자체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이 미래산업 전환 촉진기금의 재원에 관하여 국가의 보조금·출연금 지원을 법률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다른 지역·유사 기금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재정 지원을 임의규정 형태로 두거나 구체적인 지원 기준·범위를 설정하는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7)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제41조의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7(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 산업기술 발전, 인재 양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업계와 대학 간의 협력(이하 “산학협력”이라 한다)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등을 영위하는 기관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

현 행	개 정 안
	로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산학협력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거나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미래첨단산업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학협력 선도지구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대학·연구소·기업 간 연구개발 및 기술 이전 2.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교육 및 채용 3. 취업 및 기업 지원 4. 해외 우수 기술 및 인력 유치 5. 그 밖에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안은 도지사가 연구개발, 산업기술 발전, 인재양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기관·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 등을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미래첨단산업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지구의 조성·운영과 관련된 연구개발, 인재양성, 취업 지원, 해외 인력·기술 유치 등에 대하여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39]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3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지역 산학협력·인재양성에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적 틀을 이미 마련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도 차원에서 산학협력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지역의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연계된 산학협력, 인재양성, 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정책 취지 자체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이 산학협력 선도지구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는 부분은, 산학협력 지원을 재량규정으로 두고 있는 산학협력법 체계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등에서 산학협력 관련 국가 지원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입법례[40]에 비추어 볼 때, 국가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유사 특별법 및 상위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협력 선도지구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 재량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5조(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학협력 선도지구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2.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3.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4.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5. 그 밖에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부는 산학협력 선도지구 지정 자체에는 동의하되,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래첨단산업 지역'을 우선 지정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은 실효성이 낮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산학협력 선도지구에 대한 지원 역시 국가와 전북자치도가 재정여건과 정책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 형태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제41조의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8(「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2항, 제17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3항, 제1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7조의4제1항·제7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

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관리, 벤처·창업기업 지원 등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대통령령·부령 위임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관리 권한과 세부 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이와 관련한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대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사전협의 및 자료제출·실태조사 협조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41)]

개정안이 도지사에게 벤처기업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하고 도조례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한 것은 지역 특성에 맞춘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및 신속한 정책 집행 측면에서 일정 부분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는 지정 신청은 시·도지사가 하되 지정 여부와 세부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전남광주통합특별법도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 및 성과 점검 장치를 두고 있는바, 개정안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와의

---

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2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해제 및 취소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7조의4제1항·제7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소속기관의 장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한 통합특별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사전협의, 성과 점검, 자료 제출 및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의무 등을 병행 규정함으로써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9) 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운영 (제41조의9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9(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창업 생태계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지사가 지정한 창업 집적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해당 지구 내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최근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투자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에서도 기술창업·투자·기업 성장이 이어지는 자생적 창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스타트업 파크, 딥테크 창업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지역 창업 거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42)]

4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구·광주·대전·울산에 딥테크 창업생태계 구축”, 2026.5.21.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4853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도지사가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지원 가능성을 명시하는 것은, 전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업 클러스터와 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타 특별법과의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입법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창업 집적 시범지구에 대한 국가지원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43] 개정안이 국가지원을 강행규정으로 두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10)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의10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10(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공간의 에너지 효율화와 시민의식 전환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

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4조(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창업 생태계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창업 집적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2. 도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3.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5. 그 밖에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시군구 단위 및 탄소중립 도시 내 지역의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고려 요소 분석 2. 인구현황 분석 3. 도시 기본특성 분석 4. 기후재해 취약성 분석

개정안은 도지사가 도시공간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흡수원 확충, 생태축 보전, 자원순환 등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포함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해당 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며, 국가는 이에 필

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의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부과하면서 국가 지원을 임의규정으로 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체계와 유사[44]하여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북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항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유사한 취지로 입법화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상의 탄소중립도시 규정을 참고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4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7조(탄소중립도시의 조성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공간의 에너지 효율화와 시민의식 전환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탄소중립 시범사업, 녹색기술산업 및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합특별시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2. 탄소중립도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 및 개선 사업
3. 탄소중립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5. 그 밖에 탄소중립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국가는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 탄소융복합 미래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지원(제41조의11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11(탄소융복합 미래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① 국가는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전후방 산업의 연계 육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관할 구역 내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및 새만금사업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탄소융복합 미래신산업 클러스터(이하 “신산업 클러스터”라 한다)를 조성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활동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1. 우주·항공 및 미래 모빌리티용 탄소소재 부품의 연구개발 및 시험 평가 시설 2. 친환경 선박 및 해양 무인체계 등 특수목적선 실증·생산 지원 시설 3. 탄소융복합 기술 관련 벤처·창업 기업의 입주공간 및 지원 시설 4. 미래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기관 5. 그 밖에 신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는 신산업 클러스터의 확장과 원활한 기업 입주를 위하여 진입 도로, 용수 등 기반 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신산업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조세 감면, 정책 자금 융자 등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신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을 설치하거나 이에 준하는 별도의 재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산업통상부,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전북의 탄소 산업과 연계한 미래 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전북 관할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사업지역을 중심으로 국가가 탄소융복합 미래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구개발 및 실증, 벤처·창업 기업과 인력양성 시설 지원, 기반시설 확충, 입주기업 인센티브 부여, 도지사의 미래 신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은 클러스터의 조성, 관련 시설·활동 지원, 기반시설 확충, 기금 조성 등을 모두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특정 지역·클러스터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정책 지원을 지역 특별법에서 사실상 의무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재정·예산 운용 자율성 및 다른 지역·산업 클러스터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례의 필요성 및 범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및 새만금사업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지원은 입지 여건, 기업 수요,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의 조성·지원 의무를 법률상 강행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신산업 클러스터 관련 행정·재정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조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지원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재량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재정경제부는 조세감면은「조세특례제한법」등 일부 세법에서 한시적으로 규율하고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현행 체계상, 개별법에 별도의 감면 규정을 추가할 실익이 없으므로, 제3항에서 '조세감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2)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제41조의1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12(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북자치도를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하는 청정대기산업 및 자원순환산업의 전략적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정대기, 자원순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청정대기, 자원순환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 및 친환경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비배기 미세먼지 저감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저감기술과 함께 타이어·브레이크 마모분진, 도로 재비산먼지 등 비배기 오염원 관리 및 저감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3.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비배기 오염 특성을 고려한 대기환경 관리 기술 및 정책 연계형 실증사업 4.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수송·교통 부문 연계형 융합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증 5. 비배기 미세먼지의 발생·이동·노출 특성 분석을 위한 측

현 행	개 정 안
	정·분석·검증 및 표준화 기술 개발 6. 대기질 측정·분석·검증을 위한 시험·인증·실증 인프라 구축 7. 청정대기산업 및 친환경 자동차 연관 기업,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집적화 및 이전·입주 지원 8. 태양광 발전설비의 사용종료 또는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태양광 폐패널의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실증, 사업화 및 관련 기업·기관의 이전·입주 지원 9. 태양광 폐패널을 포함한 환경·에너지 분야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10. 기타 미세먼지 저감 등 청정대기산업과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형 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법률에 따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를 미세먼지 저감, 대기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하는 청정대기산업 및 자원순환산업의 전략적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정대기·자원순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관련 연구개발·실증, 인프라 구축, 기업 집적화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국가 및 통합특별시가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클러스터 등을 포함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조성과 운영에 대한 국가지원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음.[45]

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9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녹색산업등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

그런데 개정안은 클러스터 조성·지원에 대해서는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3항에서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클러스터의 조성·운영 비용을 “다른 법률에 따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특정 지역·클러스터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을 개별 지역특별법으로 의무화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국가 재정운용의 자율성, 다른 지역·산업 클러스터와의 형평성,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의 지원 범위에 재량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색융합클러스터 특례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나, 전북자치도의 청정대기·자원순환 관련 개별 클러스터에 한정된 조문 구조보다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반에 대한 지역 특례로 재구성하고, 주체를 ‘국가 및 전북자치도’로 명시하며, 지원 내용 역시 동 법률의 체계와 기본계획 등에 부합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아울러 클러스터 조성·

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1.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2.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클러스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녹색산업등(이하 이 조에서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의 연구 및 기술 개발
2.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 지원
3. 녹색산업등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
4. 그 밖에 녹색산업의 육성 및 집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운영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도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재정 여건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이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점을 감안할 때,[46] 제2항제7호[47]에 관한 규정은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탄력성을 제약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3)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육성에 관한 특례 (제41조의1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13(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육성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탄소포집·이용·저장 및 활용에 대한 기술의 개발과 발전 및 실증, 집적화단지의 지정, 집적화단지 내 포집 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가가 전북자치도에서의 탄소포집·이용·저장 및 활용(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 개발·실증, 집적화단지

46) 경향신문, “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원 지원…2027년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2026.01.16.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61130001#ENT

47) 7. 청정대기산업 및 친환경 자동차 연관 기업,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집적화 및 이전·입주 지원

지정, 집적화단지 내 포집시설 등 관련 설비 및 산업기반시설·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운영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최근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에서 도입된 집적화단지 지정·지원 제도의 기본 방향에는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지원 대상을 “전북자치도의 CCUS 관련 기술 개발·실증, 집적화단지 지정 및 관련 인프라”로 한정하여 우선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 기본계획 및 집적화단지 육성계획의 전국 단위 전략과의 정합성, 다른 지역에서 추진·계획 중인 CCUS 산업 육성 정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에서 시·도지사의 신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집적화단지를 지정하고, CCUS 관련 설비 및 산업기반시설·공동연구 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집적화단지 지정·우선 지원 근거를 별도로 두는 것은 지정·지원 절차의 공정성과 지역 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해당 특례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4)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의1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14(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제1항·제2항·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11조[48]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대통령령·부령 위임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로

4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물을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진흥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하여금 해당 시설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서, 전북자치도의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SW산업 육성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진흥시설 조성·운영 계획에 대하여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법률상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개별 지역의 정책 선택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국가 재정을 사실상 자동 연계하는 효과를 가져와 국가의 재정·예산 운용 자율성을 제약하고, 유사한 SW 인프라를 추진하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원 규정을 재량사항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취소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되, 지정·취소 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사전협의 및 통보 절차를 두어 국가 차원의 관리·조정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정·취소 관련 사항을 특정 지자체 조례에 위임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유리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 위임 규정은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5)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41조의1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15(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도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특화단지에 대하여 국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서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및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49]

4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8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3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법 및 유사 입법례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전북의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16)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 특례 등 (제41조의16·제41조의1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16(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 1. 전력(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한다)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폐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연결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5. 그 밖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반도체산업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의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신속한 미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산업기반시설 조성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41조의17(반도체·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에 반도체 및 방산클러스터와 연계한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의 발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나. 반도체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2. 방산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위산업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나. 방위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다. 기업 유치 및 지원 3. 반도체 및 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산업 기술 융합 지원 나. 산업 간 협력 촉진 ② 제1항 이외에 반도체, 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가 반도체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반도체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현 행	개 정 안
	제3항에 따라 전북자치도 관할구역에 소재한 연구기관을 반도체 연구센터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 연구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북 관할구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특화단지 및 반도체·방산 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반도체 연구센터 운영 등에 대하여 국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산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성·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또는 면제를 허용함으로써 전북의 산업구조를 국가 첨단전략산업 정책과 긴밀히 연계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산업통상부장관의 특화단지 우선 지정, 산업기반시설 조성 비용 지원을 모두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50] 개정안은 ① 반도체 특화단지 '우선 지정'의 의무화, ② 산업기반

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0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력(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한다)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설 조성·지원에 관한 강행 규정 및 ‘우선 지원’ 의무, ③ 예비타당성 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까지 포괄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특례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운용의 자율성, 다른 지역·산업과의 형평성, 재정사업 심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 특화단지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조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법률상 의무보다는 재량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제41조의16 제3항).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5조제3항이 ‘반도체 연구센터’의 개념이나 지정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반도체 연구센터 우선 지정’을 명문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전북자치도의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 연계를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제41조의17 제3항 및 제4항 관련).

---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폐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연결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5. 그 밖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51조(반도체·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반도체 및 방위산업과 연계한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반도체, 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반도체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반도체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연구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7)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특례 (제41조의18~제41조의21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18(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신 설>	제41조의1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항, 제7조제7항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개발사업에 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37조제1항·제2항·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37조제4항·제5항, 제46조의2제3항, 제46조의4제2항 및 제46조

현 행	개 정 안
	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신 설>	제41조의20(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 설>	제41조의21(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거점 공항 및 항만과 연결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진입도로, 국가 기간 철도망과 연결을 위하여 건설하는 도로·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기반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전북 관할지역에 대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일부 권한과 대통령령·부령 위임사항을 도지사 및 도조례로 이양하며, 관할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북에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거

점 공항·항만 및 국가기간 철도망과 연결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해당 기반시설은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려는 것임.

개정안이 부여하는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권한, 산업입지·개발 관련 권한의 도지사 이양,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요청 특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이미 규정된 특례와 유사한 구조로서, 지역이 전략산업 입지와 산업단지 개발을 보다 주도적으로 설계·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자치분권 및 지역 산업정책 측면에서 일정 부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전북에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와 연계된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은,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산업단지 관련 기반시설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 일부 보조를 전제로 하고 있고, 전남광주통합특별법도 유사한 기반시설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51] 국가 재정 부담을

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2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따른다.
제193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항, 제7조제7항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전단·후단, 제26조제3항 전단·후단, 제27조제2항 전단,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법률로 고정하고 재정사업 타당성 심사 제도를 사실상 우회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가 재정운용의 자율성, 다른 지역·산업단지와의 형평성, 재정사업 타당성 심사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액 국비 지원 및 타당성 평가 의제 규정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41조의18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권을 부여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가산업단지 지정에는 입지 여건, 기업 수요,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회신 기한을 30일로 한정하는 제3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제41조의19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교통·전력·

같은 조 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7조제1항 단서, 제7조의2제1항 단서,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전단·단서, 제1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37조제4항·제5항, 제46조의2제3항, 제46조의4제2항 및 제46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통합특별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제194조(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에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거점 공항 및 항만과 연결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진입도로, 국가기간 철도망과의 연결을 위하여 건설하는 도로·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98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용수 등 인프라 부담과 산업입지 정책이 현재 국토교통부 및 하위 법령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조례에 포괄 위임하기보다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제41조의21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전북자치도 내 신규 산업단지의 공항·항만 연결 도로 및 국가기간철도망 연계 도로·철도 등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재정여건, 타 지역과의 형평성, 개별 사업별 타당성 검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전액 국비 지원 및 타당성 평가 의제(면제)를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예산의 범위에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전환하고, 타당성 평가 면제에 해당하는 제2항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전북자치도는 제41조의19제2항이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실시계획은 도지사로 이원화함으로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 원스톱 절차 적용이 오히려 곤란해져 산업단지 조성 기간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실익이 적고, 제41조의20에는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52] 해당 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52)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98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문구 명시

(18)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등 특례 (제41조의22·제41조의2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22(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7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추진이 시급한 산업단지의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제41조의23(노후산업단지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 해제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 산업기능 유지, 일자리 감소 최소화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군·구에 위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노후산단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한다. 1. 산업단지 이전을 위한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비용 2. 산업단지 이전에 따른 기업 공장 신축·개보수 등 이전 비용

개정안은 전북 내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추진이 시급한 노후거점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모 절차 없이 도지사 요청만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국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며, 노후산업단지 지정 해제 시 도지사가 산업기능 유지 및 일자리 감소 최소화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

을 수립·시행하거나 이를 시·군·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산업단지 이전을 위한 부지 조성·기반시설 설치 및 공장 신축·개보수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노후거점산단법")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공모·평가 절차에 따라 지정하고, 기반시설 정비 등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장 요청 시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노후산업단지 이전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이와 비교할 때, 개정안 중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우선 지정 특례와 노후산업단지 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위임 근거는 노후산단 정비·재편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역의 산업기능과 고용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경쟁력강화사업지구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국비 우선 지원 의무와 노후산업단지 이전 부지 조성·기반시설 설치·공장 이전 비용의 전액 국비 지원 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동일 분야에서 국가 지원을 임의규정 또는 지원 요청 수준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53]

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9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통합특별시장이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국가 재정 부담을 법률상 고정시키고 다른 지역 노후산단·도시재생 사업과의 형평 및 재정사업 투자심사·타당성조사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지역 간 형평성, 재정심사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41조의22와 관련하여, 노후거점산단법상 이미 공모 생략, 우선 지정 및 기반시설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또한, 제41조의23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지정 해제 시 산업기능 유지, 일자리 감소 최소화 및 지역경제 영향 등을 반영한 이전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노후산단 이전 비용의 전액 국비 지원은 재정 부담과 기존 지원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도지사가 국가와 협의하여 수립한 종합계획에 한하여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1조(노후산업단지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 해제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 산업기능 유지, 일자리 감소 최소화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노후산업단지 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련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군·구에 위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국가와 협의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국가에 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이전을 위한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비용
2. 산업단지 이전에 따른 기업의 공장 신축·개보수 등 이전 비용

부지 조성·기반시설 설치비 및 기업 이전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19) 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특례 (제41조의2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24(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신규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는 조성면적의 100분의 25 또는 산업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관할 산업단지에 대하여 조성면적 또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일정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을 거치지 않고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산업단지 내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수도권 외 시·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특구 지정·지원 기준, 면적 상한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과 산업통상부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법도 통합특별시장 신청 시 산업통상부장관이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지정권 자체는 장관에게 두고 있음.[54]

이에 비추어 보면, 개정안은 산업단지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범위를 좁히고 있기는 하나, 기회발전특구 지정권과 세부 기준 설정 권한을 포괄적으로 도에 이양하고 대통령령 위임사항까지 도조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 타 시·도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의 형평성,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5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5조(기회발전특구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특례 (제43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3조의2(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문화산업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55]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국가가 해당 시설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장이 문화산업법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재정이 투입되거나 공공기관·국가출연(출자)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정·해제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56]

---

5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3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

이에 비추어 보면,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포괄적인 지정·해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경우에 대한 승인 요건이나 지정·해제 결과 통보 의무 등 통제 장치는 두지 않고 있어, 중앙정부의 정책 조정 기능,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지원과의 연계,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의 정합성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해제 권한 자체는 도지사에게 부여하되,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같이 국가재정 투입이나 공공기관 참여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지정·해제 결과에 대한 통보 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국가 지원도 운영비 직접 지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재정 지원 범위 내에서 재량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가재정이 투입되거나 투입될 예정인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국가가 출연, 출자한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또는 해제 결과를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1) 체육시설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례 (제43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3조의3(체육시설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례)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전단·후단,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6조 본문·단서,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전문체육시설과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의 유치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국제경기대회를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하고, 시설 기준·허가·관리 등 다수의 위임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외 경기대회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운영, 국제경기대회 유치·육성과 관련하여 전북자

치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체육시설·국제경기대회 관련 권한 이양과 지원 특례를 보다 제한적으로 두고 있고, 국가 및 통합특별시에 대한 지원 규정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57]

개정안과 같이 광범위한 권한 이양 및 경기대회·체육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특례가 중앙·지방 간 체육정책 조정, 타 시·도와의 형평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안전과 기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체육시설 관련 규정 중 직장체육시설 기준 등 일부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고, 국제경기대회 및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을 우선·의무 규정으로 두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전북자치도 또한 체육시설 설치·운영 기준, 보험 가입, 안전·위생 기준, 휴·폐업 절차, 행정처분·과태료 기준 등은 체육시설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전국 단일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도조례로 달리 규정할 경우 지역 간 규제 격차와 사업자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민원이 많은

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356조(체육시설의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골프장 설치 요건 등에서 제도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1항 및 제2항 특례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22) 전북자치도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특례 (제43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3조의4(전북자치도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에 따라 이스포츠시설 구축·개선, 이스포츠대회 육성 및 이스포츠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5항, 제10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8조제6항,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북자치도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이스포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가가 이스포츠시설 구축·개선, 대회 육성, 국제교류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전북자치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이

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이스포츠법”)에 따른 일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과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도지사 권한 및 도 조례로 이양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스포츠법이 원칙적으로 국가 중심의 진흥·지원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를 통해 자체 진흥사업과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북자치도에 대한 우선 지원 및 권한·재정 지원 특례가 국가 차원의 정책 형평성과 제도운영의 일관성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특정 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은 지자체 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제1항에서 ‘우선하여’ 문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전북자치도는 이스포츠산업지원시설 지정이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e스포츠협회 등 민간 전문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역 우선 지정 특례의 실효성이 낮고, 관련 권한을 도에 이양하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공백·질 저하와 공모 국비 확보 제약이 우려되므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3)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특례 (제46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6조의2(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효력상실 및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84조·제85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58]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효력상실,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 전북특별법 제84조, 제85조 및 제88조를 준용하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해당 법률 내 개발사업 특례 규정(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인허가등의 의제, 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을 준용하도록 한 것과 유사한 구조로서,[59] 조성계획 관련 인·

58) **「관광진흥법」**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조성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①제52조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고시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9조(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제150조제2항제18호에 따른 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

허가 절차를 일괄 의제·통합 처리하여 사업 추진을 신속·간소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다만 현행 전북특별법 제84조, 제85조, 제88조는 각각 지역중소기업 지원, 학교·공공급식용 지역산 농산물 공급, 시험양식업 특례에 관한 규정으로 관광지 조성계획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인용조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임.[60]

(24)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46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6조의3(「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8조제4항·제8항,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제5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획의 시행, 효력상실 및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허가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56조부터 제158조까지를 준용한다.

60)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유사 특례와 관련하여 제15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57조(인허가등의 의제), 제158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제목의 전북특별법 개정안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를 준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현 행	개 정 안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기간·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인허가·관리, 관광개발계획, 관광편의시설 등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광범위하게 이양하고, 다수의 대통령령·부령 위임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관광정책을 자율적으로 설계·집행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관광진흥법상 장관 권한과 일부 위임사항을 통합특별시장 및 시조례로 이양하면서도 카지노업 관련 권한과 조례 위임 사항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조항도 상대적으로 제한된 범위로 열거하고 있는 반면,[61]

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8조제4항,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및 제7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카지노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2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4항, 제12조, 제13조제1항·제5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개정안은 권한 이양 대상 조문과 조례 위임 범위를 더 넓게 설정하면서 카지노업 등 고위험·고규제 업종에 대한 별도의 예외·통제 장치를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국가 차원의 관광산업 규제·지원체계의 전국적 일관성과 고위험 업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조정 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의 형평·정합성을 감안하여, 카지노업 관련 예외 규정 도입 여부 및 권한 이양·조례 위임 범위의 정비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분야 전반에 대한 권한·조례 위임은 수용하되, 카지노업 관련 사항과 전국 단위 관리가 필요한 일부 보고·등록 규정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5)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제46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6조의4(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농림·수산·해양 등 지역 특화 관광자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기간·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카지노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원이 우수한 지역은 관광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광역 거점 도시로서 정책조정 및 사업 연계를 총괄한다.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 내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62] 중 지역특화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산업을 우선 육성하도록 하고,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를 두려는 것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유사한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특례를 두면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과 달리,[63]

6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2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 중 장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안은 제4항에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범위 및 절차 전반을 도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국가 재정지원의 기준·우선순위 설정 등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가 될 우려가 있어 보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국가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범위를 도조례에 포괄 위임하는 제4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의 정합성, 국가 재정지원 기준의 전국적 일관성 측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등 상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구감소지역 관광 특례의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제2항의 국가 행정·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범위와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제3항의 세제 지원은 도조례에서 구체화하도록 국가 지원과 지방세 감면의 위임 구조를 구분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재정경제부는 제3항의 “세제 감면” 표현은 지방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한정되는 만큼, “지방세 감면”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0조(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농촌관광자원, 해양관광자원 등 특화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관광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유원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단지 조성사업을 인구감소지역 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권역별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지정 특례 (제46조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6조의5(권역별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별 의료 자원 특성에 맞춰 다음 각 호의 글로벌 의료관광특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1. 첨단의료권: AI 기반 정밀 의료, 중증 질환 치료, 뷰티·성형 2. 웰니스의료권: 해양 치유, 재활 의학, 한방 통합 치료 3. 산림치유권: 산림 치유, 명상, 안티에이징 ② 도지사는 특구 내에 국제진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환자의 입국부터 진료, 요양, 관광, 출국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며, 환자 및 보호자의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을 위한 행정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지역별 의료 자원 특성에 맞추어 첨단의료권, 웰니스의료권, 산림치유권 등 권역별 글로벌 의료관광특구를 지정·육성하고, 특구 내 국제진료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 환자의 입국부터 진료·요양·관광·출국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유사하게 의료관광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64] 의료·관광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7조(권역별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별 의료 자원 특성에 맞추어 다음 각 호의 글로벌 의료관광특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1. 첨단의료권: AI 기반 정밀 의료, 중증 질환 치료, 뷰티·성형
2. 웰니스의료권: 해양 치유, 재활 의학, 한방 통합 치료
3. 산림치유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산림치유
② 통합특별시장은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내에 국제진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환자의 입국부터 진료, 요양, 관광, 출국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며 환자 및 보호자의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을 위한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

(27) 해양자원 및 관광거점 조성 특례 (제49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9조의2(해양자원 및 관광거점 조성에 관한 특례) 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24조에 따라 해양레저관광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해양치유지구 지정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도지사가 요청하는 해양레저관광지구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해양치유지구 지정 권한의 전면적 이양과 해양레저관광지구 우선 지정 의무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해양치유지구에 관하여 '제안' 권한만 부여하고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별도의 특례를 두지 않는 것에 비해[65] 특례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된 것인바,

해양 관련 국가 차원의 계획과의 연계성, 다른 연안·도서 지역과의 형평성, 해양치유·해양레저 관련 개별법 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

6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3조(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을 할 때 해양치유산업의 광역적 연계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역이나 복수의 지역을 하나의 해양치유지구로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수의 지역이 하나의 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은 각 지역별 자원 특성을 고려한 기능 분담 및 연계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으로 고려하여 권한 이양 범위와 우선 지정 의무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지구·해양레저관광지구 지정은 국가 기본계획과 전국 단위 공모·심의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을 '우선 지정'하거나 지구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할 경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무분별한 지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음. 이에 따라 해양치유·해양레저관광 관련 특례는 지구 지정 자체를 이양하기보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유사한 수준에서 사업 지원·연계 강화 등으로 한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28) 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특례 (제49조의3 · 제49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9조의3(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전북자치도를 갯벌 생태관광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갯벌등의 지역을 갯벌관리구역(이하"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북자치도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경우 2. 갯벌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② 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제282조에 따른 전북자치도 갯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및 목적 2. 주요 갯벌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3. 지정대상구역 토지 및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4. 어업권·광업권 등 이용현황 5. 법령상 규제지역 현황 ③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과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사항, 제20조,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의 사항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도지사가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갯벌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사업 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갯벌등의 생물다양성 보전조치 3.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4.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5.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진흥 사업 6.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운영 지

현 행	개 정 안
	원 및 양성기관 운영 사업 7.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제49조의4(전북자치도 갯벌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갯벌관리위원회를 둔다. 1. 갯벌관리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구역별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청정갯벌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갯벌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갯벌생태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사항 7.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8.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9. 갯벌생태계 보전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0. 갯벌생태계 관리 및 보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갯벌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과 해양환경·해양수산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그 밖에 갯벌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9조의5(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전북자치도의 갯벌생태계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현 행	개 정 안
	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북 갯벌관리구역을 도지사가 직접 지정하고, 갯벌관리 관련 주요 권한과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도지사·도조례로 이양하는 한편, 갯벌관리·복원·생태관광·해설사·국제협력 등 도지사가 지정한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고(제49조의3), 전북자치도 갯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제49조의4), 갯벌생태계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49조의5).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갯벌관리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례는 부여하되 세부사항은 상위법을 준용하여 시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인식증진 사업, 생물다양성 보전조치, 관리구역에서의 업무에 한정하여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66]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 권한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광범위하게

6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0조(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해양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특례) ③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구역의 지정, 관리계획의 수립, 청정갯벌의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사업
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갯벌등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전조치
3.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도에 이양하고, 다수 갯벌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어 권한·재정 특례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바, 다른 연안 지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의 형평성, 갯벌 관련 개별법 체계 및 국가 해양·생태정책 조정 기능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특례의 범위와 국고지원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제49조의5와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로서 법령·운용지침에 따라 예외·면제 요건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예타 면제 근거를 별도로 두는 것은 재정사업 간 형평성과 국가재정법 체계, 중앙정부의 재정규율 기능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해양수산부는 제49조의3과 관련하여 ‘전북갯벌관리구역’ 지정·관리는 도지사에 일부 위임하되 전국 단위 정책과 재정지원은 국가 재량과 협의 체계를 유지하여 지역 간 형평성 및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제49조의4에 대해서는 갯벌관리위원회 심의 범위를 갯벌관리구역 지정, 관리계획, 청정갯벌 등으로 한정하고 위원 구성에서도 차관급 등 특정 직위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9) 유인도서 개발에 관한 특례 (제49조의6・제46조의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9조의6(전북자치도 유인도서 개발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를 글로벌 해양레저관광의 중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유인도서를 개발대상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전북자치도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섬 발전 촉진법」 제5조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도지사는 개발대상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목표 2. 지정섬 및 개발사업의 범위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③ 「섬 발전 촉진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도지사가 개발대상섬을 지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섬지역의 교통・통신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4. 풍수해나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방조

현 행	개 정 안
	제 시설과 산림녹화 등 국토 보전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후생·의료·문화 및 전기 시설의 설치·개선에 관한 사항 6. 섬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전북자치도의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섬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9조의7(개발대상섬 육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전북자치도의 개발대상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전북자치도 내 유인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상 개발대상섬으로 직접 지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조성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과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도지사 및 도조례로 이양하는 한편, 개발대상섬 지정 시 주민생활, 기반시설, 교통, 복지, 환경, 해양레저관광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하여 국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전북의 섬 정책을 도 주도로 기획·집행하고, 해양레저관광과 연계한 유인도서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 자체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 범위에서 개발대상섬을 지정하고, 지정섬의 고시에 관한 권한만을 이양하면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의무는 두지 않는 것과 달리,[67]

개정안은 개발대상섬 지정 기준을 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섬 발전 촉진법」상 다수의 권한 이양과 도조례 위임을 규정하면서, 주민생활, 기반시설, 복지, 환경, 관광 등 포괄적인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어, 섬 발전 정책에 대한 국가 재정책임이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고, 다른 도서 지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의 형평성, 섬발전법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특례의 범위와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제49조의7과 관련하여, 특정 광역자치단체의 특정 분야에 대해 포괄적 예타 면제 근거를 별도로 두는 것은 재정사업 간 형평성과 국가재정법 체계, 중앙정부의 재정규율 기능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법 체계의 정합성과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제49조의6제4항제7호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6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9조(유인도서 개발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 범위에서 통합특별시 내 유인도서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통합특별시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섬 발전 촉진법」 제5조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개발대상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목표
2. 개발대상섬 및 개발사업의 범위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0)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에 관한 특례 (제49조의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9조의8(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에 대한 특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북자치도의 해양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북자치도의 해양자원 보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전북자치도에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통합특별시장의 요청 시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일반적 재량 규정에 그치는 것과 달리,[68]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에 대한 '우선 지정' 가능성을 명시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에서의 사실상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권역별 지정 기준과 경쟁 절차를 전제로 한 현행 해양생태계법·시행령 체계, 다른 후보지역과의 형평성, 중앙정부의 공정한 심사·선정 기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정 문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추가

6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0조(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해양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특례)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해양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해양수산부는 도지사 요청 시 전북자치도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는 특례 취지에는 동의하되, 해양생태계법 및 시행령상 관계기관 협의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개정안의 “우선 지정” 문구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1) 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제61조)

현 행	개 정 안
제61조(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자연휴양림 지정・조성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① ---------- ---------- ---------- ---------- ---------- ----------이양하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③ ---------- ---------- ----------

현 행	개 정 안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미 이양된 자연휴양림 등 산림문화·휴양 관련 권한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추가하고,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 지정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다만,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확대하고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및 산림교육 관련 위임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전국 단위의 기준 및 품질관리 체계,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관련 법률의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2023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이 어렵고, 산림복지지구·단지, 산림교육전문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은 객관성과 공정성, 제도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 따라 국가가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전북자치도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과 산림교육센터는 전국 단일 기준과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서 관련 권한을 이양하는 경우 지역 간 관리 및 품질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는 반면, 유아숲체험원 등록은 지역 수요 및 여건을 반영한 지방 이양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제61조제5항 중 유아숲체험원 등록에 관한 권한만을 이양하고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및 산림교육센터 관련 권한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3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61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1조의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 및 제5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제7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3호 본문·단서, 제16조제5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23조제4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제9항, 제2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제8항,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51조제1항과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 제14조제1항·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안은 산림기본계획·시행계획, 임도·보호림·산림보호구역 관리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자원 조성·관리 권한과

「산림보호법」상 일부 보호·행위제한 관련 위임사항을 산림청장에서 도지사 및 도조례로 대폭 이양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 권한도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이는 산림자원 조성·보전·보호 및 산촌활성화에 관한 핵심 권한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광범위하게 전북자치도의 권한 등으로 일원화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산림·산촌 정책을 설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전국 단위 산림기본계획 및 산림보호·산지 관리 규율 체계와의 정합성, 타 시·도와의 규제·지원 수준의 형평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존의 위임 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권한 이양의 필요성 및 적정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산림청은 임도, 특수산림사업지구, 기업경영림, 벌채·조림, 산림보호구역 등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법체계 유지가 중요하므로 도조례 위임이나 권한 이양을 위한 특례 신설은 실익이 크지 않고, 포괄위임 금지 및 형평성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제3항의 산촌활성화지원센터는 전국 권역별 중간지원조직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전북자치도에 대해서만 별도 지정할 경우 정책 분리 및 국비지원 배제 우려가 있으므로, 도지사에게 지정권을 부여하더라도 국가 지정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행정체계 유지와 관리 책임을 도지사에게 함께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3) 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61조의3·제61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1조의3(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호, 제25조의3제1항제5호, 제25조의5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10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단서,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3조제4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2조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현 행	개 정 안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의3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25조의4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26조, 제28조제1항제2호·제4호, 같은 항 제5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0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2조제2항·제3항, 제43조제3항, 제47조제5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61조의4(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2. 「산지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3.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

개정안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제한지역 지정·해제, 복구·벌채·행위제한, 행정제재·과태료 등 광범위한 산림청장 권한과 대통령령·부령 위임사항을 도지사 및 도조례로 이양하고, 산지전용·일시

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산지전용타당성 심의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산지전용 관련 권한과 세부 기준을 포괄적으로 도에 이양하고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산지이용 활성화와 전북자치도의 재량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전국 단위 보전·이용 기준, 다른 시·도와의 규제 형평성, 산림·환경·재해 예방 측면의 안전장치 유지와의 정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산림청은 보전산지 지정, 산지전용·토석채취 제한지역, 대규모 산지이용 등은 국토 차원의 통일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므로 도지사 권한 이양 및 도조례 위임을 확대하는 제61조의3 특례는 수용하기 어렵고, 제61조의4 역시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에 한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심의하는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전북자치도는 현행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사무는 이미 시·도지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동일한 행정 수행이 가능하므로 제61조의3 및 제61조의4는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6. 생명경제 기반 구축(제4장)

(1)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제63조)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전북자치도의 지역 산업 발전과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발급 절차,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 체류기간의 상한 등을----------.
1. 농생명지구	<삭 제>
2. 복합단지	<삭 제>
3. 문화산업진흥지구	<삭 제>
4. 산악관광진흥지구	<삭 제>
② 제1항의 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	② 도지사는 다음----------외국인 우수 인력의 유치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증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기준 등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1. 도내 소재 기업(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 이 법에 따라 지정한 지구·단지에 입주한 기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신 설>	3. 도내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역기업에 취업하려는 유학생
<신 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류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사증 발급을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인력의 추천 기준, 규모, 관리 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특정 기업 종사자, 특구 입주기관 종사자, 도내 대학(원) 졸업 유학생 등에 대하여 사증 발급·체류자격 변경 기준을 요청하면 법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고, 해당 외국인의 가족에게도 사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이러한 구조는 강원특별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비해 출입국·체류에 관한 전북자치도의 재량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출입국관리법」 체계와의 정합성, 법무부장관의 일관된 출입국·체류 정책 운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외국인 과학기술인재 특례 (제67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7조의2(외국인 과학기술인재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전북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기관과 기구에 속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1항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전북자치도 내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과 연구개발특구 관련 기관·기구에 소속된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상 일반 기준과 달리 사증 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별도로 정하고, 이에 따라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이는 외국인 인재 유치와 정착 지원을 통하여 지역 대학 및 연구개발특구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적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됨.

다만 제67조의2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조항 제목은 “외국인 과학기술인재 특례”로 되어 있으나, 제1

항은 “전북자치도 내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기관과 기구에 속한 외국인”을 포괄하는 문언으로 되어 있어 실제 규율 범위가 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에 한정되는지, 일반 유학생·직원 등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조항 제목과 내용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연구개발특구법에 명시된 기관과 기구에 속한 외국인”은 공공연구기관, 대학,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특구지원기관 등 특구 관련 주체 전반에 소속된 외국인 인력을 의미할 여지가 있으므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과학·공학·의생명 등 과학기술 분야 인재로 범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둘째, 사증 발급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은 「출입국관리법」 체계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아래 법무부장관이 일원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바,

특정 시·도에 대하여 사증 발급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는 출입국관리법 체계의 전국적 일관성과 법무부장관의 정책·심사 재량을 제약할 소지가 있으므로, 특례의 대상 범위와 적용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69]와의 관계도 함께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6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별 연구기관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고, 외국인 과학기술인재(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같은 법 제25조의2와의 정합성·통일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 제67조의2의 적용 대상을 위 조문을 인용하는 방식 등으로 보다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70]

교육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는 외국인 유학생 관련 특례가 규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 중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분은 형평성과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새만금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 (제67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7조의3(새만금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① 도지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새만금에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 농생명지구
2. 복합단지
3. 문화산업진흥지구
4. 산악관광진흥지구

② 제1항의 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

70) 수정안 예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

현 행	개 정 안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필요하면 보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급대상과 지급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은 새만금에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도지사가 해당 시설 지원 및 이용 아동의 보육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유사한 구조[71]를 취하고 있음.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현재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및 지방사업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전북자치도 역시 도내 전 시·군으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72] 외국인 자녀 보육 정책을 이미 추진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보육료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는 외국인 아동의 보육권 보장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2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설치 등)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장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유치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유치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필요하면 보육·교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급대상과 지급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72) 프레시안, “전북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전 시군 확대…3월부터 바우처 지급”, 2026. 2. 3.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20315071456815

한편, 교육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인 자녀 양육 지원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 도지사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새만금에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4) 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등 (제74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4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등) ① 국가는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북자치도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가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용지매입비 융자,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자치도는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같은 유형의 자금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용지매입비·개발자

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73]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 자금 지원의 주된 책임을 국가에 두고 전북자치도의 역할을 보조금 지원으로 분리하고 있어, 국가·지방 간 재정분담 구조와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지원 주체와 범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5)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제74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4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가 또는 전북도지사가 소유하는 토지·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공유재산(이하 “재산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3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6조(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는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 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산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재산 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가·전북자치도 소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매각할 수 있게 하고, 임대기간,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임대료 산정·감면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일반 규정과 달리 대통령령 및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서도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제167조[74]를 두고 있으며, 그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내용은 개정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라는

7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7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통합특별시장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토지·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3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산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재산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⑦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⑧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국유지·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준용한다.

⑨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⑩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임대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다.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이미 다른 특별법에서 채택된 투자진흥지구 재산특례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전북자치도의 투자유치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지역 간 규제 형평과 투자 인센티브 체계의

한편, 재정경제부는 전북자치도 내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의 입법례[75]를 준용하여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 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특례 (제74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4조의4(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특례) 정부는 시장의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10년간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정부가 시장 내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공유지 사용료 등을 10년간 감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정부 및 통합특별시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

7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국제기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에 따라 10년간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76] 개정안은 정부에 감면 의무를 부과하여 재정·자산 운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량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 및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체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 여부를 임의규정으로 전환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주체인 도지사를 감면 주체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재정경제부는 다른 지역 특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비용 감면 의무를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구체적인 감면 범위·기간·절차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이라는 점을 들어 공유지 사용료 감면 주체로서 도지사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지역·유사 사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감면을 임의규정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7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8조(국유지·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유지·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10년간 감면할 수 있다.

(7) 투자진흥지구 조세·부담금 감면 (제74조의5·제74조의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4조의5(투자진흥지구 내 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제74조의6(부담금 등의 감면)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세·관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은 이미 각 개별 법률에서 감면 대상, 요건, 한도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제주투자진흥지구·새만금투자진흥지구 등 기존 투자진흥지구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해당 법률 체계 하에서 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특별법에서 별도의 조문을 통해 감면 범위를 추가로 넓히거나 새로운 감면 유형을 신설하는 것은 체계 정

합성과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임.

한편, 재정경제부는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만 규정하고 주기적으로 일몰·정비하는 것이 현행 체계인 만큼, 개별 특별법에 별도의 조세감면 규정을 두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 역시 지방세 관련 특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을 통해서만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74조의5에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직접 부여하는 방식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개별 부담금에 대한 감면 특례를 여러 조항에 산발적으로 두기보다는, 이를 포괄적·공통적인 부담금 감면 조항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의 효율성 및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는 입장임.

(8) 투자진흥지구로의 기업 이전 촉진 (제74조의7·제74조의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4조의7(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① 국가와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이전 시책의 수립·시행 등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8(가업상속공제에 관한 특례) ①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②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개정안 제74조의7은 국가와 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기업의 투자진흥지구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제74조의8은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기업의 투자진흥지구 이전 촉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유사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바,[77] 개별 법률에 따른 조세·재정 지원과의 정합성을 전제로 지역 투자유치 수단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일정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7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8조(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시책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다만,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 및 대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는 특례는, 가업상속공제가 본래 중소·중견기업(자산총액·매출액 5천억원 미만)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기술·고용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라는 점과 상충할 소지가 있고, 조세형평 및 부의 대물림 방지, 다른 지역 소재 기업·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지 전북 이전 인센티브만을 이유로 적용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재정경제부는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 세법에서만 규정·관리하는 것이 현행 체계로서, 개별 특별법에 별도의 조세감면 규정을 두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고, 가업상속공제 역시 전국 단위에서 대상·요건을 통일적으로 설계한 제도라는 점에서 전북 이전 기업에 한정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제74조의8 특례는 조세형평과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9)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특례 (제74조의9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4조의9(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전북자치도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현 행	개 정 안
	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외에 해당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로 이전하거나 전북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4조 제1항·제2항[78]에 따른 이전기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정 지원금액 외에 그 5~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을 국가가 추가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같은 법에 따른 이전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우대 지원(같은 법 제51조 준용)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79] 개정안은 전북자치도로의 이전·신설·증설

7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7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7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통합특별시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1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을 지정할 때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할 구역의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하여 추가 지원 비율을 법률로 고정하고 국가의 추가 재정 지원 특례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특례가 이전기업 지원제도의 전국적 운용 일관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국가 재정운용의 자율성에 부합하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10)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특례 (제74조의10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4조의10(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지원금액 외에 해당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같은 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분담비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가 총 금액의 100분의 7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할 때 전북자치도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법정 지원금액 외에 5~10% 상당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을 정할 때 국가가 총 지원액의 75% 이상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 지원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80] 개정안은 전북자치도로 국내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률과 국가부담비율을 법률로 직접 고정·의무화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특례가 국내복귀 지원제도의 전국적 운용 일관성, 다른 지역·산업과의 형평성, 국가 재정운용 자율성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전북자치도에 대한 우대 지원이 가능하다는 원칙만 법률에 두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11)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특례 등 (제74조의11~제74조의1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4조의11(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북자치도에 사업장을 신설·증설, 연구개발 등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총 금액의 100분의 7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8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8조(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로 국내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외에 해당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74조의12(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전북자치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74조의1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전북자치도 안의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국가유공자와 고령자를 채용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가 총 지원액의 75%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와 별도로 지원금의 5~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현금지원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하 경상거래 대금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전북자치도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고령자 고용 관련 의무의 일부를 적용 제외하는 대신 도조례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원 근거를 두려는 것임.

제74조의11의 외국인투자 현금지원과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통합특별시에 대한 우대지원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임의규정에 그치고 있는 것과 달리,[81]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에 대해서 국가 분담비율을 법률로 고정하고 추가지원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제도의 전국 단위 분담 및 인센티브 체계와의 정합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국가 재정운용 및 외국인투자 정책 추진의 자율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상위 법령 체계 내에서 국가의 재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제74조의12에서 경상거래 대금의 직접 지급을 허용하는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체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경상거래에 대하여 대외지급수단[82]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동일한 취지·내용을 취하고 있어[83] 외환규제 체계와의 정합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수용 가능한 특례로 보임.

---

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에의 사업장 신설·증설, 연구개발 등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82) 대외지급수단: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통합특별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의13의 경우, 전북자치도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대신 도지사가 국가유공자와 고령자를 채용한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보다 적용 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임.[84]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이라는 목적만으로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에 대한 보호·우대 규범을 지역·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고용상 차별금지 및 취약계층 보호 원칙, 다른 지역 외국인투자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국가보훈부는 제74조의13과 관련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원칙[85]과 기존 외국인투자지역·새만금지역 등에 대한 특례 수준을 감안할 때, 전북 전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국가유공자 고용의무를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

8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하면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85)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12)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제75조)

현 행	개 정 안
제75조(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도지사는 생명경제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줄 것을 제안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제75조(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도지사가 관할구역 내----------다음----------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4항에도----------해당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우선 지정하고 조성할----------.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도지사가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안은 도지사가 관할구역 내 일정 지역(현행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4항[86]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우선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86)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제3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와 그 밖에 지정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전북특별법 제75조는 도지사에게 새만금사업지역 중 협의로 정하는 지역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고, 실제 지정 여부 및 요건은 「연구산업진흥법」과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심사·결정하도록 하는 구조임.

이에 비해 개정안은 도지사가 신청하는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우선 지정’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과정에서 도지사의 영향력과 우선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제3호)에까지 연구산업진흥단지 우선 지정 특례를 확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연구산업진흥법」 및 시행령상 지정요건·절차와의 정합성, 기존 연구개발특구·산업단지 지정 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전북특별법 제75조가 이미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배제하는 특례(“…에도 불구하고 …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줄 것을 제안할 수 있다”)를 부여하고 있어, 추가로 “우선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는 문구를 둘 실익이 크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3)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에 관한 특례 (제75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5조의2(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이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은 같은 법 제6조에 근거한 전국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와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87] 현행 법체계상 이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제시·협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이와 별도로 전북자치도지사의 의견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법률에 의무규정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종합계획 수립 권한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계획의 전국적 일관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8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이 모든 연구개발특구를 대상으로 수립되는 국가 차원의 법정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 도지사의 의견을 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할 경우 정책 수립의 통일성과 연구개발특구를 보유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지사의 의견을 '반영'이 아니라 '청취'하도록 규정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14) 연구개발특구 변경 특례 (제76조)

현 행	개 정 안
제76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면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6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연구개발특구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변경----------면적을----------. <후단 삭제>
1.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	<삭 제>
2.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별 면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지구별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 면적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처럼 지구 규모별로 '10만㎡ 미만 또는 10% 미만'으로 이원화하지 않고, 지구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법[88]과 전북특별법은 모두 연구개발특구법의 기본 체계를 따르면서, 소규모·경미한 변경에 한하여 10만㎡ 또는 지구 면적의 10% 미만 범위에서 도지사 신청에 따른 변경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도지사에게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비해 개정안은 상한을 '지구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로 단일하게 규정함으로써, 면적 100만㎡ 이상의 대규모 특구의 경우 현행 '10만㎡ 미만' 기준보다 넓은 범위까지 간소한 절차로 조정할 수 있도록

8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0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한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연구개발특구 면적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별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
2.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별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지구별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제7항·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

허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 면적 변경 특례는 본래 지구별 10% 미만의 경미한 변경에 한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되, 전체 특구 규모에 따라 간소화 범위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한 규정의 성격을 가지는바,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른 시·도 연구개발특구와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5)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효율화 특례 (제76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6조의2(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효율화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북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법상 건폐율·용적률을 정할 때 건폐율·용적률을 정할 때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법령이 허용하는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반영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행 연구개발특구법 제44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음.[89]

즉,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용적률 완화는 이미 법·시행령에서 정한 200% 상한을 전제로, 각 특구 관할 지자체가 조례로 구체적인 최대한도를 결정하는 구조임.

이러한 현행 체계를 전제로 보면, 개정안은 200%를 초과하는 새로운 상한을 설정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전북연구개발특구에 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도지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미 허용된 완화 범위(200% 이내)를 최대한도로 적용하도록 하여 중앙정부의 재량을 좁히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연구개발특구법 제44조는 건폐율·용적률의 구체적 최대한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구조이므로, 특정

8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건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 하되,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의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특구에 대하여 법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최대한도 반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 정합성에서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임.

또한, 연구개발특구법 및 시행령은 전국의 연구개발특구에 공통 적용되는 토지이용 규율 체계로서, 건폐율·용적률의 완화 수준은 안전, 경관, 기반시설 수용능력, 인근 용도지역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전북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만 법률로 “최대한도 반영”을 의무화할 경우, 다른 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의 중앙정부의 재량범위를 제약할 우려도 있다고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연구개발특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통하여 이미 다른 법률과 달리 건폐율·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2배 수준까지 완화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전북연구개발특구에서도 이 일반법 체계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연구개발특구법 제44조가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전북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용적률 범위를 정함에 있어 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명시하되, 그 반영 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16) 연구개발특구 재투자 특례 (제76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6조의3(연구개발특구 재투자 특례) 도지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재투자 시기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하여 규정한 연구개발특구법 제32조의2[90] 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개발이익 재투자의 시기·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행 연구개발특구법 제32조의2는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유통시설용지 분양가·임대료 인하,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비용 충당 등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재투자 비율 및 절차를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적 귀속을 방지하고 특구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공공에 환류시키려는 제도적 취지를 구현하고 있음.

---

9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특구의 산업·유통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은 전북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재투자 시기와 방법을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구 내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재투자의 구체적 시기·방식은 재투자 제도의 실효성과 공공성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시·도 소재 연구개발특구와의 형평성, 특구 간 투자환경 경쟁에 미치는 영향, 개발이익 재투자제도의 기본 취지와의 조화 등을 함께 고려하여 특례 도입 여부 및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7) 실증을 위한 규제완화 (제76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6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북자치도에서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가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신청한 경우 전북자치도에서 우선적으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에서 신기술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실증을 수행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실증이 전북자치도에서 우선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다만, 신기술 실증은 이미 규제샌드박스[91], 규제자유특구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한 제도를 통해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국무조정실이 분담·협업하는 방식으로 전국 단위 심사·선정·특례 부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전북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규정할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및 기존 실증제도 운영 원칙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신기술 실증의 주체·절차가 분야별로 상이하고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관여하는 현행 체계를 고려하면, 실증 지원 의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한정하기보다는, 관련 소관 부처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제도운영 현실과 더 부합하는 입법 방안으로 사료됨.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북자치도 내 기업이 보다 폭넓게 타 부처 실증특례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 지원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확대하고, 타 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라는 표현을 삭제한 뒤 전북자치도에서의 실증을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91)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임(출처: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18) 과학기술산업 등의 기반 조성 (제76조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6조의5(과학기술산업 등의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조성 시책을 전북자치도에서 우선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92]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기반조성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전북자치도를 우선 대상으로 삼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다만, 「연구산업진흥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 차원의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특정 지역을 우선하는 구조는 두고 있지 않아, 전북자치도만을 대상으로 "우선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은 국가 연구산업 정책의 전국 단위 운영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92)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산업"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나.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다.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유지·보수하는 산업
라.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학기술산업’이 아닌 ‘연구산업’을 용어로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항도 의무가 아니라 재량에 가깝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문 제목과 내용을 ‘연구산업 기반 조성’으로 정리하고, 전북자치도에서의 연구산업 기반조성 시책에 관해서도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으로 완화하는 것이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19)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제77조)

현 행	개 정 안
제77조(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 ④ (생 략)	제77조(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1조의4제1항 각 호의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술 개발, 실증 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개정안은 전북특별법상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와 연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41조의4제1항 각 호[93]의 미래전략산업 관련 기술

93) **제41조의4(전북미래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원 특례)**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가 다음 각 호의 미래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차전지 산업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산업

개발·실증 사업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 제41조의4제1항이 이미 국가로 하여금 전북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관련 기본계획 반영과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77조에 다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의무를 두는 것은 내용상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또한 제77조에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할 경우, 개별 부처의 예산 및 사업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지원 의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그 적정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4. 방위산업 및 이와 연계한 특수목적선 선진화 산업
5. 무인기, 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산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육성하고자 하는 미래 신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7.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제4편제1장)

(1)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에 관한 특례 (제80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0조의2(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에 관한 특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전북자치도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상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절차와 별도로, 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전북자치도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재난안전법은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제60조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시·도지사 등)의 요청[94]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앙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이러한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통합특별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95]

이에 비해 개정안은 중앙대책본부장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지사가 곧바로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특별재난지역 선포 과정에서 중앙대책본부의 조정·심사 기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절차적 형평성 및 향후 타 시·도의 유사한 입법·제도 요구에 미칠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한편, 행정안전부는 도지사가 소관 중앙부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경우 행정체계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과 절차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재난안전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9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9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7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에 관한 특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통합특별시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지역대책본부장이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선포 건의를 “요청”하는 현행 체계 범위 내에서 특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2) 저출생 대응 특별기금에 관한 특례 (제83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3조의2(저출생 대응 특별기금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대응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출생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100분의 3을 매년 전북자치도에 보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보조금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3. 전북자치도의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4. 기부금 및 후원금 5. 기타 법령에 따라 수입되는 금액 ④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은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한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가 저출생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저출생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원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총액의

100분의 3을 정부가 매년 전북자치도에 보조하도록 하며, 동 기금을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시·도가 지방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정부출연금 1조원 및 동 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며,[96] 인구감소 정도, 투자계획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차등 배분하는 전국 공통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음.

이를 감안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3을 매년 전북자치도에 법정 비율로 보조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동일하게 인구감소·소멸 위험에 직면한 다른 시·도에 비해 전북자치도에 대한 배분을 구조적으로 우선·고정하는 효과를 가지게 됨.

이는 중앙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배분 재량을 제약할 소지가 있고, 향후 타 시·도에서 자치단체별 법정 비율을 요구하는 입법·정책적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시·도 간 형평성, 중앙정부의 기금 관리체계, 제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9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① 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3) 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 (제83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3조의3(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의 청년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주거 및 문화 향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확충 2. 청년 주거공간 지원 3. 기초생활인프라 및 문화·집회시설 확충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청년유출을 막고,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내 청년의 정주를 위하여 도지사가 청년 일자리·주거·생활인프라·문화·집회시설 확충 등 지역 특화 청년정책을 마련·추진하도록 하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청년 유출 방지 및 지역 유입·정착 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서 통합특별시장의 청년 정주 여건 조성 의무와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97] 전북자치도에 대하여도 청년 일자리·주거·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마련 의무와 국가의 지원을 임의규정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

9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5조(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의 청년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주거 및 문화 향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확충
2. 청년 주거공간 지원
3. 기초생활인프라 및 문화·집회 시설 확충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청년유출을 막고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에 관한 특례 (제83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3조의4(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2. 전북자치도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3. 기부금 및 후원금 4. 기타 법령에 따라 수입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지원 2. 청년창업기업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④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청년창업기업 진흥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의 청년창업 활성화와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조례로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전북 청년창업기업 진흥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서도 통합특별시장의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 설치·운용 근거, 재원 구성, 사용 용도 및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성을 개정안과 유사한 구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98] 전북

자치도에 대하여도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 설치와 국가 지원을 임의 규정으로 명시하는 것은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5)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제83조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3조의5(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 소재 지방의료원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하여서는 해당 시·군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고시된 시·군에 지방의료원을 설립(신축이전, 증축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9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4조(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2. 통합특별시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3. 기부금 및 후원금
4. 기타 법령에 따라 수입되는 금액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지원
2. 청년창업기업 지원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청년창업기업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에 소재한 지방의료원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고시된 기관에 대하여 국고 운영경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해당 시·군에 지방의료원을 설립·신축·증축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지방의료원 중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된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해당 시·군·구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99] 응급의료 취약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국고 우선 지원의 입법례가 이미 존재함.

이를 감안하면 전북자치도에 대해서도 동일 범주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고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으나, 국가 예산편성 재량과 공공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고려할 때, 의무규정보다는 재량규정으로 설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신규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하여 경제성·정책성·재정건전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서, 현재도 법률에

9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6조(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지방의료원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따라 제한적인 면제·제외 사유가 운영되고 있음.[100]

지방의료원 설립·신축·증축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고시된 시·군”이라는 특정 지역 범주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특례를 둘 경우, 다른 분야·지역의 공공의료·인프라 사업과의 형평성, 대규모 재정사업 관리에 있어 국가재정 운용의 일관성·중립성 측면에서 논란 소지가 있어, 예타 제도상 기존 예외 규율과의 관계, 동일 수준 취약지역에 대한 적용 범위 등을 고려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별 의료공급 현황과 기관 특성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의 경비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 규정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100)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6) 국·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특례 (제83조의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3조의6(국·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국·공립 정신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에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를 허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의료기관을 정신질환의 치료·재활과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시행령 등에서 열거한 일부 공

익시설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 허용하는 구조를 두고 있음.

이러한 법체계 하에서 전북자치도의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개발제한구역법상 행위제한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특례를 두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전국적 일관성과 다른 공공·복지시설에 대한 허용 기준과의 형평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이미 정신건강복지법 및 하위 법령에서 일반적 규율이 마련되어 있어, 전북자치도에 한정한 별도의 설치 특례를 둘 실익이 크지 않고, 전북특별법의 입법취지와의 직접적 연관성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들어, 전체 보건의료체계와의 정합성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국토교통부는 전북자치도 관할구역에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특례 조항의 실질적 효용이 없고,[101]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행위 기준은 개발제한구역법 체계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제도의 일관성에 부합하고, 특정 복지시설)을 위한 별도 예외규정은 다른 유사 복지시설과의 형평성 저해 및 향후 유사 입법 요구에 따른 제도 형해화 우려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측면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01) 전북자치도 역시 동일한 이유로 특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7) 산재 의료기관 등 설치·운영 특례 (제83조의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3조의7(산재 의료기관 등 설치·운영 특례) 전북자치도의 산업재해 근로자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연구기관 등을 전북자치도에 우선 설치·운영한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내 산업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1조제2항[10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연구기관 등을 전북자치도에 우선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행 산재보험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사업의 일환으로 재해 근로자의 요양·재활 및 직업 복귀를 위하여 의료기관·연구기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1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5호·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② 공단은 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산재전문병원·요양병원·의원 등 공단 의료기관이 인천, 경기, 경남, 대구, 전남, 대전, 강원, 울산 등 여러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나 전북자치도에는 전담 산재전문 의료기관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산재환자의 타 지역 원정 치료, 지역 간 산재 의료 인프라 불균형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103]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산업재해 발생 규모, 인구·사업체 구조, 인근 권역 공단 병원 분포 등 수요·공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전북자치도에 공단 직영 산재 의료기관의 우선 설치·운영을 유도하는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은 산재 의료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완화 및 산재 근로자의 의료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정책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음.

다만, 다른 권역과의 상대적 수요 및 형평, 공단이 전국 단위 산재보험 재원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입지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필요성, 향후 추가 설치·재배치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설치·운영한다”는 문구가 공단의 입지 결정 재량을 과도하게 구속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례를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북특별법에 근로복지공단의 전북 우선 설치 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공단의 사업계획·재정 여건, 예비타당성조사 등 공공 의료시설 입지 선정 절차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103) 경향신문, “요양재해율 전국 5위 전북, 산재전문병원은 ‘0곳’…노동자 ‘원정 치료’ 일상화”, 2025.10.23.,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231111001#ENT

(8)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 (제83조의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3조의8(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인력·사업(이하 “공공의료 인프라”라 한다)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책임의료기관과 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연계체계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공의료기관의 신축·증축·이전, 노후시설 개보수 및 의료환경 개선 사업 3.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중증·응급·분만·소아·정신의료 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권역별 전문의료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재난·응급의료, 필수의료 제공,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병원 및 관련 기반시설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안정화 및 장비·인력 확충 기반 사업 6.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의사의 양성·배치 및 장기 근무 유도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연구·생활기반 등 지원 사업 7.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에 편입·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인력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 책임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도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의료취약지의 병원 운영비 지원과 지역의사・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 및 전북자치도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의 신축·증축·이전 및 노후시설 개선, 필수의료 제공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응급의료취약지 지원, 지역의사·공중보건의사 인력 등 공공의료 인프라의 확충과 운영에 드는 비용·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의료취약지 병원 운영비 및 지역의사·필수의료인력 정주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또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의 신·증축, 필수의료 제공체계, 응급의료취약지 지원, 지역의사·공중보건의사 인력 등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하여 국가와 통합특별시가 재정·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포괄적으로 두고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병원 운영 및 필수의료 인력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104]

1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4조(공공의료 인프라등 확충에 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공공의료 인프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인력・사업을 말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책임의료기관과 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연계체계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공

이를 감안하면, 전북자치도에 대해서도 유사 범주의 공공의료 인프라 지원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에 필요한 재정·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며, 특례의 세부 조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특례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현재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양성·배치"라는 표현은 현행 상위

보건의료기관의 신축・증축・이전, 노후시설 개보수 및 의료환경 개선 사업
3.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중증・응급・분만・소아・정신 의료 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권역별 전문의료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재난・응급의료, 필수의료 제공,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병원 및 관련 기반시설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안정화 및 장비・인력 확충 기반 사업
6.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장기 근무 유도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연구・생활기반 등 지원 사업
7.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에 편입・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인력
8.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통합특별시 소재 지역암센터의 시설・설비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
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료 인프라등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책임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각각의 지역에 제공되던 응급・필수・공공의료 관련 국가의 재정지원 및 정책지원은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국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의료취약지의 병원 운영비 지원과 지역의사・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⑦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종합병원 개설과 연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공중보건의사, 책임의료기관 등은 각각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배치·지정 기준과 지원 원칙을 이미 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의 '우선 고려' 규정 역시 이러한 상위 법령상의 기준을 전제로 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8. 지역특화 발전과 민생경제 활력 (제4편제2장)

(1) 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제84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4조의2(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없이 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분석·검토한 후 추진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105]를 거치지 않고, 도 자체적으로 사업의 적정성을 분석·검토한 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조정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유사·중복 여부, 수혜자 선정과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같은 조항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중소

105)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협의 및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수혜자 선정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업 지원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협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체 분석·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전협의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통합특별시의 정책 재량을 일부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례를 두고 있음.[106]

이를 감안하면, 전북특별법 개정안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자체를 배제하기보다는 협의 절차는 유지하되, 협의 결과에 기속되지 않고 전북자치도의 종합적인 정책 판단에 따라 조정·보완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전국적 통일성과 전북자치도의 자율성 간 균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보임.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례 (제84조의3·제84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4조의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전북자치도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시장

1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9조(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 및 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분석·검토한 후 추진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상점가 활성화 지원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3. 주말시장의 지원 4.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해제 5.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6. 청년상인의 육성 7. 빈 점포의 활용 촉진 8. 상권활성화 지원 9.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전북자치도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북자치도 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84조의4(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전북자치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안 제84조의3은 전북자치도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5조제1항[107]과 별도로 전북자치도 내 전통

시장·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주말시장 지원,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육성 등 각종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대하여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행 전통시장법은 중장기 기본계획(국가 기본계획 및 시·도 계획)을 통해 전통시장·상점가의 시설 현대화, 경영개선, 상권활성화를 지원하는 체계를 두고 있고,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은 개별 사업·재정 여건을 고려한 재량적 지원 구조로 운용되고 있음.

이를 감안하면, 전북자치도에 대해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자율성과 일관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국가 지원을 일률적·포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기존 전통시장법 체계 및 중앙재정의 재량 운용과의 조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임.

따라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유사하게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임의·재량규정으로 정비하는 것이,[108] 전통시장법상

---

1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른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상인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7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

기존 지원 체계 및 국가 재정 운용의 탄력성과의 조화 측면에서 보다 적절한 입법방향으로 보임.

제84조의4는 전북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신규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하여 경제성·정책성·재정건전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서, 현재도 법률에 따라 제한적인 면제·제외 사유가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북자치도의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사업에 대하여 포괄적인 예타 면제 근거를 부여하는 것은 동일·유사 성격의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점가 활성화 지원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3. 주말시장의 지원
4.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해제
5.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지원
6. 청년상인의 육성
7. 빈 점포의 활용 촉진
8. 상권활성화 지원
9.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10.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통합특별시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전통시장·상점가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시·도 및 다른 분야 대형 재정사업과의 형평성, 예타 제도의 기능 유지 및 국가재정운용의 일관성 측면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 등 지상설치 지원 특례 (제84조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4조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 지상설치 지원 특례)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지하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에 신규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설치 의무와 연계하여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친환경자동차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공영주차장 등 대상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면서,[109] 구체적인 설치 위치·수량·기준은 시행령·지자체 조례에서 시설 규모·용도, 안전 및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대피 곤란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비용을 보조하는 조례·예산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110]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친환경자동차법 체계를 전제로,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거나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태로 지상 설치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111]

이를 감안하면, 전북특별법에서도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

10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10) YTN,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 이전비 지원 조례 첫 제정”, 2024.09.07.
https://www.ytn.co.kr/_ln/0115_202409071017067412

1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지원)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전이 안전성 제고 및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의 지원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탄력성과 다른 지역·유형 시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다 적절한 입법방향으로 보임.

(4)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제88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8조의2(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제4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제3항 전단, 제37조의13제2항 및 제37조의15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수산업법」 제60조 및 제81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수산 관련 규율 중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관련 대통령령 위임사항, 수산자원조성·수산질병 관련 대통령령·부령 위임사항 등 일부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 상 일부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으로써, 지역 수산자원 관리 및 수산업 행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 등은 수산자원의 보호·조성, 어장 이용·관리, 어업면허·허가 등에 관한 국가 단위의 기본 원칙과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을 규정하면서, 구체적 집행·관리의 상당 부분을 이미 시·도지사에게 위임·위탁하는 구조를 두고 있음.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어장 및 양식장 이용개발계획의 수립·승인, 일부 어업면허·시험어업·시험양식업, 수산자원관리법·수산생물질병관리법·낚시관리법상의 대통령령·부령 위임사항을 통합특별시 조례 및 시장 권한으로 폭넓게 전환하는 수산 분야 분권 특례를 포함하고 있음.[112]

---

1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1조(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산물 수출 진흥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수산식품의 해외시장진출 촉진에 필요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업법」 제4조제3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 해역에서 수립되는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승인 및 면허 처분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시행한다.
1. 개발계획 신청의 접수 및 검토
2. 개발계획의 승인
3. 면허처분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 및 최종 허가 통보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조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 수산자원 협정 이행에 관한 사항
2. 해양환경 보전 및 어선안전 확보에 필요한 국가 단위 규제
⑤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⑥ 「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제3항 전단, 제37조의13제2항 및 제37조의15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⑦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제81조제3항·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⑧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⑨ 「수산업법」 제46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

이와 비교할 때, 개정안이 그 중 일부 영역에 한정하여 도조례에 의한 규율 및 도지사 권한 행사로 전환하려는 것은 수산 분야 지방분권 강화라는 정책 방향과 일정 부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어장 이용·어업면허, 자원조성·관리, 수산질병 대응 등은 인접 시·도 수역 및 국가 차원의 수산정책과 밀접히 연계되는 영역으로서, 특히 국제협약·양허성 어업협정 이행, 해양환경 보전, 어선안전 확보, 해역 간 분쟁 방지 등 국가 단위의 통일적 규제가 요구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례 설계 시에는 이러한 국가·광역 단위에서 일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명시적으로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 자율성이 실익을 가지는 영역에 한정하여 도조례 및 도지사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지 아니하고 시험어업(근해어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수산업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⑪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⑫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⑭ 통합특별시장은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른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에 대하여서는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⑮ 제14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⑯ 통합특별시장은 제14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1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 및 국고보조사업 관리·감독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 관련 법령」상 해양수산부장관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여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 어려우며, 어구 규모 제한·어구·부표 보증금제 등 제도는 수산자원의 이동성, 해양환경의 연속성, 제도의 초기 운영 단계 등을 고려할 때 전국 단위의 통일된 기준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9.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 (제4편제3장)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특례 (제98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8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특례) ① 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거나 취수원 상황, 수질오염 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도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 전북자치도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3분의 2 이상 요구나 취수원·수질오염 상황 변화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전북자치도지사가 「수도법」 제7조제1항[113]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장관은 전북자치도·주민·전문가 의견을 들어 변경 여부를 검토한 후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한편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 및

113)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공고 권한(법 제7조제1항·제2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114]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는 시·도지사가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필요 시 신청이 없어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115] 현행 제도상 시·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과 절차를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이와 같은 위임·운영 구조를 고려하면, 전북자치도지사에게 장관에 대한 별도의 지정 변경 '요청권'과 장관의 검토·통지 의무를 추가로 명시하는 개정안의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다른 시·도와의 형평 및 수도법 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개정 필요성과 실효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수원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관리는 「수도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이미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지자체의 권한·책임 사항이며, 상·하류 지자체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을

---

114) **「수도법 시행령」**
제6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공고

115)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같은 시·도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5조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어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통해 처리되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는바, 전북자치도에 한하여 장관에게 지정·변경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특례를 둘 만한 실효성이 크지 않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전북자치도 역시 현행 「수도법」 제7조제1항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 권한은 같은 법 제78조제1항 및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어, 개정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10.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 규제 완화 (제4편제4장 신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99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승인·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 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갈음한다. ③ 전북자치도에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결정·구조·설치의 기준 및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3항,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2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

현 행	개 정 안
	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⑥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정한 행위를 같은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2호·제8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제2항·제4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

현 행	개 정 안
	서, 제8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의2 본문·단서, 제113조의3제1항제4호,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상의 일부 권한과 위임사항을 도조례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계획 분야에서 전북자치도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하려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구체적으로는

① 도지사가 도시·군기본계획을 확정하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승인·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제1항),

② 도조례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7조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용도지구를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지역·지구 신설 심의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갈음하며(제2항),

③ 도조례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제43조·제77조·제78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결정·구조·설치기준 및 건폐율·용적률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3항),

④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일부 구역 지정·변경,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협의 절차를

생략하며(제4항),

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일부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대체하고, 국토계획법상 다수의 대통령령·부령 위임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제9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을 포함하고 있음.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특례(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간주)와, 일부 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도지구 신설·건폐율·용적률 조정, 그리고 국토계획법상 특정 대통령령·부령 위임사항에 대한 통합특별시 조례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이러한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중앙과의 조정·통제 장치를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음.[116]

---

1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이 경우 해당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종합계획으로 본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승인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 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⑥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건폐율·용적률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의2

이에 비해 개정안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관계를 “광역도시계획 간주” 방식이 아니라 “도시·군기본계획 확정 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승인·변경 간주”로 정하여 위계관계를 뒤집고 있고(제1항), 국토부장관 승인·협의 생략(제4항),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의 전면 대체(제5항), 그리고 국토계획법상 광범위한 대통령령·국토부령 위임사항의 도조례 일괄 위임(제8항)을 통하여, 국토계획 체계에서 중앙정부의 통제·조정 기능을 크게 축소하고 전북자치도의 재량 범위를 상당히 넓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음.

국토계획법은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개발행위 허가 등 국토 이용·개발·보전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원칙과 절차 아래 운영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협의를 통하여 광역 차원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광범위한 범위에서 중앙 심의·승인·협의 절차를 지방에 대체·위임하는 경우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과 국가 차원 국토계획의 일관성·연계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전북자치도의 자율성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체계의 전국적 통일성과 광역·국가 차원에서의 조정 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적용 대상 조문, 위임 범위, 중앙과의 조정 장치 등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본문・단서, 제113조의3제1항제4호 및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제99조가 국토계획법이 전제하는 계획체계(국가계획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면적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대규모 개발 등에서 국가 차원의 광역적 검토·조정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조문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구체적으로는, ① 도시·군기본계획 확정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승인·변경된 것으로 보는 현행안(제1항)은 계획 위계를 거꾸로 설정한 것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같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② 용도지구 신설 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지역·지구 신설 심의 절차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갈음하는 부분(제2항 후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설치기준 및 건폐율·용적률을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하는 부분(제3항),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변경,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국토부장관이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등에서 국토부장관 승인·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전면 생략·대체하려는 규정(제4항부터 제7항까지), 그리고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대통령령·국토부령 위임 사항을 광범위하게 도 조례에 일괄 위임하려는 부분(제8항 중 상당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통 기준을 유지해야 할 영역에 해당하여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다만, ③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운영,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 일부 용도구역 기간 지정,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완료보고서 제출기한, 위원회·서식 등 절차·운영상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유사하게 “도조례로 정하되,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한정 위임하는 방안은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2)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제100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0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훼손지복구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징수된 보전부담금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둔다. ⑤ 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훼손지복구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제4조, 제8조, 제9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및 미반영시설 협의(제11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및 관련 특별회계 설치(제21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갈음하는 사항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행 개발제한구역법 체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및 관리계획 승인 등 핵심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일부 업무는 시·도지사가 수행하되, 국토부장관 승인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타당성을 통제하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역시 국토부장관이 부과·징수하되, 징수업무만 기초지자체에 위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 중 상당 부분을 도지사에게 귀속시키고 중앙 심의·승인 기능을 지방 차원으로 대체하려는 방향으로 이해됨.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수도권·대도시권의 무질서한 도시 확산 억제와 녹지·환경 보전을 통한 전국적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정책 수단으로, 해제·변경 및 보전부담금 제도의 운용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재원 배분의 일관성, 광역권 도시·환경 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된 기준과 조정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에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이 즉각적인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117] 또한 개발제한구역은 국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므로, 훼손지복구계획·관리계획 승인 및 보전부담금 부과 등 핵심 권한을 포괄적으로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특례는 타당성이 낮고,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특례 (제101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1조(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특례) ① 전북자치도 내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도를 조성하는 경우에 도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질변경 할 수 있다. ② 전북자치도 내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진입로 설치의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질변경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관할 개발제한구역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117)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현재 전북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특례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도 조성을 하는 경우와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형질변경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하려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억제하고 녹지·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예외적 형질변경은 대통령령에서 열거한 일정한 공익목적의 시설·행위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임도 조성 및 진입로 설치에 관한 형질변경 허용범위를 도조례 재량에 따라 완화할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난개발이나 산림·경관 훼손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기본 취지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에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개정 규정이 당장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 어렵고, 개발제한구역 내 임도 조성이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 허용기준은 국가 정책 목적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개발제한구역법 체계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임.

(4) 지명의 고시 등에 관한 특례 (제102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2조(지명의 고시 등에 관한 특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제5항 및 제91조의3제4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상 전북자치도 관할구역에 관한 지명의 결정·고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도지사가 행사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이를 위하여 개정안은 공간정보관리법 제91조의2제5항(장관의 지명 고시)과 제91조의3제4항(장관의 시·도지사에 대한 재심의 요구권에 따른 고시)[118]을 함께 인용하여, 이들 조항에 따른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간정보관리법 제91조의2제5항은 "제1항·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권한"을 규정하는 반면, 제91조의3제4항은 "장관이 시·도지사가 결정한 지명이 지명결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통제

1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제91조의3에 따른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결정한 지명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권한”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두 규정의 성격이 상이함.

이 두 조항을 함께 도지사 권한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북 관할 지명에 대한 고시 권한뿐 아니라, 원래 장관이 시·도지사 결정을 견제하기 위하여 가지던 재심의 요구 권한까지 도지사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되어 “도지사의 결정에 대한 자기 통제” 구조가 될 우려가 있음.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12조는 공간정보관리법 제91조의2제5항과 제91조의3제6항(재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지명을 장관이 고시)[119]을 인용하여, 장관의 지명 고시 권한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있어, 장관의 재심의 요구권(제91조의3제4항)은 현행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전북특별법의 입법취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동일하게 “전북 관할 내부 지명에 대한 고시 권한을 도지사에게 분권”하려는 것이라면, 인용 범위를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같이 제91조의2제5항 및 제91조의3제6항으로 조정하고, 제91조의3제4항 인용은 제외하는 것이 공간정보관리법 체계 및 유사 입법례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보다 적절한 입법 방향으로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명 관련 국가 권한을 일정 범위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자치권을 강화하는 취지에는 동의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1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를 거쳐 지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지명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걸치는 지명은 국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계속 담당하되, 그 밖의 전북자치도 관할 내부 지명 고시 사무는 도지사 권한으로 부여하는 방안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103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3조(군사보호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도지사 및 시·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원 및 연구원 ④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

현 행	개 정 안
	차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안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관할부대장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의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관할부대장이 그 사유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 추천 인사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조문 구조와 내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14조와 거의 동일하며,[120]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변경 과정에 지방정부의 공식 건의권과

1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통합특별시 및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원 및 연구원

심의위원회 참여, 관리기본계획 단계에서의 의견제출 절차를 명문화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의 채널을 제도화하려는 취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북자치도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개정안 제103조의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특례를 다루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문 제목의 “군사보호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라는 표현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등으로 정비하여, 인용 법령 명칭과 대상 구역의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6) 미활용 군용지 처분 등 (제104조~제106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4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전북자치도 안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 현황을 도

④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지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제105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우. 다만, 처분을 할 예정인 지상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3.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4.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제거·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제거·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신 설>	제106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현 행	개 정 안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 ④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부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전북자치도 또는 관할 시·군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⑤ 관할 시장·군수는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안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는 국방개혁 등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재배치로 더 이상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않는 전북자치도 관할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에 관하여, 도지사 요청 시 국방부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도록 하고(제104조제1항), 도지사·시장·군수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하며(제104조제2항), 처분 전 지상물·지하매설물·위험물·토양오염 제거 의무와 정화기준·정화방법, 제거·개량비를 반영한 매각대금 산정 방식(제105조),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징발 해제·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요청 시 국방부의 적극 협조·우선 검토(제106조제1항·제2항), 관련 특별법에 따른 공공사업 간주(제106조제3항), 전북자치도 또는 시·군 공유재산과의 교환(제106조제4항), 미활용 군용지 안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기재 특례(제106조제5항) 등을 규정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공익사업 및 지역개발에 계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도 통합특별시 관할 미활용 군용지에 관하여, 현황 제공, 지상물·지하매설물·위험물·토양오염 제거 및 정화기준·매각가 산정 방식, 공익사업 활용 시 징발 해제·보호구역 해제 요청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 검토, 공유재산과의 교환, 건축물대장 기재 특례 등을 매우 유사한 구조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 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례를 준용하여 군부대 이전·축소로 발생하는 미활용 군용지를 정리·활용하고, 군사시설로 인한 개발제한·환경오염 부담이 컸던 지역에서 지방정부의 공익적 활용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과 제도적 정합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특례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는 입법조치로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미활용 군용지 안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기재

특례(제106조제5항)와 관련하여, 구조 안전·위생·방화 등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안전성과 건축행정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7)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107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7조(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하여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개별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전북특별법상의 개발 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국인투자법”)을,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개발 관련 법률 간 관계를 정리하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53조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특별법을 적용하되, 외국인투자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각각 외국인투자법·산업입지법을 따른다"는 동일한 구조를 두고 있는바,[121] 개정안은 특별법과 개별 개발 관련 법률 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취지로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의 성격에 맞는 소관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전북특별법을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며, 107조 후단의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8) 개발사업 기초조사 및 시행승인 등 (제108조~제110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8조(기초조사) ① 도지사 또는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84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조성사업지역 안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1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3조(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통합특별시장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곳, 통로 또는 임시도로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109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
<신 설>	제110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에는 전북자치도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현 행	개 정 안
	등의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⑤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5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 제108조는 도지사 또는 조성사업 시행 예정자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도조례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조성사업지역 내 자연생태·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며, 필요 시 타인 소유·점유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을 허용하되, 그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130조·제131조[122]를 준용

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109조는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및 「도시개발법」상 일정 주체 중에서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제110조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절차, 사업착수기한 및 승인 효력 상실, 경미한 변경의 예외 등을 도조례에 위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와 유사한 “기초조사 → 시행자 지정 → 시행승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제108조부터 제110조까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54조(기초조사), 제155조(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제156조(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와 구조·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개발사업 절차 체계를 전북 실정에 맞게 적용하려는 입법 취지 자체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108조제1항이 “제84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①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계획”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전북특별법 제84조[123]는 “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에 관한 규정이고, 실제 개발사업 시행승인 규정은 개정안 제110조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문 번호 오류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제108조제1항의 “제84조”를 “제110조”로 정정하는 등, 기초조사의 대상이 되는 시행승인 조항을 명확히 특정하는 자구 수정이 필요함.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기초조사·시행자 지정·시행승인 전반에서 일관되게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지구”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제108조에서 “조성사업” 및 “조성사업지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제109·110조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용어를 전환하면서 “조성사업”에 대한 정의가 없어, 조성사업과 개발사업의 관계가 법문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전북특별법 및 개정안 전반에서 다양한 “○○지구·단지 조성사업”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별도의 정의 개정에 따라 “개발사업”이 도시개발·택지개발 등 특정 법정 개발유형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비되는 점을 고려하면, 조성사업은 상위 개념, 개발사업은 그 중 특정 유형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으나, 타인 토지 출입·일시 사용 등 재산권

123) **제84조(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한정한다)과 같은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제한을 수반하는 기초조사 규정의 적용 대상을 암묵적 해석에만 의존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 해석상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① 제108조에서 “조성사업”을 제109·110조와 동일하게 “개발사업”으로 정비하여 기초조사부터 시행승인까지 동일 용어를 쓰거나, ② “조성사업”을 개발사업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정의조문 또는 별도 조항에서 조성사업의 범위와 개발사업과의 관계, “조성사업지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용어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해양수산부는 제110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통해 제111조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의제됨에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가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접수할 때 주민·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한 의견은 시행승인 조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9) 인·허가 등의 의제 (제111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1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84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개발 사업 시행 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경관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경관 심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의 신고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해제·신고 등, 같은 법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11.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현 행	개 정 안
	또는 신고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6.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2.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벌채 등의 신고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현 행	개 정 안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일반산업단지개발·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신고 2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8.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등의 점용의 허가 2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30.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3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34.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현 행	개 정 안
	것만 해당한다) 3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4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42.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43.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4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

현 행	개 정 안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한다. ④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인·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인·허가등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11조제1항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84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의견청취”를 받으면 열거된 제1호부터 제44호까지의 각종 인가·허가·협의·승인·신고(이하 “인·허가등”)를 받은 것으로 보고,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상 인·허가등의 고시·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인·허가 의제를 받기 위한 관계 서류의 일괄 제출, 도지사와 관계 행정기관 간 사전 협의 및 통보, 인·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제6항은 인·허가 의제 시 면허세·수수료 면제를, 제7항은 그 밖의 인·허가 의제 기준·효과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 측면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별 의제 대상에는 환경·산지보전, 상수원, 자연공원, 경관 등 규제·보전 목적의 인·허가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인·허가 항목별로 단순한 절차적 효율성 제고만으로 의제를 허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본질적인 규제·심사 기능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개별법의 취지 및 각 소관 부처의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개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아울러 유사한 인·허가 의제 체계를 두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57조에서 일부 인·허가를 의제 대상으로 삼지 않거나 그 범위를 축소·조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참조하여, 개정안 제111조 각 호가 그보다 확대된 규율을 유지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지, 또는 전남광주 입법례 수준으로 정합성을 맞추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111조제1항은 “제84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의견을 들은 경우”를 인·허가 의제의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84조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 특례에 관한 규정이고 실제 개발사업

시행승인 규정은 안 제110조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문 인용 오류에 해당함. 따라서 제1항 중 “제84조”를 “제110조”로 정정하는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개정안 제111조와 관련하여 각 소관 부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먼저 국토교통부는 제111조의 인·허가 의제 범위가 다소 넓게 설정되어 있어,「행정기본법」 및 개별 법령상 절차에 부합하도록 축소·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구체적으로는 ① 개발사업 시행승인만으로 일괄 의제하지 않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각 법령상 심의·의견청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의제되도록 제1항을 정비하고, ② 건축위원회 심의·경관심의·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은 본질적으로 사전 절차이자 통합심의 대상이므로 의제에서 제외하되, 교통영향평가는 ‘검토’에 한해 의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아울러 ③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의제는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수립 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허가 의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11조제1항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를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제29호와 관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은 개발사업 이전 단계에서 지자체가 선행해

야 할 절차이므로 의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도법상 수도사업 인가는 일반수도사업자·공업용수도사업자에게만 부여되는 점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하는 단서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발사업 승인만으로 관광·체육 분야 인·허가가 의제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로 요건을 한정하되,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된 사항에 한하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제111조 인·허가 의제 규정이 ‘공정한 삶의 질 -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 규제완화’ 편에 위치하면서도, 개발사업의 대상과 조성 목적이 조문상 특정되지 않아 규율 범위가 광범위하게 해석될 우려를 지적하였음. 이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인·허가 의제 규정을 산업활성화 편에 두고 있는 기존 입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의 조문 위치와 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산림청은 인·허가 의제 범위를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해제(제22호)와 입목벌채 허가·신고(제23호)는 난개발 우려, 전국 통일기준 유지 필요성,

다른 특별법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 산지전용·일시사용·토석채취 등(제26호)에 대해서는 인·허가 의제 자체는 수용 가능하나, 보전산지 및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는 개발 완료 후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별도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므로 인·허가 의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임.

《 개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인·허가 의제 조문 비교 》

호	전북특별법 개정안 제111조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57조
1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신고·변경, 가설건축물, 공용건축물 협의, 공작물 신고	건축허가·신고·변경, 가설건축물, 공용건축물 협의, 공작물 신고
2	경관법상 경관심의	없음
3	골재채취 허가	골재채취 허가
4	공유재산 용도변경·폐지,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용도변경·폐지, 사용허가
5	공간정보법상 사업 착수·변경·완료 신고	동일
6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협의·승인, 실시계획 승인, 매립면허·고시, 국가 시행 매립 협의·승인, 실시계획 승인, 목적변경 승인	동일
7	관광진흥법: 사업계획 승인, 허가·해제·신고,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승인, 조성사업 시행허가	동일
8	국가통합교통체계: 지능형교통체계 시행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승인	동일
9	국유재산법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일
10	국토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승인, 도시지역 외 계획관리지역 지정, 개발진흥지구 지정, 공동구 점용·사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고시	국토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시설계획·지구단위 등 다목·마목 한정), 공동구 점용·사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고시
11	낙농지구 해제	동일
12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 승인	동일
13	농지법: 농업진흥지역·용도구역 해제,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용도변경 승인	농지법: 농업진흥지역·용도구역 변경 또는 해제, 농지전용 허가·협의, 신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용도변경 승인
14	대기·물환경·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동일
15	도로법: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 도로점용허가, 도로관리청 협의·승인(노선지정·고시, 도로구역결정 등 포함)	동일 구조(노선지정·고시, 도로구역결정, 비관리청 공사허가, 도로점용허가 관련 협의·승인)
16	도시공원·녹지: 도시공원 점용허가	동일

호	전북특별법 개정안 제111조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57조
17	도시개발: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변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동일
18	도시교통정비: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심의 제외 명시)
19	물류시설법: 물류단지 지정, 개발실시계획 승인	동일(“일반물류단지”로 표현)
20	사도 개설허가	동일
21	사방지 벌채허가, 사방지 지정해제	동일(문언만 ‘지정해제’)
22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 허가·신고, 산림보호구역 해제, 국유림 조림·벌채 신고	없음
23	산림자원법: 입목벌채 허가·신고	없음
24	산업입지법: 산업단지 시행자 지정, 국가·일반·도시첨단산단 실시계획 승인	동일
25	산업집적법: 공장설립 승인·신고	동일
26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변경·해제, 제한지역 해제, 산지전용·전용신고, 일시사용 허가·신고, 토석채취 허가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토석채취허가
27	소방시설 설치법: 건축허가등 동의	동일
28	소하천정비법: 종합계획 승인, 시행계획 수립, 정비 허가, 점용 허가	소하천정비법: 관리청 협의, 종합계획·시행계획 변경, 정비 허가, 점용 허가
29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 일반·공업용수도 인가, 공급규정, 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 인가	수도법: (일반·공업용수도사업자에 대한) 수도사업 인가, 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 인가
30	유통산업발전법: 대형점포 개설등록	동일
31	임업·산촌법: 임업진흥권역 지정변경·해제	동일
3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동일(전남광주법 제27호)
33	장사법: 분묘 개장허가	동일
34	자연공원법: 공원관리청 협의(공원구역 행위허가)	동일
35	전기안전관리법: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동일
36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동일
37	집단에너지법: 공급 타당성 협의	동일
38	체육시설법: 사업계획 승인	동일
39	초지법: 토지형질변경 허가, 초지전용 허가·협의	동일
40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동일
41	폐기물관리법: 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	동일
42	하수도법: 공공하수도(분뇨처리) 설치 인가, 공사시행허가, 점용허가, 배수설비 설치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동일(분뇨처리시설 한정, 공사·점용·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 동일)
43	하천법: 관리청 협의·승인, 하천공사 시행허가·실시계획 인가, 점용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동일
44	항만법: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실시계획 승인	동일

(10)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112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2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 제84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단체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파견자에게 승진·전보·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은 제110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 사무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일괄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개발사업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58조[124]의 개발사업 일괄처리기구 규

1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8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 제15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

정을 준용한 것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및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규모 개발·투자 사업의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앞서 제108조와 마찬가지로, 제112조제1항의 “제84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 부분은 실제 개발사업 시행승인 규정을 두고 있는 제110조를 인용하도록 자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11) 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제113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3조(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업무·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수수료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관과 관계 기관·단체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파견자에게 승진·전보·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의 취득업무·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수수료 등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60조[125]의 입법례를 따른 조항임.

사업시행자의 행정·실무 부담을 완화하고 토지보상 절차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12) 조세의 감면 (제114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4조(조세의 감면) ① 국가 또는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4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투자자 또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토

1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0조(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업무·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수수료 등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지 등의 양도·취득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도지사는 제148조에 따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도지사가 제110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 및 제148조에 따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의 투자자·입주기업, 해당 지구의 토지 양도·취득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개발사업지구 및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등에 대한 투자자·입주기업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 전반에 대한 감면을 가능하게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단순 지방세 감면(제161조[126])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유치와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특례의 제한 원칙상 실제 감면의 범위·조

1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1조(조세의 감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건·기간 등은 개별 세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율되는바, 이 법에서 포괄적으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개별 세법상의 특례 규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 규범적 실효성이 크지 않은 반면, 마치 이 조항만으로 새로운 조세특례가 창설되거나 개별 세법에서 별도의 근거 없이 특례를 둘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앞선 조문들에서와 같이 “제84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라는 문언이 실제 시행승인 규정을 두고 있는 제110조와 조문상 불일치하므로, “제110조”로 인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재정경제부는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 세법에서만 규정하고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현행 체계상 개별법에 별도 감면 규정을 둘 실익이 없으므로, 제114에서 조세·관세·법인세·소득세 감면 특례를 직접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 대상·내용·세목 등 지방세 특례 규정 신설은 지방세 관계 법령을 통해서만 규정할 수 있으므로, 개별법에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13) 개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제115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5조(개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시·군 행정통합에 따른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제84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에 대하여서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시·군 행정통합에 따른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중 안 제84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다만, 개발부담금 제도가 개발이익의 공적 환수를 통한 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취지로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전북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 특례는 타 지역 및 유사 특별법과의 형평성, 국가 차원의 개발이익 환수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필요성과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군 행정통합에 따른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부담금 감면 규정이 제정안의 여러 조문에 분산되어 있어[127] 향후 개발부담금 부과 시

행정처리 기준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면 규정을 제115조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기획예산처는 유사한 이유로 제139조의 공통 부담금 감면 특례조항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전북자치도는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개발이익의 공공환수라는 제도의 취지와 지역 간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공공성이 높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여 감면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4) 개발부담금 귀속에 관한 특례 (제116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6조(개발부담금 귀속에 관한 특례) ① 전북자치도 관할구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서 징수하는 개발부담금은 전북자치도의 귀속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은 지역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27) 제74조의6(투자진흥지구), 제115조(행정통합 개발사업), 제139조(민간투자)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관할구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128] 전북자치도에서 징수하는 개발부담금 전액을 전북자치도에 귀속시키고, 이렇게 귀속된 개발부담금을 지역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은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를 개발이익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를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귀속시키는 분배 구조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귀속분을 100%로 높여 지역 내부의 재량과 재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에는 자체 재원 확충과 낙후지역 투자 확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국가 차원의 개발이익 환수 재원 축소,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향후 타 지역의 유사 요구를 유발할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특례의 당위성과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12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징수금의 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4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 중 경감하기 전의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경감한 금액을 뺀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의 50%는 이미 개발이익이 발생한 지자체에 귀속되고, 나머지 50%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낙후 지역 SOC 건설 등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전북자치도에 전액 귀속하는 특례는 국가 세입 감소와 타 지역 균형발전사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5)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제117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7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도지사는 제84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제84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민에게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대해 융자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63조[129]를 참조한 조항임.

1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3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제156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음·교통혼잡·환경 변화 등 주민 불편 및 생활환경 악화를 보완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인근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지역경제 활성화로 환류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 상생 및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108조·제111조 등과 마찬가지로 “제84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 부분은 실제 시행승인 규정(제110조)과 불일치하므로, 인용조문을 “제110조”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16) 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제118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8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전북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받은 부동산(토지특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수익 4.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 5. 토지채권의 발행금 ③ 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 행	개 정 안
	1. 토지취득을 위한 자금 2. 토지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3. 토지채권 발행금의 상환 4. 그 밖에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물납받은 토지와 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입을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전북자치도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물납 부동산 수익, 공유재산 처분·임대 수입, 토지채권 발행금 등으로, 세출을 토지취득 자금, 회계 관리·운영비, 토지채권 상환, 조례로 정하는 관련 사업 자금 등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물납·취득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상 일반 절차와 달리 도조례에 따라 임대·교환·양여·매각을 허용하고, 개발용 토지의 취득·

처분 시에는 의회 의결 없이 집행하되 사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59조[130]의 토지특별회계 규정을 전북자치도에 맞추어 설계한 것임.

토지특별회계를 통해 토지취득·공공용지 확보 재원을 별도로 관리하고, 물납 토지·토지채권 등을 활용해 개발용 토지를 탄력적으로 취득·처분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공공사업의 적기 추진과 토지가격 안정, 계획적 개발유도라는 취지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세입 항목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규정한 반면, 개정안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명시하여 국가 재원이 토지특별회계에 직접 유입될 수 있는 근거

1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9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통합특별시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받은 부동산(토지특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수익
4.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
5. 토지채권의 발행금
③ 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취득을 위한 자금
2. 토지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3. 토지채권 발행금의 상환
4. 그 밖에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물납받은 토지와 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를 두고 있어, 국가 부담 규모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기존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등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행정안전부는 토지특별회계에 따른 물납·취득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교환·양여·처분을 도조례로 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는 수용하되, 관련 근거 조문이 공유재산법 개정으로 제10조에서 제10조의2로 이동하였으므로, 제118조제5항의 인용 조문을 제10조의2로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17) 건축에 관한 특례 (제119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9조(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법」 제4조, 제69조제1항, 제71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72조제6항·제7항, 제77조제1항·제2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26조, 제27조

현 행	개 정 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2조, 제64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다목, 제70조제2호·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6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제71조제7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4항, 제7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83조제1항·제3항, 제85조제1항제5호, 제88조제1항제7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조례에 따라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건축허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심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5.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현 행	개 정 안
	사항 ④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에 대한 검토·심의·조사·협의·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건축법」상 일부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제4조, 제69조제1항, 제71조, 제72조제6·7항, 제77조제1·2항, 제87조제1항 등)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하고, 건축기준·절차 등에 관해 대통령령·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된 사항의 상당 부분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도지사가 건축 심의,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영향평가,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등 건축허가 관련 사항을 통합심의하고, 그 결과를 각 개별 심의·협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 조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97조와 마찬가지로 건축·도시·교통·경관 등 관련 심의를 일괄·통합함으로써 대규모 개발·건축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건축행정의 일원화, 심의 간 중복·모순 해소,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그 입법 취지는 일정 부분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비교하면, ①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이양 범위가 더 넓고, ② 대통령령·부령 위임사항을 조례로 전환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 동의 요건을 두지 아니하며, ③ 도시·군관리계획 및 교육환

경평가까지 통합심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개정안이 전반적으로 더 강한 자치재량과 통합심의 범위를 부여하는 구조인 반면,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전문성 확보에 관한 법률 차원의 규율은 상대적으로 약한 측면이 있어 보임.131)

---

1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7조(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법」 제72조제6항·제7항,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2조, 제64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다목, 제70조제2호·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6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7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4항, 제7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83조제1항·제3항, 제85조제1항제5호, 제88조제1항제7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건축허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심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5.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통합특별시장은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

1. 「경관법」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1명 이상의 사람
2. 제3항제4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필요한 건축물을 심의할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
3. 「건축법」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1명 이상의 사람

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에 대한 검토·심의·조사·협의·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심의 결과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기준의 전국적 통일성, 안전·환경 기준의 최소 수준 확보, 타 지역 및 다른 특별법과의 형평성, 심의·협의 절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차이점이 전북의 지역적 특수성과 정책 목표를 반영한 합리적 차별화인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조례 제정 시 국토교통부장관 동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 협의,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요건 등 절차적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에서도 국토교통부장관 동의 또는 이에 상응하는 통제장치,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 등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한편, 교육부는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통합심의는 현재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별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행정통합 특별법 등 다른 특별법에서도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제3항제6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포함)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토교통부는 제119조가 건축 관련 권한과 절차를 폭넓게 이양·완화하는 만큼, 건축 안전 확보, 도시계획 체계 유지, 타 특별지자체와의

---

⑥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① 「건축법」상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중 특별건축구역 관련 등 일부만 도지사에게 이양하되,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등 국가 차원의 기능은 유지하고, 대통령령·부령 위임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도조례에 위임하며, ② 통합심의는 건축·경관·교통 등 필수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③ 통합심의 대상은 건축심의, 개발행위, 교통영향평가 등 개별 인·허가 전 단계의 사전 심의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도시·군관리계획 전체가 아니라 건축에 필요한 개발행위로 한정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통합심의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전북자치도는 건축 분야 분권 취지에는 공감하되,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이양은 「건축법」 제72조제6항·제7항, 제77조제1항·제2항, 제87조제1항에 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개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건축에 관한 특례 비교 》

구분	전북특별법 개정안 제1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97조
① 국토부 권한 이양 범위	건축법 제4조, 제69조제1항, 제71조제1항~제8항·제10항, 제72조제6·7항, 제77조제1·2항, 제87조제1항의 국토부장관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	건축법 제72조제6·7항,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7조제1항의 국토부장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 권한**으로 이양
② 대통령령·부령 위임사항의 조례화	건축법 제4조제5항 이하 열거 조항에서 "대통령령·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	동일한 건축법 조항 목록에 대해, 대통령령·국토교통부령 위임사항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합심의 도입 근거	"도지사는 도조례에 따라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심의(통합심의)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통합심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된 경우로 한정."
③-1 통합심의 대상(1호)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심의	동일
③-2 통합심의 대상(2호)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관련 사항**
③-3 통합심의 대상(3호)	대도시권 광역교통법상 광역교통 개선대책	동일, **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된 경우로 한정"**
③-4 통합심의 대상(4호)	도시교통정비법상 교통영향평가	동일
③-5 통합심의 대상(5호)	경관법상 경관 심의	동일
③-6 통합심의 대상(6호)	**교육환경 보호법상 교육환경평가**포함	규정 없음
③-7 포괄 규정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통합심의위원회 규정	(제119조 자체에는 통합심의위원회 설치·구성에 대한 명문 규정 없음)	제97조제4항: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에 ① 경관위원회 추천 위원, ② 교통전문가, ③ 건축위원회 추천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
⑤ 통합심의의 법적 효과	제119조제4항: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제3항 각 호에 대한 **검토·심의·조사·협의·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97조제5항: 동일 문언 + "이 경우 통합심의 결과는 각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⑥ 세부사항 조례 위임	(제119조에는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별도 조례 위임 규정 없음)	제97조제6항: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 절차·방법 등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명시**

(18)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특례 (제120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0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전북자치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별 규모 기준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에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132]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별 규모 기준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이 조항은 미술작품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의 범위·기준을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지역 맞춤형 문화정책 구현이라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과 달리,[133] 개정안은 도조례에 직접 위임함으로써 시·도 간 기준 편차가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바, 「문화예술진흥법」 및 관련 대통령

---

132)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3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별 규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령이 정하는 범위·원칙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문화체육관광부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19)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제121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1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 제5조제5항, 제8조제3항(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제11조의2제4항, 제32조제6항, 제58조제2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5조제1항제17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제4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9조제3항 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8항,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2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제4항·제5항, 제44조제3항, 제45조, 제46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3조 단서, 제55조제4항·제5항, 제58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9조 본문, 제60조제2항제9호, 제61조제1항제3호·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2조제4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관 공동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민간 이윤율 초과분은 「도시개발법」 제53조의2에 따라 지역 내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도시개발법」상 일부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감리·준공·청산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된 사항 상당 부분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또한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관 공동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 이윤은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지역 내 재투자를 의무화함으로써 민간 이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 재투자 재원으로 환류시키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동 조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99조[134]와 유사하게 「도시개발법」

13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9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 제32조제6항 및 제5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상 여러 위임·집행 권한을 광역단체에 이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 기준·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도시계획·도시개발의 자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도시개발법」상 조례 위임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요건으로 두어 전국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담보하려 한 것과 달리, 개정안은 동일·유사 범위의 내용을 도조례에 직접 위임하면서 유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도시개발 기준의 전국적 통일성과 안전·환경·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관련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121조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국토부 권한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광범위하게 도지사·도조례로 이양하고 있어, 법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5조제1항제17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9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제4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단서, 제19조제3항 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8항,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2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제4항·제5항, 제44조제3항, 제45조, 제46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3조 단서, 제55조제4항·제5항, 제58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9조 본문, 제60조제2항제9호, 제61조제1항제3호·제8호, 제6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2조제4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계와 이해충돌 방지, 전국적 기준 유지를 위해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구체적으로 ① 권한 이양은 일부 절차적·집행적 사항에 한정하고, 도지사가 스스로를 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국비·특별회계 관리 등 국토부 차원의 관리 기능은 유지하며, ② 도조례 위임은 이미 조례로 가능한 사항과 전국 공통 기준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국토부 장관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필요한 범위에서만 인정하고, ③ 민·관 공동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 상한을 도조례로 조정하는 제3항은 도시개발법 개정 취지(10% 상한)와 초과이윤의 지역 재투자 의무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전북자치도는 도시개발 절차·기준은 이미 「도시개발법」과 하위법령, 일부 조례위임으로 충분히 규율되고 있어 제121조제2항 특례는 실익이 적고 중복 우려가 있으며, 민·관 공동사업의 민간 이윤율과 초과이익 재투자는 현행 도시개발법 체계에서 협약·제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도조례로 별도 상한·재투자 의무까지 두는 제3항은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임.

(20)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제122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2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도지사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이 조항은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정 절차에서 전북의 요청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낙후지역 개발·투자 유치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 활성화 측면에서 기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권한을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는 데 비해,[135] 개정안은 "우선 지정"을 명시하여 타 지역보다 전북에 사실상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구조인바, 다른 시·도 및 기존 지역개발지원 체계와의 형평성, 국가 차원의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전략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역활성화지역'은 낙후지역 중 개발 수준이 다른

1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1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 간 낙후 정도 등을 비교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우선”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제123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3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전북자치도 귀속분에 한한다), 제7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개발이익환수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전북자치도 귀속분과 관련된 규정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이는 개발부담금 산정·부과·경감·징수유예·체납처분 등 개발이익환수법상 세부 기준·절차 가운데 전북자치도 귀속분과 관련된 부분을 도조례로 구체화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이익 환수·부담 체계를 설계하려는 것으로, 지방분권 및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 기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환수·적정 배분을 통하여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제도인 만큼, 부과·징수·체납처분 등의 세부 기준을 지역별 조례로 달리 정할 경우 납부의무자 간 부담의 형평성 및 행정집행의 통일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동일 범위의 조례 위임 특례를 두면서 통합특별시장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전국적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136]

이에 전북자치도에 조례 위임 특례를 부여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법의 기본 원칙과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관련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기본 기준은 현행과 같이 개발이익환수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서 통일적으로 정하되, 전북자치도 귀속분과 관련된 세부사항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1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1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통합특별시 귀속분으로 한정한다), 제7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2) 도시공간재구조화 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제124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4조(도시공간재구조화 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중 같은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 및 입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제35조의6제2항[137]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중 제35조의2제1항[138] 각 호에 따른 용도구역 지정 및 입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행 국토계획법은 시·도지사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입안·결정 절차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준용하여 도시

1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나.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중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 및 입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2.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제외한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대하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1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5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1.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
2. 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용도계획
3. 제40조의5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제1호 또는 제2호와 함께 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이에 대한 특례로서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재위임하는 구조를 두고 있음.[139]

개정안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중 용도구역 지정 및 입지 타당성 등 주요 요소를 법률에서 직접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특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에 비해 심의대상 범위를 상대적으로 넓게 설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대한 국가 단일 체계 및 유사 입법례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도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유사한 구조로 정비하여 특례의 체계와 범위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국토 균형발전과 난개발 방지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통합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최초 수립 단계에서는 현행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유지하되, 이후 변경 단계에서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13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3조(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23) 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제125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5조(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북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택지개발촉진법」제7조제1항[140]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같은 법 제3조제2항[141]에도 불구하고 도

---

140)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로서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한다.
   가. 공공시행자가 공공주택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
   나.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 취득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의 범위
5. 주택건설등 사업자로서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며,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협약의 내용 및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② 제1항의 경우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한 해당 시·도의 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사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전북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체계에서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해제 및 시행자 지정은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로서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나, 택지수급계획상 해당 시·도의 계획량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지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승인을 요하는 등 국토부가 승인·조정 기능과 직접 지정 기능을 함께 보유하는 구조임.

이와 같이, 시행자·지구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단계적으로 배분된 상태에서, 개정안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로서 행사하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등 국가 몫의 권한을, 전북자치도에 한하여 상당 부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제2항을 통해 지구 지정 절차도 국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전북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중심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대한 특례로 통합특별시장의 지구 지정·변경·해제 권한과 제8조·제9조·제16조의 일부 권한만을 한정·열거하여 이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142)]

따라서 택지개발 제도의 국가 단일 체계 및 유사 입법례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제125조제1항은 제7조제1항을 포괄 인용하기보다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해제(제3조) 및 그에 수반되는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제8조, 제9조, 제16조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을 특정하여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북자치도의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해제 등 일부 권한 확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 등 국가 주택공급 정책과 직결되는 사안까지 국토부 권한을 전면 이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도지사 권한은 일정 규모·유형의 사업으로 한정하고 지구·시행자 지정 등 핵심 권한은 국토교통부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전북자치도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지정 권한이 이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어, 제125조제1항 특례의 실익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1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4조(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를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택지개발지구에서의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24)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제126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6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① 「주택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6항, 제49조제1항, 제65조제2항, 제93조제1항 및 제96조,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주택법」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7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한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92조 및 제106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주거종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은「주택법」및「주거기본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여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대통령령·국토교통부령 위임사항의 상당 부분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과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일부 조항에 한정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국토교통부장관과 동일한 권한 행사 및 조례 위임을 인정하되, 조례 위임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국가 단일 주택정책 체계와의 정합성을 담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143]

개정안 제126조는 권한 이양 범위 및 조례 위임 폭이 상대적으로 넓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통제·협의 장치가 부재하여 주택제도 운영상 시·도 간 편차 확대 및 국가 주택정책의 일관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바,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유사하게 국토교통부장관 동의 등 일정한 협의·통제 절차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특례의 범위와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주거정책 기준은 국민 재산권과 시장 공정성과 직결되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하므로, 「주택법」상 일부 인허가 권한만 전북에 한해 도지사가 함께 행사하도록 제한하고, 구체적인 기준의 도조례 위임은 국토교통부장관 사전 동의를 전제로 최소 범위에서만 허용하며, 「주거기본법」 제8조 및 주거종합계획 협의 관련 특례는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1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5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① 「주택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93조제1항 및 제96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에 한정하여 통합특별시장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15조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및 제92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북자치도는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주택법 제15조제1항·제6항)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관리 필요성이 커 도지사에게 이양할 필요가 있는 반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영업실적 제출, 주택조합 감독 등(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은 이미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주택사업자단체 권한으로 운영되고 있어 권한 이양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5)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대한 특례 (제127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7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17조,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제7조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승인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재량과 책임을 확대하려는 것임.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공공주택지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법률에서 직접 포괄 이양하지 않고, 기존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의 위임 구조를 전제로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규율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30만㎡ 이상)에 대해서는 위임 확대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국가 단일체계와의 정합성을 담보하고 있음.[144)]

이와 비교할 때 개정안 제127조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승인 관련 규정을 일괄 열거하여 도지사 권한으로 전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권한 이양 범위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고,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동의 등의 절차가 부재함.

공공주택지구 지정·승인 권한의 이양을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유사하게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의 위임 체계를 전제로 위임 범위와 절차를 단계적으로 설계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등의 절차를 통하여 특례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하여,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미 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북자치도에도 일정 범위의 권한을 위임하되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전북자치도는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은 지역 여건·수요·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 관리가

14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되는 권한의 범위 및 절차 등은 같은 법 제53조를 준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으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중요하므로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공주택지구·특별관리지역 지정(제4조, 제6조, 제6조의2~제6조의4, 제7조, 제7조의2 등)은 국가 주택정책과 광역적 수급 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행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26)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128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도지사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전북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전북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가 규제에 관한 결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전북자치도로 이양하려는 것임.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장이 주택법 제57조제1항제2호상의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만 하고 있어,[145] 최종 지정권은 여전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존치시키는 구조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은 전국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현재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를 통해 지정·해제를 운용해 온바, 개정안처럼 지정·해제 권한을 도지사에게 전면 이양할 경우 타 시·도와의 형평성 및 국가 주택정책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바,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유사하게 도지사가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방식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해제가 주택시장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두되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지정 요청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1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9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청) 통합특별시장은 「주택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27)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에 관한 특례 (제129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9조(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특례) ①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5항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북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안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전면 이양하고, 같은 조에서 규정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전북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장이 주택가격·청약경쟁률·주택거래 등 지표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만 하고 있어,[146] 최종 지정·해제 권한은 여전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존치시키는 체계를 취하고 있음.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는 대출·청약·전매 제한 등 전국 단위 주택

14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0조(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요청) 통합특별시장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수요 관리수단과 직접 연계되는 제도로서, 현재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를 공고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관련 권한을 도지사에게 전면 이양할 경우 타 시·도와의 규제 형평 및 국가 주택정책의 통일성 측면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특례를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유사하게 도지사가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국가 단일체계와의 정합성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가 대출규제와 세제 등 지역 및 인접 지역의 주택시장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아, 지정·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두되 도지사가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 (제130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0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다목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같은 조 제4호·제5호, 제3조제5호, 제5조제1항제1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12호,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제1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제7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4조제3항 단서,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3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9항·제10항, 제36조제3항·제4항, 제37조제2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제7호, 제40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10항, 제46조제4항·제5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50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52조제1항제13호, 제55조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1조제3항 전단, 제65조제1항 단서,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67조제

현 행	개 정 안
	4항제3호, 제6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9호, 제76조제2항, 제7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단서, 제8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4항, 제92조제2항제1호, 제94조제1항·제3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101조제1항제2호,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3조제5호, 제106조제2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6항, 제110조제1항제4호, 제113조제2항 후단, 제115조, 제117조제1항제3호,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제7호, 제123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제4호·제6호, 제1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상당 부분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중앙정부 권한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전북자치도로 대폭 이전하려는 것임.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정비법상 대통령령·국토교통부령 위임사항에 대해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특별시장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조례를 통한 자율성 확대와 함께 국가 정비제도와의 정합성을 담보하는 통제장치를 두고 있음.[147]

이와 비교할 때 개정안 제130조는 권한 이양 및 광범위한 조례 위임을 허용하면서도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정비기본방침,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 등 핵심 요소에서 시·도 간 규제 편차가 확대되고 국가 차원의 정비제도 운영의 일관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

14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1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제5호, 제3조제5호, 제5조제1항제1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1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4조제3항 단서,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제3항, 제29조제7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3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9항·제10항, 제37조제2항제2호나목, 제38조제2항, 제40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10항 단서, 제46조제4항·제5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50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52조제1항제13호, 제55조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1조제3항 전단, 제65조제1항 단서, 제67조제4항제3호, 제6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9호, 제76조제2항, 제7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단서, 제8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4항, 제92조제2항제1호, 제94조제1항·제3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101조제1항제2호, 제113조제2항 후단, 제1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7조제1항제3호,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제7호, 제123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제4호·제6호, 제1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제도의 공공성·형평성과 유사 입법례와의 체계 정합성, 전북자치도의 자치권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도조례 제·개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두는 등 특례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비율,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비계획 입안요건, 시공자 선정 원칙, 일반분양 방법,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은 주거복지, 부동산시장, 국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현행과 같이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되 도조례에의 위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전북자치도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이미 위임되어 있으므로, 제1항의 특례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29)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제131조·제132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1조(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내 개발구역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 설>	제132조(역세권 개발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① 국가는 역세권 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하여서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임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안 **제131조**는 도지사가 역세권 내 개발구역에 대해 현행 역세권법 및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특례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같은 조 제2항에서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의 구체 기준을 국토계획법 제77조·제78조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가 도시계획 체계와의 정합성을 담보하고 있는 반면,[148] 개정안은 이에 상응하는 장치가 없어 역세권 개발 관련 규제완화의 세부 기준이 도의 자율에만 맡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전국 단일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131조와 관련하여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하여 용도지역 상향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 완화 범위와 기준은 기반시설 수용능력과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안 **제132조**는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유재산을 무상 임대·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역세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유재산법」상의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

1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9조(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내 개발구역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완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① 특례 대상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에 한정하고, ② 철도시설 상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더라도 임대기간 종료 시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도록 의무화하는 등,[149] 「국유재산법」 체계 내에서 철도시설 활용을 중심으로 비교적 좁은 범위의 특례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비해 개정안은 "역세권 개발사업" 전반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까지 포괄하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어, 특례 대상 재산과 범위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비해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역세권 개발의 공익성과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국유재산 관리체계와 다른 특별법 입법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체계와 유사한 수준으로 특례 범위와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역세권 개발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는 역세권 주변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유지 위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되, 그 대상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시설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

14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0조(역세권 개발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역세권 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한 역세권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감면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무상임대가 아니라 역세권 개발사업자에게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특례를 부여하고, 철도시설 상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동일하게 임대기간 종료 시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행정안전부는 제132조제2항이 국유 철도부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규정인 점에서 공유재산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 부분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0)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설치 특례 (제133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3조(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설치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도지사와 서로 합의하고 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공용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도지사와 합의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공용재산 위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다만, 공용재산의 소유권은 그대로 두면서 제3자인 공공기관의 영구시설물을 허용하는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기간 해당 부지의 다른 활용을 어렵게 하고, 기부·철거 시점과 관리 책임을 둘러싼 권리관계를 불명확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보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특례를 두어 소유권·관리 책임을 명확히 정리하는 점을 감안하면,[150] 공용재산 위 영구시설물 설치 방식보다는 매각·대부와 같은 보다 분명한 권리구조 특례를 채택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공용재산 위 영구시설물 설치만 허용할 경우 자치단체의 향후 활용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를 전제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제133조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1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5조(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31)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제134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4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서는 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비·보상비·공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여야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서는 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사업비에 대하여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제10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비·보상비·공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의 70퍼센트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광역교통법보다 강화된 수준의 국가 재정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광역교통법상 재정지원 체계를 전제로 하면서,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임의규정 형식으로 국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특정 비율 이상의 국비 부담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음.[151]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특정 시·도에 대한 국비 부담 비율을 법률상 최소 70퍼센트로 의무화하는 방식이, 다른 광역권과의 형평성, 광역교통법 체계 및 국가 재정운용 원칙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유사하게 재량규정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북자치도에 대한 광역교통망 확충 필요성과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광역교통법과의 관계에서 명확히 하고, 국가 부담과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전북자치도에 대한 추가 지원을 의무가 아니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1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8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의 범위에는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걸치는 도로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광역철도의 범위에는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가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조기 안착을 위하여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절차가 진행 중인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32) 전북자치도 도로사업에 관한 특례 (제135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5조(전북자치도 도로사업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경제거점 조성 등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 사업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인구감소지역 특별대책지구에 연계되는 도로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서 지정받은 광역도로 3. 「도로법」 제8조에서 지정받은 혼잡도로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에 드는 비용은 설계비·보상비·공사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 및 「도로법」 제8조에 따른 5년단위 시행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 및 경제거점 조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도로사업(인구감소지역 특별대책지구 연계 도로, 광역교통특별법상 광역도로, 도로법상 혼잡도로)에 대하여 총사업비의 100분의 70을 국고에서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광역도로·교통혼잡도로·고속국도·국가지원지방도 등 폭넓은 도로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원의

범위는 넓게 열어 두되 재정지원 여부와 수준은 국가 재정여건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152]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특정 시·도의 일부 도로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비율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방식은 다른 광역권·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도로법·광역교통특별법에 따른 기존 재정지원 체계 및 국가 재정운용의 자율성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유사하게 재량규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135조제1항은 법적 근거와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구감소지역 특별대책지구' 관련 규정은 삭제하고 광역도로·혼잡도로에 대한 지원 근거만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2항의 국고 70퍼센트 의무 보조와 제3항의 시행계획 간주 규정은 현행 광역교통법·도로법 체계,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국가 재정부담 및 법정계획의 체계적 수립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1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9조(통합특별시 도로사업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경제거점 조성 등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도로(통합특별시 설치 이전 전라남도의 지방도를 포함한다) 중 제164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제380조제1항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등에 연계되는 도로. 다만, 「도로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 한정한다.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
3. 「도로법」 제8조에 따른 교통혼잡도로
4. 「도로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고속국도
5. 「도로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원지방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②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절차가 진행 중인 고속국도, 광역도로의 건설·개량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33)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 (제136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6조(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 국가는 제19조에 의한 광역생활권, 산업단지 등의 경제권과 주변도시와의 연결성 강화 및 전북자치도 내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교통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1. 광역생활권, 산업단지, 관광지 간 교통개선을 위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이하 이 조에서 “도로”라 한다)와 철도의 신설 및 개량 2. 전북자치도의 서해안 및 동·남·북부권을 연결하는 외곽순환망 구축을 위한 도로와 철도의 신설 및 개량 3. 전북자치도의 외곽 순환 고속도로

개정안은 광역생활권·산업단지 등과 주변 도시 간 연결성 강화 및 전북자치도 내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도로·철도망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통망 구축에 관한 국가의 이행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교통망을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계획에의 반영 여부와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재량을 두고 있음.[153]

1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0조(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 제23조에 따른 광역생활권, 산업단지 등의 경제권과 주변 도시와의 연결성 강화 및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교통망 구축을 요청하는 때에는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특정 시·도의 교통망에 관하여 국가의 ‘우선 구축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대한 국가 교통망 계획과의 형평성, 국가철도망·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교통 인프라를 조정하는 기존 체계 및 국가 재정·투자 우선순위 결정권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따라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유사하게 해당 교통망을 국가철도망·국가도로망 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조정하는 등 국가의 정책적 재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가 도로·철도망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에서 종합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므로 특정 지역에 우선 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전북자치도가 요청하는 노선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철도건설법 제4조) 및 국가도로망종합계획(도로법 제5조)에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2.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34) 철도 및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제137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7조(철도 및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전북자치도의 균형발전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 소멸 분포 등을 감안한 국가기간교통망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1. 지역발전 및 국가균형발전과 연계된 사업 2.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와 관련한 사업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의 균형발전정책과 연계된 국가기간교통망 사업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려는 것임.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타 면제 사유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154]

154)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특정 시·도의 철도·고속도로 등 SOC 사업에 대하여 의무규정 형식으로 예타 면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 재정운용 원칙,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예타 제도의 취지 측면에서 그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35)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제138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8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고속도로건설 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개정안은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공공시설 점용허가, 토지·시설 매입 업무 대행에 더하여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21조의 부대사업 시행,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통행료 감면 비용 부담 등 민간투자법 체계 안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지원수단을 열거하고 있을 뿐, 주변 토지개발을 독립된 “사업권” 형태로 부여하고 있지는 않음.[155]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의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규정은, 기존에는 부대사업·실시협약 및 도시계획 절차를 통해 개별적으로 조정되던 주변 개발권을 고속도로 예정지 민자사업에 한정하여 법률상 일반적 권리로

---

15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3조(민간투자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
4.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량·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부대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유료도로법」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또는 장애인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통행료 감면 비용
7.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업무의 대행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여하는 것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차이를 보임.

이는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두텁게 담보하여 고속도로 관련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인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으나, 동시에 개발이익 귀속의 방향을 민간에게 유리한 쪽으로 고정시키고, 민간투자법·도시계획법 체계 하에서 행정계획·실시협약·인허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조정·통제해 오던 구조에 비해 공적 통제 여지를 축소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고속도로 외 다른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이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바,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같이 민간투자법상 부대사업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지원수단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되 별도의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규정은 두지 않는 방안, 또는 그 대상·범위·환수장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에 한정된 민간자본유치사업 지원 규정을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로·철도·항만·공공청사 등 전체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 확대하되, 이미 같은 법에서 투자비 보전을 위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 대한 점용허가, 토지·시설 매입 대행, 부대사업 시행,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통행료 감면비용 등 지원 근거를 두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36) 민간투자 부담금 등의 감면 (제139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9조(민간투자 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지역소멸 위기지역의 민간투자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지역소멸 위기지역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각종 점용료·사용료·부담금 및 기반시설·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으로, 기본 구조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24조와 유사하나 감면 대상에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156]

1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4조(민간투자 부담금 등의 감면 등)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지역소멸 위기지역의 민간투자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역소멸 위기지역”은 현행 일반법에서 직접 정의된 법정 개념이 아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등과의 관계도 조문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적용 범위가 불명확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등 기존 법률상 개념과의 연계를 포함하여, 지역소멸 위기지역의 범위와 지정기준을 법률 본문이나 위임 규정에서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아울러 이와 같은 민간투자 관련 부담금·부담료의 포괄적 감면 특례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제주·강원 특별자치도 및 일반 시·도와의 형평성, 개발이익 환수·환경부담 제도의 취지, 재정·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기획예산처는 제139조에서 열거된 항목 중 「하천법」상 하천점용료·사용료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규정된 관리대상 ‘부담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용료·요금 성격의 금전부담이므로, 다른 통합특별시법과의 형평성과 부담금 제도 체계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농림축산식품부는 부담금 감면에 관한 유사 조항이 여러 조문에 산재해 있어 해석·운영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통 조항을 마련하여 부담금 감면의 원칙과 범위를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37) 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특례 (제140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0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특례) 전북자치도 내 시내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를 말한다) 및 간선급행버스(「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간선급행버스를 말한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가 설치된 경우 해당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내에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157]에 따른 노면전차[158] 혼용차로가 설치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시내버스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간선급행버스가 「도로교통법」 제16조제2항[159]의 전용차로 통행 제한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행 「도시철도법」은 노면전차 전용차로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

---

157) **「도시철도법」**
제18조의2(노면전차의 건설·운전 및 전용로의 설치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의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158) 노면전차(tram): 궤도 중 도로 등에 설치한 두 줄의 레일을 따라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

159) **「도로교통법」**
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②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차마의 운전자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좌회전, 우회전, 횡단 또는 회전하기 위하여 궤도부지를 가로지르는 경우
2. 도로, 교통안전시설, 도로의 부속물 등의 보수를 위하여 진입이 불가피한 경우
3. 노면전차 전용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6조제2항은 노면전차 전용도로·전용차로에 일반 차마의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혼용차로에서의 버스 통행 근거가 불명확하여 법 정비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음.[160]

이에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에 한정하여 시내버스·간선급행버스의 혼용차로 통행을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면전차와 버스 간 연계성을 높이고, 트램 도입에 따른 차로 축소·환승 불편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노면전차 전용·혼용차로 운영은 노면전차의 안전 운행, 버스 운행, 일반 차량 흐름과 직결되는 교통안전·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시철도법」 및 「도로교통법」 체계 전반과 연동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아래 운영될 필요가 있고,

특정 시·도에만 버스 혼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은 향후 동일 유형 시설을 도입하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제도 운영의 일관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160) 충청뉴스, “박영순 ″버스-트램 혼용도로 운영 추진″”, 2021.04.19. https://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054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노면전차 혼용차로에서의 버스 통행 허용 여부와 범위는 개별 지역 특별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또는 그 하위 법령·지침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경찰청은 노면전차가 아직 국내 교통체계에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신규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안전을 위해 현행처럼 노면전차 전용도로·전용차로 중심의 운행을 유지하고,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혼용차로 설치 및 혼용 운행은 향후 정착 시점과 안전성 검증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38) 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 (제141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1조(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 ① 전북자치도에서 운영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대도시권 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차량 도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에서 운영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간선급행버스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161]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162]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용차량 도입에 대하여 국고가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신교통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의 도입을 촉진하고, 전북자치도 내 대도시권 등의 교통 문제 해결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아래 운영될 필요가 있고, 전용차량 도입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역시 다른 시·도 BRT 사업과의 형평성 및 국가재정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경우,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실증특례를 통해 우선 한시적으로 운행·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일반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이에 따라 제141조제1항의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면, 적용 대상을 모빌리티혁신법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전용차량으로 한정하고,

---

16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전용차량의 종류)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 일반형 전용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신교통형 전용차량: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제1호에 따른 일반형 전용차량에 비하여 수송 능력, 승하차 방식 또는 동력발생장치 등이 기술적으로 개선된 자동차

162)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④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 실증특례 기간 동안에만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제141조제2항의 국가 재정지원 특례는 전북자치도의 교통여건, BRT 사업의 공공성 및 효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16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필요성과 지원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6조(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서 운영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간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전용차량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통하여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특례 (제142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2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특례) 전북자치도 내 간선급행버스(「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간선급행버스를 말한다)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내에서 운영되는 간선급행버스법 제2조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에 부착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3항[164]에도 불구하고 그 표시방법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운행되는 간선급행버스 ‘전용차량’의 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을 통합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165] 특례의 기본 구조는 개정안과 유사함.

---

16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7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운영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의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통합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0)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류에 관한 특례 (제143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류에 관한 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 제20조의2,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에 규정된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제4조, 제8조제2항·제3항·제5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제3항·제5항, 제20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제22조의2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4항, 제24조의2,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3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 및 제27조의3제1항·제2항·제8항에서 대통령령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 및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면허, 노선·운행계획 인가, 휴·폐지 승인, 운송부대사업 허가, 등록 취소·감차 명령 등 주요 권한을 전북자치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된 사항 중 상당 부분을 도조례 및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되, 일부 권한(중앙정부가 직접 행사하는 면허·운임·요금 기준 등)은 제외하고, 조례 위임에 있어서도 법령 기준과 다르게 정하려

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국가 교통정책 체계와의 조정 장치를 두고 있는 반면,[166]

개정안은 유사한 범위의 권한·위임사항을 전북자치도 도지사 및 도조례에 포괄적으로 이양하면서도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또는 의견청취 등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노선·운임·서비스 기준 등 핵심 요소에서 타 시·도와의 규제 편차 확대 및 전국 단일 여객자동차운수체계와의 정합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어 보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전국 단위의 운송질서·운임체계·안전기준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인 점을 감안할 때, 전북자치도의 자율성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같이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 일정한 통제 장치를 병기하는 방향으로 권한 이양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하여, 2개 이상 시·도에

16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8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류에 관한 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 및 제23조에 규정된 국토교통부장관(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위임하지 아니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권한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같은 법 제8조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및 시·도지사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전단, 제14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15조제4항 본문, 제16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제3항·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후단, 같은 조 제12항 전단, 같은 조 제13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제7호·제9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7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 본문·단서 및 제27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8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합특별시조례의 내용이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걸쳐 운행되는 고속버스의 면허 및 운임·요율 결정 권한은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되,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 택시 면허·운임 신고 등 지역 교통서비스 관련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운수종사자 전산처리·교육 등 전국적 기준이 필요한 사항은 이양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4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에 관한 특례 (제144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4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 제49조의5부터 제49조의7까지, 제49조의13부터 제49조의15까지, 제49조의18 및 제49조의19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그 밖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9를 적용한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변경·취소, 운송가맹·중개사업 관련 규제, 이용자 보호 및 요금·배차 관련 규제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된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사업구역이 통합특별시에 한정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으로 대상 범위를 제한한 뒤, 위와 같은 조문상의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있음.[167]

이에 비해 개정안은 사업구역에 대한 제한 문구 없이 전북자치도 관할 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전반에 대해 장관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포괄 이양하고 있어, 광역을 넘나드는 사업이나 전국 단위

16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9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 ① 사업구역이 통합특별시에 한정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 제49조의5부터 제49조의7까지, 제49조의13부터 제49조의15까지, 제49조의18 및 제49조의19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9를 적용한다.

플랫폼 서비스까지 포섭될 여지가 있는 등 권한 이양 범위가 전남광주통합특별법보다 넓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전국 단위 운송 서비스, 택시·버스 등 기존 운송체계와의 관계, 소비자 보호 등에서 국가 차원의 규율 필요성이 있는 영역이므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된 사업”으로 범위를 명확히 한 뒤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이 전북자치도에 한정된 플랫폼사업의 허가·관리는 도지사에게 이양하되,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플랫폼사업에 대한 권한은 현행과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4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재정지원 특례 (제145조·제146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5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재정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현 행	개 정 안
	2.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제146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145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도지사는 제145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5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플랫폼 운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안전운전 지원 장비 확충, 기타 도조례로 정하는 진흥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

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도 대통령령에 따라 보조·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융자금 용도의 제한, 도지사의 감독 의무, 거짓·부정 수령 시 반환명령 및 체납처분에 준하는 회수 근거를 함께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는 국가 및 시·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는 일반적 재정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168]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전북 지역 실정에 맞는 플랫폼 인프라·안전 투자사업을 설계·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 시 국토교통부의 추가 지원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플랫폼 운송과 기존 여객운수체계 전반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30조 역시 통합특별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면서, 보조·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지자체의 감독 의무, 거짓·부정 수령 시 반환명령 및 체납처분 준용 회수 규정을 동일하게 두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를 전북자치도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재정지원 범위와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역할분담, 보조·융자금 관리·환수 체계 측면에서

16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적절한 조치로 보임.

(43)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제147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7조(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① 전북자치도 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운임・요금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운임・요금을 정한 때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운임·요금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169]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도지사가 운임·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170]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16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7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②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31조도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운임·요금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고 있는바,[17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운임·요금의 지역 실정 반영과 신속한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전북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정 부분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재정경제부는 지방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과의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47조제2항과 같이 협의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현행 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바, 이를 감안할 때 제147조제2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1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1조(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운임·요금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44)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48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8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의 종사자는 서비스 수준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지되는 행위의 기준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 종사자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제16조를 준용하여 서비스 수준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사항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플랫폼 종사자 준수의무와 세부기준을 도 차원에서 마련하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32조도 개정안 제148조와 동일한 구조를 취하되, 통합특별시조례가 국토교통부령과 다른 기준을 두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172] 개정안은 이러한 동의 절차 없이 도조례에 재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1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2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통합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의 종사자는 서비스 수준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택시운수종사자의 금지되는 행위의 기준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다.
②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합특별시조례의 내용을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 택시발전법 제16조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 또는 중도하차, 부당한 운임·요금 수취, 여객 합승 강요,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여객자동차법상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173]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49조의8은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플랫폼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중도하차, 부당한 운임·요금 수취, 장시간 정차 또는 배회를 통한 여객 유치,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 거부,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을 금지하는 한편,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자격증표 게시 및 좌석안전띠 착용 안내 의무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174]

---

17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운송플랫폼(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하며, 여객의 안전·보호조치 이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통하여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 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7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플랫폼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제49조의6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거나 배회하면서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 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행위

또한,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가맹사업 및 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의 종사자”는 문언상 세 유형의 사업과 관련된 종사자를 포괄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이를 택시발전법 제16조에만 연동할 경우, 플랫폼운송사업 운수종사자에 적용되는 여객자동차법 제49조의8의 별도 준수사항 체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음.

따라서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법 제49조의8을 적용하고, 그 밖에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택시발전법 제16조를 적용하도록 구분하여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북자치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 종사자에게 택시운수종사자의 금지행위 기준을 적용하되, 제재·처분 기준은 도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례 내용이 상위 법령의 취지·기준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6.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6의2.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나.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다.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7.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5) 대중교통 운영 지원 (제149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9조(대중교통 운영 지원)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내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버스·광역철도·도시철도 등의 적자, 무임승차 및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도지사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대중교통사업에 대하여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경유하는 광역철도 노선에 대하여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원인제공자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경우,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유지하여 발생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하여 발생되는 비용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내 대중교통의 적자·무임승차·벽지노선 손실 등에 대해 국가가 국비로 지원하고, 도지사가 요청하는 대중교통사업을 국가가 우선 지원하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을 경유하는 광역철도

노선의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원인제공자 부담[175]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종전의 전남 및 광주 지역에 걸친 벽지노선 운행 손실과 통합특별시장의 요청 사업 등에 대하여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176]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내 대중교통 전반에 대하여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원 범위가 확대된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재정 부담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측면을 감안하여 그 지원 요건 및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와 같이 전북자치도 내 대중교통에 대해 국가는 벽지노선 운행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

17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17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4조(대중교통 운영 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걸쳐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대중교통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경유하는 광역철도 노선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원인제공자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경우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유지하여 발생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하여 발생되는 비용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지역 간 이동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도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수 있도록 하되, 광역철도·도시철도 및 무임승차 손실 지원 의무 규정은 원인자 부담 원칙과 기존 건설비 국고지원 체계에 비추어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46) 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 (제150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0조(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에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통물류거점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해당 거점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35조는 통합특별시장이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거점 조성·운영에 대한 국가지원도 임의규정 형식으로 두어, 지정·지원 모두에서 국가의 재량 여지를 인정하고 있음.[177]

17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5조(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교통물류거점에 항만이 포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물류거점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개정안은 교통물류거점 지정 요청에 대한 “우선 반영”과 국가지원을 모두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례의 강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비해 강한 측면이 있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교통물류거점은 국가기간교통망과 연계되는 전국적 거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정 시·도에 대하여 교통물류거점 지정 및 지원을 우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및 국가계획·우선순위 설정과의 정합성 측면의 고려가 필요해 보임.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같이 교통물류거점 지정 및 거점 조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재량규정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도지사가 요청하는 전북자치도 내 교통물류거점 지정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거점의 조성·운영에 대한 국가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47)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관한 특례 (제151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1조(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관한 특례)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에 따라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한다. ③ 국가 특별회계의 수입금을 전북자치도로 이관하는 경우 국가도로철도망 계획에 따른 국비투자 계획과 관할구역 내의 수입금을 추계하여 그 규모를 상호 비교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조례로 전북자치도의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항공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을 신설·운용한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수입을 도지사가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계정 간 재원 배분을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를 위해 도조례로 전북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전국에서 걷힌 재원을 국가 단위로 통합 운용하면서, 국가 기간교통망 구축과 지역 간 투자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수단임.[178]

17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에도 전북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수입만을 별도로 도가 직접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계정 간 재원 배분 결정에 도지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시·도와 달리 전북에만 회계상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지역 간 형평성과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전국적 통일 기준 유지라는 원칙에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임.

따라서 교통시설특별회계와 관련한 재정 특례는 특정 지역에 한정하기보다는 일반 법제 또는 교부세·보조금 등 보편적인 재정조정 제도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가 교통세 등 국세를 재원으로 국가 단위에서 SOC 투자를 조정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전북자치도 내 수입금을 도지사가 관리·운용하게 하거나 계정 간 재원 배분에 특정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특례는 국세 관리 원칙과 전국 단위 투자 조정 기능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1. 자치 조직과 인사 보장 (제5편제1장)

(1) 전북자치도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제152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2조의2(전북자치도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특별자치도교육감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항·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제4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4.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과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5. 승진임용방법·승진임용순위·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6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현 행	개 정 안
	정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 분야·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의 임용은 제외한다. ⑤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⑥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및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인사위원회 구성, 시험·승진, 인사운영 기준, 일부 대통령령 위임사항, 외국인 임용 분야·절차,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방식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북자치도의 인사 자율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39조 또한 「지방공무원법」상 인사 관련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승진·결원보충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기본 방향은 개정안과 유사함.[179]

17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외국어 능력 우대 규정(제39조제5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180], 제41조제2항 후단[181] 등에 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다른 특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문언상 차이가 있음.

제39조(통합특별시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통합특별시교육감 및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제4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통합특별시의회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 및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4.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과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5. 승진임용방법·승진임용순위·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6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의 임용은 제외한다.

⑤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⑥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결원 보충에 관한 사항

180)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81) **「지방공무원법」**

제41조(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② 공무원이 제30조의4에 따라 파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기간 중 그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거나 파견된 사람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5급 이하 공무원의 결원보충 승인권이 이미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182]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은 지방의회 승인 없이 사실상 정원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결원보충 특례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교육부도 파견·휴직자의 결원 보충 특례를 두는 제6항의 경우, 단기 파견에도 결원 보충·승진을 허용하면 과원이 발생하여 조직 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러한 점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제6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18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한다)은 제1호에 해당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충에 대한 승인권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

(2) 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제155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5조의2(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전북자치도와 인접한 시·도지역에서 전북자치도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상훈법」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한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와 인접 시·도 간 도로·교통·환경 관련 계획의 수립·집행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그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아울러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 추천을「상훈법」제5조제1항[183]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역시 통합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계획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183) **「상훈법」**
제5조(서훈의 추천) ①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③ 서훈의 추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서훈 추천을 「상훈법」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184] 개정안과 입법 취지 및 기본 구조는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1항의 “전북자치도와 인접한 시·도지역”이라는 표현은 인접 시·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다른 시·도와의 관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규정 방식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따라서 “전북자치도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 등과 같이 공간적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제3항과 관련하여, 현행 「상훈법」은 서훈 추천권자를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 등 국가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서훈 제도의 전국적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체계를 취하고 있는바, 특정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서훈 추천권을 확대하는 것이 다른 지역 공무원과의 형평성, 서훈 심사의 객관성·중립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18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5조(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통합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무총리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상훈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한다.

(3) 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제155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5조의3(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제2항,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기준 2.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3.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의 설치요건 4. 하부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의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 요건, 하부행정기구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자체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전북자치도의 자치조직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또한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등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기본 방향은 유사함.[185]

18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조(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4명으로 하되 2명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하는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명칭, 사무 및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인건비 및 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중 “인건비 및 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기구·정원은 자율화하되 인건비·직급 기준은 중앙의 공통 기준을 유지하도록 한 반면,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규정 없이 포괄적으로 조례 위임을 하고 있어 인건비·직급기준까지 자율 조정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개정안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인건비·직급 자율 조정 폭이 커지는 경우 지방재정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전국 지방공무원 보수·직급 체계의 통일성이 저해될 수 있어 보이는바,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같이 인건비 및 직급기준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기준인건비 체계 등 통일된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방향으로 특례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구·정원·직급 기준은 「지방자치법」과 기준인건비 체계를 따를 필요가 있으며, 구·읍·면·동 등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는 광역단위 특례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인건비·직급 기준은 도조례 위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제1항제4호)은 삭제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제12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2. 지방공무원(통합특별시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3.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의 설치요건
④ 통합특별시장은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제155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5조의4(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전북자치도의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문을 붙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186]의 “인건비성 예산총액을 기준으로 한 정원 관리” 적용을 전북자치도에는 배제하고, 도지사가 행정기구·정원 관련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한 경우 그 전문을 지체 없이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 총액 범위 안에서 조직·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인건비 총량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인력운영의 책임성을 담보하려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북에만 그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중앙-지방 재정·인사관리 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북자치도가 보통교부세 정률교부 대상이 아니므로 기준인건비 등 「지방자치법」상 공통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조직

186)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율성 확대는 인건비 총액관리 배제가 아니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자율운영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5) 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제155조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5조의5(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① 전북자치도의 소방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② 전북자치도의 소방업무 수행과 소방본부 및 지역 소방본부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소방업무를 도지사 직속 소방본부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하고, 소방본부장을 소방정감으로 보하도록 하며, 소방업무 수행과 소방본부·지역 소방본부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또한 통합특별시장 직속 소방본부 설치와 조례 위임을 통해 소방조직의 통합 운영과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기본 방향은 유사함.[187]

1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조(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① 「소방기본법」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직속기관으로 통합특별시소방본부를 둔다.

다만, 전남·광주의 경우 두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조직·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광역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특례 도입의 주된 배경으로 이해되는 반면, 전북자치도는 이미 도지사 산하 단일 소방본부 체계가 운영되고 있어,[188] 이를 별도로 법률에 명시하는 특례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장을 '소방정감[189]'으로 보하도록 한 규정은, 현행 「소방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시·도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원을 정하고 있는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행정안전부 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은 상위법령 체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전북특별법에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고 직접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② 통합특별시의 권역별 소방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을 2명 둔다.
③ 통합특별시소방본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지역의 소방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통합특별시의 소방업무 수행과 통합특별시소방본부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88)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89) 소방정감은 일반직 공무원 기준 1급 상당(관리관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최고위 계급 중 하나로, 시·도 소방본부장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소방감(2급 상당)에 보임되는 것이 일반적임.

12. 자치 행정의 확대 (제5편제2장)

(1) 광역생활권 지정 (제159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9조(광역생활권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관할구역내 둘 이상의 시·군의 광역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권역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광역생활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발생하는 광역행정 수요를 조정·통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도 통합특별시 관할 내 둘 이상의 시·군·구의 공동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광역생활권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청취와 광역생활권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절차·구조가 개정안과 거의 동일하며,[190] 광역 단위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보임.

---

19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조(광역생활권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군·구의 공동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권역 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특별시장에게 광역생활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광역생활권의 지정·변경, 통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 광역생활권의 운영 (제159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9조의2(광역생활권의 운영) ① 도지사는 광역생활권 내 시장·군수에게 광역생활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광역생활권 연합(이하 “연합”이라고 한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99조 및 제201조를 준용한다. ② 연합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광역생활권역내 도로망 구축 및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2. 광역생활권역내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 광역생활권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공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4. 광역생활권역 내 관광자원 개발 및 산업단지 기반 조성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각 구성단체가 규약으로 정하여 연합에 이관한 사무 ③ 제2항의 사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북자치도와 연합 간의 기능과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법령에 따라 국가의 사무를 연합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연합의 규약, 기관구성(규약의 내용, 기본계획, 의회 및 집행기관의 조직 등을 포함한다) 및 운영(경비의 부담, 사무처리 상황 등의 통지, 가입 및 탈퇴, 해산, 규정의 준용,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202조부터 제2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⑦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연합에 지방교부세를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내 광역생활권에서 시장·군수가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광역생활권 연합’을 설치하도록 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연합이 도로·대중교통, 공공시설, 환경기초시설, 관광·산단 기반 조성 등 광역적 사무를 수행하며, 국가가 위임사무 경비와 지방교부세를 연합에 직접 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연합은 구성 지자체가 규약으로 조직과 사무를 정하고 광역적 공동사무를 처리하며,「지방자치법」 제199조 및 제201조부터 제211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체계를 상당 부분 차용하고 있음.[191]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유사한 취지의 광역생활권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연합’을 두지 않고,「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전제로 공동사무 처리 및 국가의 경비부담 등을 규정하고 있어, 기존 법체계 안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192]

---

191)「지방자치법」 제199조부터 제211조까지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임.

192)「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조(광역생활권의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 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광역생활권의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광역생활권역 내 도로망 구축 및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2. 광역생활권역 내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각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 사무
③ 제2항의 사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와 특별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과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개정안이 법정 개념인 특별지방자치단체 대신 별도의 '연합'을 두고, 지방교부세 직접 배분 특례까지 부여하는 방식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와의 관계, 재정상 형평성, 제도 운용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광역생활권 연합에 별도의 지방교부세를 배부할 경우 시·군이 이미 교부받는 보통교부세와 중복 지급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지방교부세는 모든 자치단체에 공통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교부대상 변경은 「지방교부세법」 체계 내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들어, 제7항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주민투표 특례 (제160조)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주민투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0조(주민투표 특례) ---------- ---------- ----------100분의--------- ---------- ---------- ----------.

⑤ 국가가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 및 기관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02조부터 제21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안은「주민투표법」제9조제2항[193]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하[194]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행「주민투표법」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보다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 비율을 완화하려는 것임.

다만,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에 대한 직접 민주주의 수단으로서, 청구요건을 완화할 경우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투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청구요건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잦은 투표 요구, 정치적 갈등 심화, 행정 부담 증가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함.

특히 전북자치도에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청구요건을 인정할 필요성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 및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195]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행정안전부는 주민에 의한 투표청구 요건을 완화할 경우 주민투표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동시에, 다른 시·도의 운영 사례 및 주민투표 남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청구요건을 단계적으로 조정·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193)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②18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94) "100분의 1 이상"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임.

195) 주민투표법 :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전북·강원·전남광주 :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제주 : 5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전북자치도는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과도하게 완화할 경우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소수에 의해 주민투표가 빈번하게 제기될 가능성과 이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제166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6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64조, 제7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용·수익 허가, 대부·매각 절차, 사용료·대부료·변상금 기준, 관리·위탁, 교환·양여·기부채납, 재산등록·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전북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물품 관리 전반에 대한 도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공유재산 특례를 일부 조항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는바,[196] 전북자치도의 경우에도 농업·지역산업 지원, 장기 공익임대 등 구체적인 정책 목적이 명확한 분야에 대해서만 조례 자율을 부여하고,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기본적 틀은 현행 법률 및 대통령령 기준을 유지하도록 특례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물품 관리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전북도조례로 일괄 이양하는 제166조는 행정체계가 전면 전환된 제주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사항이며,[197] 시·도의 통합에 따른 행정체계 변동이 있었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달리 행정체계 변동이 없는 전북에 동일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의 통일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9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0조(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7조제1항 본문·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9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4, 제55조제1항·제2항, 제64조, 제7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3. 자치 교육의 실현 및 자치 재정의 확보 (제5편제3장)

(1)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제167조)

현 행	개 정 안
제112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7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또는 교육과정(----------을----------.
<신 설>	② 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③ (생 략)	⑤· ⑥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개정안은 현행법상 “자율학교”의 범위를 학교 단위뿐 아니라 “교육과정”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국공립 자율학교장의 교원 임용 요청 및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 요청 권한을 신설하며, 도교육감이 국공립 자율학교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66조 역시 「초·중등교육법」상 일부 규정의 적용 배제를 전제로 자율학교 또는 자율교육과정 운영을 허용하고, 국공립 자율학교장이 교육감·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 임용·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율학교 및 교육과정의 자율성 강화와 교원 인사 요청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전북 개정안과 기본 구조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198]

19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통합특별시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필요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자율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에서의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달리 도교육감이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수당 규정과 별도로 국공립 자율학교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3항)을 두고 있어,

자율학교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우수 교원 유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특정 시·도 자율학교 교직원에 대한 보수·수당 체계의 차별적 운영, 인건비 증가에 따른 교육재정 부담 확대, 타 시·도 및 동일 시·도 내 일반학교 교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소지도 있어 보임.

따라서 자율학교 특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유사하게 교육과정·학교 유형 및 교원 인사 운영 중심으로 설계하되, 특별수당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 보수·수당 제도의 전국적 일원성과 다른 교육청 소속 교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체계 내에서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교육부는 공무원 보수·수당 체계가 이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특정 시·도의 국공립 자율학교 교직원에게만 별도의 특별수당 지급 근거를 둘 경우 다른 시·도 교육청 및 일반학교 교직원과의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3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영재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170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0조의2(영재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전북자치도는 「교육기본법」 제19조 및 「영재교육 진흥법」 제1조에 따라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영재학교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영재학교에 대하여서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와 한계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영재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영재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제교원의 보수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한다. ⑤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⑥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중심으로 편성·운영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장이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⑦ 도교육감은 영재학교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⑧ 영재학교의 학생은 그 능력과 소질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가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제1항[199]에도 불구하고 영재학교[200]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일부 사항[201]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또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외국인 학생 입학,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 개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성과평가 및 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특례 등을 통해 영재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67조 역시 영재학교 설립·운영, 「초·중등교육법」 일부 적용 배제, 외국인 학생 입학,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 교육과정 자율, 성과평가, 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어, 영재학교 제도의 기본적인 틀과 취지는 개정안과 대체로 유사함.

다만, 전남·광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 동의 및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설립·취소하도록 하여 국가와의 공동책임 구조를 명시하고,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기준과 성과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

---

199)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영재학교의 지정·설립과 운영) ①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200)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

201)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영재학교의 지정·설립과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설립 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령령 기준을 전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202]

이에 비추어 보면 개정안은 영재학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위임사항과 외국인 기간제교원 보수 기준 등을 도조례에 비교적 폭넓게 위임하고 있어, 영재학교 설립·운영 기준과 교원 처우에 관한 지역 간 편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같이 영재학교 지정·설립·취소 과정에서 교육부장관 동의 및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 절차를 연계하되, 설립·운영 주체는 도교육감으로 규정하고,

교원 자격·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보수, 영재학교 운영성과 평가

---

2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7조(영재학교의 지정·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영재학교를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설립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영재교육 진흥법」 제4조에 따른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영재학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와 한계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영재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⑤ 영재학교에는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기간제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⑥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⑦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중심으로 편성·운영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장이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⑧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영재학교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영재학교의 학생은 그 능력과 소질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⑩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영재학교의 설립·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관리·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 또는 중앙정부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위임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교육부는 현행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영재학교 지정 권한이 국가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영재학교의 지정·설립·취소는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 동의 및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 등 법령상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원 자격,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보수 및 영재학교 운영성과 평가는 공교육의 질 확보와 제도 일관성을 위하여 관련 기준과 세부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영재학교의 교육과정 특례가 이미 「영재교육 진흥법」 제13조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 제170조의2제2항 중 같은 취지의 내용을 중복 규정하는 부분은 입법기술 측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전북자치도는 영재학교 설립·운영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203]에 따른 시·도 교육·학예 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설립·운영 주체를 전북자치도가 아니라 도교육감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의 책임성과 역할분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20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

(3)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 (제170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0조의3(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 ① 전북자치도 또는 학교법인은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서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19조·제19조의2·제21조·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국제고등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보수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제고등학교의 교원임용과 국제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 등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고등학교"로 본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또는 학교법인이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국제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며, 외국인 학생 입학 허용,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 및 그 보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교원 임용·학력

인정에 관하여 자율학교 특례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

다만, 국제고등학교는 외국어·국제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한 유형으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체계상 특목고 범주에 포함되는 학교 유형임.[204]

따라서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별도 조문을 두기보다는 안 제170조의4의 특수목적고등학교 규정 안에서 국제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필요한 특례는 특수목적고등학교 공통 규정에 통합하여 규율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교육부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서 국제고를 특수목적고로 규정하고 교육감이 교육부장관 동의를 받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개정안 제170조의3상 국제고가 제170조의4의 특수목적고 범주에 이미 포함되어 적용 특례도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들어, 교육부장관 동의 없이 도지사·도교육감이 단독으로 국제고를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특례는 고교 서열화,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교원 자격기준 약화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가교육위원회는 국제고등학교 역시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국가 교육과정을 따르도록 한 현행 체계가 국민 공통 기본소양 확보와 교육격차 예방에 필요하고, 현행 교육과정도 상당한 편

20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6.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성·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 제170조의3 제2항에서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전북자치도는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도 교육·학예 사무에 해당하므로, 관련 특례에서 설립·운영 주체를 전북자치도 또는 학교법인이 아니라 도교육감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4)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운영 (제170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0조의4(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운영) ① 전북자치도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등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하여서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19조·제19조의2·제21조·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특수목적고등학교에는「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

현 행	개 정 안
	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보수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가 특수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며, 외국인 학생 입학 허용,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 및 그 보수 기준 등을 도조례에 위임하려는 것임.

특목고는 과학·외국어·국제·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 심화교육을 위한 고교 유형이지만,[205] 일반고와의 이원 구조 형성으로 고교서열화와 학교 간 격차를 심화하고,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206]

---

20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1.~4. 삭제 <2010. 6. 29.>
5.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국제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8.~9. 삭제 <2010. 6. 29.>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206) 한겨레, “교육시민단체 ‘자사고·특목고 존치, 교육 불평등 확대 불 보듯 뻔해’“, 2022.04.27.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40585.html

전북 지역에는 이미 과학고·예술고·체육고 등 특목고와 다양한 특성화고가 운영되고 있으며, 특목고의 지정·설립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 하에 관리되고 있음.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68조는 특목고 운영에 관한 일부 특례만 두고, 특목고 설립 자체에 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207]

이러한 일반법 체계와 전남광주 입법례를 감안할 때, 전북자치도에만 특목고 설립·운영에 관한 포괄적 특례를 부여하기보다는, 특목고의 신설·운영은 현행 법체계 내에서 전국 공통 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지역 간 형평성과 국가 고교체제 개편 방향과의 조화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한편, 교육부는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지정·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

2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8조(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와 한계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특수목적고등학교에는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기간제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관리·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북자치도의 경우에도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특수목적고를 지정·설립·운영하도록 하되, 교원 자격과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보수는 기존 대통령령 체계를 유지하고, 기간제교원 보수 등을 도조례로 별도로 정하도록 한 제5항은 형평성과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가교육위원회는 특수목적고등학교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국가 교육과정을 따르도록 한 현행 체계가 국민 공통 기본소양 확보와 교육격차 예방에 필요하고, 현행 교육과정 자체도 상당한 편성·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 제170조의4 제2항에서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규정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전북자치도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운영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도 교육·학예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특례에서는 설립·운영 주체를 전북자치도가 아니라 도교육감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의 책임성과 역할 분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5)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170조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0조의5(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북자치도 내에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현 행	개 정 안
	장이 정한다. ⑨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학교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참여 여부와 참여 방법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외국학교법인이 전북자치도 내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 이하 과정은 도교육감이, 외국대학은 도지사가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립을 승인하도록 하며, 설립기준·승인절차·위원회 운영·재정지원·내국인 입학비율·의사결정기구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 및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73조 역시 외국학교법인이 통합특별시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 통합특별시교육감·통합특별시장의 승인, 심의위원회 심의, 조례 위임,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내국인 입학비율 설정 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기본 구조는 유사함.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면서, 고등학교 이하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특권교육·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의 변질 방지” 및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특례 운영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려는 장치를 두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208]

2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경우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같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외국교육기관법 체계를 기본적으로 준용하되, 외국교육기관이 지역 내에서 특권적 교육기회나 교육격차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감독 원칙을 함께 규정하는 방향으로 특례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교육부는 외국학교법인이 전북자치도 내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도록 하고, 고등학교

제73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통합특별시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하 “고등교육과정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은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감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다만, 고등교육과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통합특별시장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고등교육과정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으로 보며,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제3항은 제외한다)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이 법에서 통합특별시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⑧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관리·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 과정과 고등교육과정 외국교육기관의 승인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며,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의사결정기구 참여를 포괄적으로 도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제9항)은 해석상 혼란 소지가 있으므로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그 밖의 설립·운영 기준, 내국인 입학비율, 지도·감독 등은 현행 외국교육기관법 및 시행령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6) 전북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 (제170조의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0조의6(전북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도지사는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5조, 제6조의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현 행	개 정 안
	있다. ④ 국가는 도지사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설립 2. 외국어 전용 마을(어권별 다양한 국가의 문화 체험 및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을 구비한 외국어생활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성 3. 외국어 전용 마을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어상용화의 단계적 추진 가. 공공기관의 외국어서비스 나.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복지·집회 시설 등의 외국어사용 환경 조성 다. 그 밖에 외국어상용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제교류시설의 설치 및 지정 5. 그 밖에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안은 도지사가 전북자치도 내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교육특구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지정·운영·육성 권한과 대통령령 위임사항 일부를 도지사 권한 및 도조례 사항으로 전환함으로써, 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자치입법·자치행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교육국제화특구는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과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외국교육기관, 외국어마을, 국제교류시설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과정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209]

한편으로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국제화 교육 기반 조성 수단으로 평가되는 반면, 과도한 영어몰입·수월성 중심 프로그램, 특정 지역·계층에 교육기회가 집중되고 비(非)특구 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확대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온 바 있음.[210]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육성 권한을 교육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이 교육특구법 및 지방교육자치 체계, 다른 시·도에 대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방식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타당한지, 아울러 도가 지정한 특구에 대하여 국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국가 재정책임의 범위와 기존 특구 제도와의 관계에서 적정한지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교육부는 교육국제화특구가 현행 법률상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공동 요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학예 사무의 집행기관을 교육감으로 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도지사가 단독으로 특구를 지정하고 국가에 행정·재정적 지원 의무까지 부과하는 제170조의6은 특례 난립, 국가 재정 부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209) 교육국제화특구 목록(18개 지역) : 대구 달서구·북구·수성구, 인천 연수구·서부(서구·계양구), 경기 안산시·시흥시·화성시, 광주 광산구, 부산 남구·중구·해운대구·서부산(사하구·사상구), 세종특별자치시, 제주 서귀포시, 충남 당진시·천안시 및 홍성군·예산군
(※ 전북지역 불포함)

210) 경향신문, "'서열화 조장'인가 '선택 다양화'인가…'교육자유특구' 논란 재점화", 2023.01.12. https://www.khan.co.kr/article/202301121641001#ENT

(7) 「사립학교법」에 대한 특례 (제170조의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0조의7(「사립학교법」에 대한 특례) 「사립학교법」 제35조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으로 해산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른 학교법인에 양여, 무상대부 또는 지방자체단체 교육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법」 제47조[211]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으로 해산한 대학교육기관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른 학교법인에 양여·무상대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이는 폐교·폐대학 캠퍼스 자산을 공립대학, 평생·직업교육, 청년·문화시설 등 지역의 공교육 및 공공목적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지정한 귀속자, 청산절차, 채권자 보호 등 법정 절차를 거쳐 공익적·비영리적으로 처분하도록 한 것이 「사립학교법」의 기본 구조이며,[21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211) **「사립학교법」**
제47조(해산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을 지시한 후 6개월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만 한다.

대해서도 관할청 허가를 통한 재산권·공익 간 조정을 전제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법체계에 비추어 보면,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 이후 잔여재산 활용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법적 근거, 정관상 귀속자·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와의 조화, 특정 지방자치단체나 개별 사업으로의 재산 편중 가능성 등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12)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학교법인이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殘餘財産)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경우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게 청산종결을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補塡)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해산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인 사람이 학교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기간 중 정관으로 지정한 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직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가. 대표자
 나. 임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총장 또는 부총장
 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장 또 는 교감
 마.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또는 원감
2.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임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이하 “청산지원계정”이라 한다)에 귀속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양여·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밖의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된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해당 시·도 교육감이 관리하되, 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시·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을 「사립학교법」 및 「사립대학 구조개선법」(2026년 8월 시행 예정)에서 일관되게 사학진흥기금·공익법인 등으로 귀속되도록 규율하고 있고, 다른 지역 특별법에서도 유사한 재산 귀속 특례를 두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전북자치도에 한하여 잔여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양여·무상대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170조의7은 형평성과 법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8) 국가의 재정지원 (제171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1조의2(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전북자치도내 시·군의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 2. 전북자치도내 시·군의 교통 연계·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3. 이 법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권한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4. 지역 균형발전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 5. 사회간접시설의 개선·보완에 소요되는 비용 6. 국립 문화시설의 설치 및 국립 문화예술단체 분원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7.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재정지원 사항과 도지사가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지원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비용

현 행	개 정 안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국가 일반회계 또는 제46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계정, 보통교부세 등으로 지원하고 세부적인 지원방법과 내용·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지방재정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와 시·군 간 경비부담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의 정착·운영과 관련된 행정통합 비용, 교통 연계·개선, 권한 이양에 따른 비용, 지역균형발전 및 사회간접시설 보완, 국립 문화시설·문화예술단체 분원 설치비용 등 전북자치도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가 일반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계정, 보통교부세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와 전북자치도·시·군 간 경비부담 비율을 「지방재정법」 제22조제1항[213]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려는 것임.

다만,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 영역과 재원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특례의 범위와 규율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 제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전국 공통 재정제도의 운용 취지 및 제주·강원·전남광주 등 다른 지역 특별법의 재정지원 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의무의 수준과 방식이 국가

213) **「지방재정법」**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정부담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9) 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제171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1조의3(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내 시·군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에 한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전북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내 시·군 통합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운영경비 등이 절감되는 경우 그 일부를 전북자치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자치도 설치 이전 수준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을 보장하려는 것임.

현행 전북특별법은 제103조[214]에서 도지사가 시·군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는 절차와, 통합 지방자치단체 예산 특례에 관한 상위법상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시·군 통합을 이 법의 기본 방향이나 필수 과제로 전

214) **제103조(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둘 이상의 시·군의 통합을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하지는 않고 있으며, 법 전체의 중심축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권 확대, 규제완화, 산업·교육·환경 분야 특례에 맞추어져 있음.

제171조의3에서 시·군 통합에 따른 운영경비 절감분 지원과 설치 이전 수준 이상의 재정지원 보장을 규정한 방식은, 통합을 전제로 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56조의 국가 재정지원 규정과 상당 부분 유사하여 행정통합 법제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이해됨.[215]

다만, 동 개정안의 기본 방향이 현행 전북특별법 체계 내 특례 보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군 통합을 전제로 한 국가 예산지원 조항이 전북특별법의 입법목적·체계 및 기존 재정특례와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고 행정통합 특별법 수준의 재정지원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국가재정 운용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2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6조(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① 국가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한정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가 설치되는 해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편성·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지원이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④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 투자·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0)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 (제171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1조의4(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서 징수하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전북자치도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및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에서 징수하는 법인세 총액의 100분의 50을 전북자치도로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1000분의 50을 전북자치도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에서 징수하는, 자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총액의 100분의 50,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제외분)의 1000분의 50을 전북자치도에 직접 교부하도록 하는 국세 교부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한편, 제주·세종·강원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다른 특별법에서는 법인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와 같은 개별 국세를 특정 자치단체에 일정 비율로 직접 교부·귀속하도록 하는 재정특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재정은 국세·지방세·지방교부세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해 전국 단위로 재원을 조정·배분하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국세 교부 특례는 이러한 재정조정 체계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1)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제171조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1조의5(통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전북자치도내 시·군 통합에 따른 통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시·군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매년 통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내 시·군 통합으로 설치되는 통합자치단체에 대하여, 통합 직전 연도 시·군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추가로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3조[216]의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규정을 전북자치도에 관한 특례로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21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3조는 자율통합으로 이미 설치된 통합지방자치단체(창원시, 청주시 등)를 대상으로, 통합 당시 기준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일정 기간 추가 교부하는 한시적 자율통합지원금 성격의 일반 규정을 두고 있는 조항인 반면,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내 향후 시·군 통합을 전제로 동일한 수준의 6% 및 10년 추가 지원을 별도의 특별법 조항으로 다시 설정하고 있는바, 이미 일반법에서 마련된 통합 재정지원 특례를 개별 지역특별법에서 중복·특례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행정안전부 역시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6% 추가 지원은 이미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취지의 조항을 전북특별법에 중복해 둘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임.

(12)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제171조의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1조의6(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북자치도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매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사무를 전북자치도 및 시·군에 이양

현 행	개 정 안
	하는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이양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 교부세의 재원으로 추가로 확보하고 이를 전북자치도 또는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의 최대 25%를 추가로 반영하여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10년 한시의 산정 특례를 두고(제1항), 국가사무 이양 시 그 처리 비용을 교부세 재원으로 추가 확보하여 전북자치도 및 시·군에 교부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제2항).

먼저 제1항은 전북자치도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을 최대 25%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특례를 두고 있는바, 보통교부세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특례의 필요성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같은 항은 적용기간을 “이 법의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간”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전북특별법이 이미 2024년 1월 시행(시행일 2024.1.18.)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 시점과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적용 시기와 범위를 보다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2항은 국가사무를 전북자치도 및 시·군에 이양하는 경우 교부세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양사무 처리비용을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무 이양과 재원 이양의 연계를 명시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동일한 국가사무를 이양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전북에 대해서만 교부세 재원 추가 확보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지방교부세 제도의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는 통상 시·군 통합 등 행정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경우에 부여되고,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리고 별도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전북에만 보정 특례를 부여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가 감소하여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제171조의6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특례 (제171조의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1조의7(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일반적인 보통교부금 산정방식과 달리,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에 대해서는 기준재정

수요액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의 25% 이내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재정 교부금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는 전북자치도의 교육재정 자립도와 재원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국 시·도 교육재정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수평적 재정조정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북에 한정한 25% 범위의 기준재정수요액 가산 특례가 타 시·도 교육재정과의 형평성 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교육부는 보통교부금이 기준재정수요·수입액을 기준으로 전국 시·도에 공통 배분되는 재원인 점을 전제로, 전북자치도에만 기준재정수요액을 추가 보정하는 특례를 둘 경우 다른 시·도의 교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한시적 재정특례와 달리[217] 전북은 이미 일정 수준의 교육 기반이 구축된 지역으로 재정여건 측면에서 별도의 특례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217)**「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재정 특례)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202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14) 지방소비세 정률 안분에 관한 특례 (제171조의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1조의8(지방소비세 정률 안분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북자치도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하는 지방소비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1조제3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중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가중치를 100분의 300으로 한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배분 시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소비지수 가중치 300%를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지방소비세 안분기준을 전북자치도에 안정적으로 적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가중치를 수도권 외의 도와 특별자치도에 대하여 100분의 300으로 정하고 있어,[218] 전북자치도 역시 현재 소비지수 가중치 300%를 적용받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300%의 가중치는 현행 기준과 동일한 것으로서, 현행 제도와 비교할 경우 전북자치도의 지방소비세 안분액을 추가로 증가시키는 재정적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가중치

218)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서 확정·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지수를 말한다.
2.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수도권 외의 도와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이를 전북특별법에 직접 규정할 경우 향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중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300%의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상 특례를 확보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임.

(15) 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171조의9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1조의9(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시·군 행정통합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10년간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제37조의2에도 불구하고 시·군 행정통합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10년간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개정안은 시·군 행정통합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타당성조사를 이 법 시행 후 10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면제함으로써, 통합 관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타당성조사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신규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재정수용능력을 사전에

검증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사업 간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장치로서 운용되며, 개별 사업의 성격·긴급성 등을 고려한 예외적 면제 규정도 이미 마련되어 있음.

개정안은 시·군 행정통합을 이유로 일정 기간 관련 대규모 사업에 대한 이러한 심사·조사 절차를 포괄적으로 면제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예비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타당성조사가 본래 예외적 면제를 전제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특정 지역의 통합 관련 사업 전반을 일괄 면제하는 방식이 제도의 취지, 전국적·통일적 기준 적용 필요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 장치인 만큼, 개별 법률에서 사업계획·총사업비가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면제할 경우 제도 취지가 약화되고 장기 재정부담 우려가 있으며, 이미 협의면제 등 신속 추진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개정의 실익도 크지 않다는 입장임.

(16)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제171조의10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1조의10(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전북자치도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의 요청이 있으면 지방채를 우선 인수 또는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발전 관련 사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도의회 의결을 전제로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219]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 외채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의 여유자금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북자치도 지방채를 우선 인수·매입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이는 전북자치도의 재정운용 자율성과 재원 조달 여건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를 허

219)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하되「지방재정법」제11조제3항 단서[220]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절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지방채 발행 특례를 설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21]

전북의 경우에도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 특례의 요건 및 절차를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채 및 외채 발행이「지방재정법」및 동 시행령에 따라 한도 내에서는 자율 발행을 허용하되, 한도 초과 발행이나 외채 발행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전국 공통의 사전 통제체계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특정 지역에 대해 별도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또한, 재정경제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의 여유자금이 통상 단기성 재원으로 국채 등 유가증권 인수·매입 등에 활용되는 구조인 점을 들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를 우선 인수·매입하도록 의무

---

220)**「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21)**「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8조(지방채 발행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특별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를 부여하는 특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 원칙, 지방재정 자율성과 국가재정 의존도 간 균형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7)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171조의11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1조의11(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 대하여서는 시·군 행정통합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이후 10년간 재정위기단체 및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등의 적용 조항을 면제한다.

개정안은 시·군 행정통합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하여, 법 시행 이후 10년간 전북자치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상 재정위기단체·재정주의단체 지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위기단체·재정주의단체 지정 제도는 부채비율, 통합재정수지 등 주요 재정지표를 기준으로 재정위험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과 예산

편성 제한 등을 통해 재정위기를 예방·완화하기 위한 전국 공통의 관리장치로 마련된 것임.

그런데 시·군 행정통합 관련 대규모 사업 시행을 이유로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10년간 재정위기관리 제도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특례가, 이러한 제도의 취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가 지자체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위험수준 점검 장치인 만큼, 행정통합 관련 사업의 안정성을 이유로 재정위기단체·재정주의단체 지정을 일괄 면제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고,

재정위기단체 지정도 위기기준 초과 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가 재정위기 요인과 개선 가능성을 종합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면제 특례를 둘 실익은 크지 않다는 입장임.

(18) 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171조의1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1조의12(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43조 및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현 행	개 정 안
	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된 지방공기업의 설립·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전북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북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도 동일 조항들에 대해 조례 위임 특례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22] 전북자치도에 대해서도 같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은 특별자치도에 대한 자치권 확대 및 유사 입법례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19) 자치경찰제에 관한 특례 (제171조의1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1조의13(자치경찰제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임용할 경우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2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9조(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43조 및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의권을 행사하기 전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자치경찰위원회는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치경찰 사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치경찰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임용 시 도지사의 동의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검증절차를 부여하고,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경찰제 운영에서 도의 참여와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은 시·도경찰청장을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시·도의 참여를 인정하면서도 임용권과 최종 책임은 국가에 두는 체계를 취하고 있음.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한 제도 개선 및 국가 지원 근거를 두는 수준의 특례를 마련하고 있을 뿐, 통합특별시장에게 시·도경찰청장 임용 동의권이나 자치경찰사무 범위에 대한 포괄적 조례 위임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음.[223]

이에 비해 개정안은 대통령의 시·도경찰청장 임용에 도지사 동의를 전제로 함으로써 시·도경찰청장 인사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효과를 가져, 현행 국가경찰·자치경찰 인사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또한, 자치경찰사무 범위를 “다른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포괄 위임하는 부분도, 경찰법·대통령령이 정한 기본 범위를 전제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세부 사무를 정하도록 하는 현행 구조보다 한 단계 확장된 재위임에 해당하므로 국가·자치경찰 간 역할분담 및 지휘·감독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그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경찰청은 시·도경찰청장 임명 절차를 전북자치도에만 다르게 두면 전국적 통일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시·도지사에게 임명 동의권을 부여할 경우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시·도경찰청장이 수행하는 국가경찰·수사사무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자치경찰사무 범위를 현행 경찰법과 같이 경찰 임무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체계를 유지하지 않고

---

2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7조(자치경찰제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하여 자치경찰의 조직·사무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 조례에 포괄 위임할 경우, 다른 행정청 사무까지 무분별하게 확장되어 치안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0) 자치경찰제에 관한 재정지원 (제171조의1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1조의14(자치경찰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가 자치경찰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및 장비 구입비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치경찰사무가 확대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전북자치도가 자치경찰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운영비·장비 구입비 등 제반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자치경찰사무가 확대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별도로 책정·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자치경찰제 운영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경찰법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원칙을 포괄적으로 선언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에 한하여 국가의 자치경찰 관련 재정

지원 의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별도로 책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는 방식으로 구체적·강행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는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자치경찰에 관하여는 제도개선 및 예산 지원 가능성 수준의 규정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224] 전북에만 보다 강화된 재정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전남광주 입법례와의 정합성, 자치경찰 재정분담에 관한 국가-지방 간 기본 원칙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경찰청은 현행 일원화된 자치경찰제에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국가가 충분히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는 이미 「경찰법」에 규정되어 있고, 향후 자치경찰제 이원화 논의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자치경찰 조직·사무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재정지원·협업 의무의 구체적인 항목과 방식은 관계 기관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2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7조(자치경찰제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하여 자치경찰의 조직·사무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1)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특례 (제171조의1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1조의15(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특례) ①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국가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 지원, 특별수당 지급,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에게 특별승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후생복지 지원, 특별수당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에게 특별승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경찰사무 담당 인력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도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것임.

현재도 일부 시·도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후생복지 확대 등이 조례 및 예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225] 제1항과 같이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후생복지·수당·연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225) 헤드라인제주, "제주, 자치경찰 사무 수행 국가경찰 복지포인트 확대 추진", 2023.12.01.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0917

다만, 제2항에서 도지사가 특정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을 요구하고, 경찰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이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특별승진을 운영하는 현행 인사체계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경찰 인사권 간 권한 관계,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다른 지역 특별법에 유사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그 적정성에 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를 포함한 모든 경찰사무에 대해 ‘공적 마일리지’에 따른 단계별 심사체계를 통해 특별승진 대상을 공정·투명하게 선발하고 있고, 자치경찰사무 우수자도 자치경찰위원회 추천을 거쳐 다른 공적 우수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 시·도지사에게 특별승진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확립된 특별승진 제도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해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시정명령 등 (제171조의1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1조의16(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도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른 재의를 요구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안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88조의 시정명령 및 같은 법 제192조의 재의요구를 하는 경우,[226]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통제 과정에 국가경찰 관련 합의제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전문성과 의견을 반영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자치경찰사무를 구분하되 시·도 경찰청 조직은 일원화된 모형이고, 제주특별자치도만 별도의 '제주자

226) **「지방자치법」**
제188조(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03조제2항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치경찰단'을 두는 예외적 이원화 모델이라는 점, 제주특별법은 이러한 이원화 구조를 전제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시정명령·재의요구 시 국가경찰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점[227]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경찰청은 이와 같은 점을 들어, 개정안과 같이 제주특별법상의 규정을 전북자치도에 그대로 차용할 경우,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장·국가경찰위원회 간 권한관계 설정에서 법체계상 모순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대해 예외적·보충적으로 행사되는 통제 수단으로서, 그 적용 범위를 특정 사무(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별도의 절차와 기관을 통해 중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 및 현행 자치경찰 조직 일원화 체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①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둔다.
제104조(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도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른 재의를 요구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3)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감사 (제171조의1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1조의17(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감사) 도지사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경우 도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감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자치경찰제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권한을 가지며, 중복감사 방지를 위하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등 경찰기관과의 협력 아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감사 과정에서 도지사에게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절차적 의미가 있음. 다만 '참여 요청'은 임의적·비구속적 조치로서 경찰기관에 참여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치경찰위원회 또는 도지사의 감사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도 운영상 실질적 변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14. 감사위원회의 설치 (제5편제4장)

(1) 감사 등에 관한 특례 (제179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9조의2(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2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와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원과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재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북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사무 및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할 경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제주특별법 제139조의 감사위원회 특례 규정[228]을 차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직접감사를 제한하고 전북 감사위원회 중심의 감사체계를 구축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 및 자치감사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중앙행정기관의 직접감사를 제한하는 제주식 특례 조항은 두고 있지 않은바,

감사위원회 제도에 관하여는 특정 지역별로 상이한 특례를 확대하기보다는, 특별자치도 및 통합특별시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감사제도 틀을 마련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2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9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와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원과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재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치권과 특례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합법성 감사는 국가 법질서와 국정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경우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져 법질서가 훼손되고, 지역 간 형평성 저해 및 주민·기업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전북은 행·재정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감사원 감사만으로는 감사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고 자체감사 역량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조언적·예방적 기능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또한, 교육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가 시·도교육청 간 학생 교육 지원의 형평성 확보, 국가재정 지원에 대한 책무성 담보, 국가교육정책·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며, 다른 특별자치도 및 통합특별시 관련 법률에도 이와 같은 중앙행정기관 감사 배제 특례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제179조의2와 같은 중앙행정기관 감사 배제·위탁 규정은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15. 지방의회 (제5편제5장)

(1) 도조례 (제180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0조(도조례) ① 도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전북자치도 관할구역의 시·군의 조례는 도조례나 규칙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③ 조례 제정의 절차, 공포 방법 등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은 조례에 관한「지방자치법」제28조의 일반 원칙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도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현행 전북특별법 제5조 제2항[229]의 취지를 중복적으로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이해됨.

조례 제정의 범위와 한계는 상위 법률과 현행법에 따라 이미 규율되고 있는바, 그와 동일한 취지의 선언을 별도 조문으로 다시 두는 입법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22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전북자치도의 책무)** ② 전북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전북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도의회 사무직원 정원에 관한 특례 (제181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1조(도의회 사무직원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230]이 지방의회 사무직원 정수를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연동시키는 것과 달리, 전북도의회의 사무기구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의회 사무 인력·조직에 대한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대통령령에 따른 정원 기준을 전면 배제하고 도조례에 일괄 위임하는 방식이 다른 특별자치도 및 일반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전체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체계 및 국가재정운영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북자치도와 도의회 모두 보통교부세 정률교부 대상이 아니므로 기준인건비 등 「지방자치법」상 공통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도의회 전문위원 정수와 사무직원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231]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입장임

---

230)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2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조(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직급은 제외

(3) 경비 (제182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2조(경비) ① 도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전북자치도 예산에 이를 계상한다. ② 도의회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정한 예산안 제출기일(이하 이 조에서 “예산안 제출기일“이라 한다) 30일 전까지 의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감액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이를 의장에게 송부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감액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송부한다.

개정안은 도의회 경비를 전북자치도 예산과 분리·독립하여 계상하고, 의회 예산요구 및 감액 협의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도의회의 재정적 자율성과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견제·협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다) 및 제10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 통합특별시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시에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재 의회 운영예산의 독립 계상을 명시적 특례로 규정한 사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유일하며,[232] 제주·강원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의회 예산이 별도 계정이 아니라 도 예산의 일부로 편성·운용되고 있는바, 개정안은 통합특별시와 유사한 수준의 의회 재정자율 특례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지방의회 경비를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바,[233] 지방의회 예산의 독립 계상에 관한 사항을 전북 등 일부 특별자치단체의 개별 특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공통 적용되는 일반 기준으로 설계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2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조(통합특별시의회 예산) ① 통합특별시의회의 예산은 독립하여 통합특별시 예산에 계상한다.
②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정한 예산안 제출기일(이하 이 조에서 "예산안 제출기일"이라 한다) 30일 전까지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직접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의회의 예산에 예비금을 둔다.
④ 통합특별시의회의 예비금은 사무기구의 장이 관리하되, 통합특별시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동의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다만, 폐회 중일 때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통합특별시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의 예산을 편성할 때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감액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이를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제6항에 따른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감액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 통합특별시장은 제7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의견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예산안에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33) 이해식의원(2200342), 강득구의원(2202014), 장경태의원(2203504), 이광희의원(2208774) 대표발의

(4) 의회 정책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제183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3조(의회 정책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와 운용은 도조례로 정하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234] 도의회가 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도조례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북도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포함한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고,[235]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236]

---

234)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235) 강득구의원 대표발의(2202014): 의원 정수 이내
신동욱의원 대표발의(2215621): 의원 정수 이내
장경태의원 대표발의(2203504): 시·도는 의원정수 2배 이내, 시·군·구는 의원정수 이내

2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조(통합특별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상한과 배치기준 완화 특례를 전북자치도에 시범적·선제적으로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지방의회법 제정 또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전국 공통 기준으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5)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제184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4조(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은 도의원의 의정비 구성 및 수준을 전북자치도 조례와 도지사 소속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 자율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의정비 결정에 관한 전북자치도의 자치입법권과 재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법체계에서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이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범위 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구체 금액을 정하는 구

조인 반면,[237]

제주특별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통합특별시)의원이 받는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도(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도지사(통합특별시장) 소속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두어 의정활동비등을 보다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238]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의정활동비등에 관한 특례를 단층제 행정체계를 가진 제주특별자치도와 두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한정된 예외로 둘 것인지, 아니면 전북·강원 특별자치도와 같이 광역-기초 2층제를 유지하는 특별자치도에도 확장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특례 유형으로 볼 것인지는,

---

237)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조(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소속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일반 시·도 의회와의 형평성, 의정활동비등에 대한 주민 수용성,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6)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제185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5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조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제7항[23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북도의회의 감사·조사 운영 기준에 대한 자치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지방자치법」은 감사·조사의 기간, 대상, 절차·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일괄 위임하고 있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둘 수 있는 반면, 제주특별법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이러한 사항을 도·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240]

239)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185조도 이와 같은 구조를 취하여 행정사무 감사·조사 제도의 구체적 운영기준을 도조례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전북도의회가 지역 실정에 맞게 감사·조사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간 제도 편차 확대와 감사권 운용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도 수반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특례를 제주·전남광주처럼 행정체계가 특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된 예외로 둘 것인지, 전북·강원 등 다른 특별자치도까지 확장하여 특별자치단체 공통 특례로 정립할 것인지는 제도의 통일성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4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6. 보 칙 (제6편)

(1) 청문 (제186조)

현 행	개 정 안
제125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제126조제1항에 따라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신 설>	제186조(청문)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81조제1항에---------- --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의 지정을 취소 또는 해제하는 경우

개정안은 제5편에 제5장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 제125조의 청문 규정을 제186조로, 제126조의 감독 규정을 제187조로 각각 순연하는 한편, 청문 대상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의 지정을 취소 또는 해제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제125조는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취소,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해제, 금융기관 지정 취소,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및 제126조제1항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 취소의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현행 제126조가 제187조으로 순연되는 경우, 현행 제125조제5호의 “제126조제1항에 따라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조문번호 변동에 맞추어 “제187조제1항에 따라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로 정비되어야 함.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제181조제1항에 따라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있는바, 제181조는 “도의회 사무직원 정원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인가·허가·등록 또는 지정의 취소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는 조문 인용의 오류로 보임.

한편, 제6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의 지정을 취소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의 취소 또는 해제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행 전북특별법 제125조는 이미 산악관광진흥지구와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에 대한 청문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241] 신설되는 제6호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의 지정 취소 또는 해제 전반을 포괄할 경우 제2호 및 제4호와 규율 범위가 중첩될 수 있음. 따라서 기존 개별 규정과 신설 제6호의 관계를 정비하여 조문 간 중복 및 해석상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24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5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40조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 제50조제8항에 따라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3.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4. 제74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5. 제126조제1항에 따라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문 의 처
02)6788-5338